

Teaching Human Rights



학교 인권교육 기초자료

유엔의 초·중등학교 인권학습 활동 안내서

인권교육의 기본 인권 기본틀의 개발 / 인권 증진 / 유엔 인권교육 10개년 (1995~2004년) / 학교 인권교육 프로세스 / 인권교육의 내용 / 인권에 대한, 인권을 위한 수업 / 권리와 책임 / 가르치기와 설교하기—말보다는 행동 / 민감한 문제 처리하기 / 인권교육을 위한 교육학적 기법 / 평가 **취학전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인권교육 주제** 신뢰와 사회적 존중 / 갈등 해결하기 / 차별에 대처하기 / 유사점과 차이점 인식하기 / 자신감과 자부심 키워주기 / 신뢰 쌓기 / 학급규칙 정하기 / 인권 이해하기 / 아동의 권리 소개하기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고등학생을 위한 인권교육 주제** 생명 보호—사회 속의 개인 / 전쟁, 평화 그리고 인권 / 정부와 법 / 사상·양심·종교·의견 및 표현의 자유 / 사생활에 대한 권리 / 집회를 열고 공적인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 / 사회·문화적 행복 / 차별—고정관념 / 차별—피부색 또는 인종 / 차별—소수집단의 지위 / 차별—문화적 성 / 차별—장애 / 교육에 대한 권리 / 개발과 환경 / 경제발전과 상호연관성 / 기업과 인권 / 유엔에 대한 이해 / 인권 공동체 형성 / 학교의 인권온도 측정하기



국가인권위원회

학교 인권교육 길라잡이

학교 인권교육 길라잡이

- 유엔의 초·중등학교 인권학습활동 안내서

찍은날 2006년 12월 22일

펴낸날 2006년 12월 28일

글쓴이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엮은곳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본부 학교교육팀

펴낸이 안경환

펴낸곳 국가인권위원회

100-842 서울시 중구 을지로1가 16번지 금세기빌딩

대표전화 : 02-2125-9700

홈페이지 : <http://humanrights.go.kr>

만든곳 도서출판 아침이슬

ISBN 89-90475-92-9 93370

Teaching Human Rights

학교
인권교육
길라잡이

유엔의 초·중등학교 인권학습 활동 안내서

〈일러두기〉

1. 이 시리즈에 담겨 있는 모든 내용은 자유롭게 인용 또는 출판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출처를 명기하고 해당 내용이 포함된 출간물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1211, Geneva 10, Switzerland)로 송부하여야 한다.
2. 이 책에서 사용된 명칭과 제시된 자료는 특정 국가, 영토, 도시, 지역이나 해당 당국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또는 그 국경이나 경계의 결정에 대하여 유엔사무국의 견해를 표명하는 것이 전혀 아님을 분명히 밝혀 둔다.

〈약어〉

CEDAW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FAO 유엔식량농업기구
ICRC 국제적십자위원회
OHCHR 유엔인권고등판무관
UNDP 유엔개발계획
UNESCO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WHO 세계보건기구

CRC 아동권리협약
ICERD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ILO 국제노동기구
UDHR 세계인권선언
UNEP 유엔환경계획
UNHCR 유엔아동기금

발간사

번역서를 발간하면서

인권교육은 인권 실현의 출발점입니다. 왜냐하면 인권은 천부적 권리라고 하지만 인류 역사에서 확인되듯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깨달아야만 누릴 수 있고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엔은 인권교육 강화를 위해 ‘인권교육 10개년 계획’ (1995~2004)과 그 후속 조치로서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인권교육 행동 계획에 초점을 둔 ‘세계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채택하였고, 이를 위해 초·중등학교 학생들에게 인권의식을 심어주고 인권 존중 태도를 키우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교사 및 기타 교육활동가용 인권교육 안내서 『ABC:Teaching Human Rights』를 발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동안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인권 감수성과 인권적 태도, 그리고 기술을 함양하기 위한 인권교육의 기초를 닦고 인권교육을 확산시켜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적지 않은 초·중등학교에서 인권교육의 새싹이 돋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각 학교 현장에서 인권교육이 더욱 풍성해지고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를 꽃 피우기를 희망하면서, 위에서 소개한 유엔의 『ABC:Teaching Human Rights』를 번역하여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초·중등학교에서 인권교육을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인권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교과목에서 인권문제를 자연스럽게 전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 인권교육 교사가 교육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는 고민에 대한 대처 방안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책을 번역하면서 원서의 내용을 충실히 따르되, 우리나라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고, 일부 그림, 삽화 등도 이에 맞도록 만들었습니다.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은 '세계인권선언'이나 '아동권리협약'의 각 조항의 취지를 설명하는 지식 전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서들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일상적인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실과 교육환경 그 자체에서 인권이 존중되는 방식으로 학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학생들은 '인권에 대한 학습' 뿐만 아니라 '인권을 통한 학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서 인권교육은 학생 개개인의 인권 신장뿐만 아니라 교사 등 교육주체

들의 인권 신장으로 이어지는 ‘인권을 위한 학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인권교육은 교사들에게 또 다른 도전이자 기회이며, 인권이 살아 숨쉬는 학교를 만드는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학교에서 인권 실현은 엘리노어 루즈벨트가 말했듯이 “지금, 자기 자신 가까이” 아주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위원회는 여러분들과 함께 인권교육을 실천하고 여러분의 활동을 적극 지원·협력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이 책을 제작한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과 여러 국제인권교육전문가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이 번역서가 우리나라 인권교육의 발전과 인권 증진의 밑거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06년 12월 22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머리말

『학교 인권교육 길라잡이: 유엔의 초·중등학교 인권학습활동 안내서』는 인간으로서의 우리 자신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 책은 ‘이 세상의 자유, 정의, 평화의 토대’ (세계인권선언 전문)가 되는 천부적인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권리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이러한 것들은 단순히 교실 수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경험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우리의 삶을 위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권교육은 단순히 인권에 대한 교수·학습뿐만 아니라 인권을 위한 교수·학습을 의미한다. 즉, 인권교육의 근본적인 역할은 개개인이 자신의 권리와 타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기본권이 인정되고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이다.

이 책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이 인권교육을 위하여 각국 정부,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전문기관, 시민사회의 모든 분야 및 개인들에게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인권교육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유엔인권교육 10개년 United Nations Decade for Human Rights Education(1995~2004) 계획’의 일환으

로 제작된 안내서이다. 인권교육 10개년 계획은 국제 사회가 인권교육분야와 관련하여 협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통의 틀을 제공한다. 즉, 인권의 실현은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이며, 이 목표의 달성 여부는 전적으로 각자가 기여하는 바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나는 이 책과 기타 부수적 사업들이 전 세계에서 교사와 교육전문가로 활동하는 많은 이들을 적극적인 변화의 주역이 되도록 이끌어줄 것을 희망한다.

이 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인권고등판무관실을 도와주신 모든 분들과 기관에게 감사드린다. 특히, 1989년 제1판을 기획한 랠프 페트맨Ralph Pettman, 1판의 수정 및 보완작업을 맡은 낸시 플라워즈Nancy Flowers, 값진 조언과 지적을 아끼지 않은 마곳 브라운Margot Brown, 펠리사 티비츠Felisa Tibbitts, 유네스코의 교육질진흥부UNESCO Division for the Promotion of Quality Education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03년 3월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세르지오 비에이라 드 멜로

Sergio Vieira de Mello

목차



발간사	__ 5
머리말	__ 8
이 책을 읽기에 앞서	__ 13

제1장 인권교육의 기본

인권 기본틀의 개발	__ 18
인권 증진	__ 22
유엔 인권교육 10개년(1995~2004년)	__ 23
학교 인권교육 프로세스	__ 24
인권교육의 내용	__ 26
인권에 대한, 인권을 위한 수업	__ 28
권리와 책임	__ 29
가르치기와 설교하기—말보다는 행동	__ 30
민감한 문제 처리하기	__ 32
인권교육을 위한 교육학적 기법	__ 33
평가	__ 38



제2장 취학전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인권교육 주제

신뢰와 사회적 존중	__ 42
갈등 해결하기	__ 43
차별에 대처하기	__ 44
유사점과 차이점 인식하기	__ 45
자신감과 자부심 키우기	__ 46
신뢰 쌓기	__ 54
학급규칙 정하기	__ 56
인권 이해하기	__ 58
아동의 권리 소개하기	__ 60

제3장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고등학생을 위한 인권교육 주제

생명 보호—사회 속의 개인	__ 66
전쟁, 평화 그리고 인권	__ 69
정부와 법	__ 75
사상·양심·종교·의견 및 표현의 자유	__ 83
사생활에 대한 권리	__ 86
집회를 열고 공적인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	__ 88
사회·문화적 행복	__ 90



차별	__ 92
1. 차별—고정관념	__ 93
2. 차별—피부색 또는 인종	__ 95
3. 차별—소수집단의 지위	__ 96
4. 차별—문화적 성	__ 99
5. 차별—장애	__ 105
교육에 대한 권리	__ 106
개발과 환경	__ 110
경제발전과 상호연관성	__ 118
기업과 인권	__ 122
유엔에 대한 이해	__ 124
인권 공동체 형성	__ 126
학교의 인권온도 측정하기	__ 127
우리 학교의 인권온도 측정하기	__ 128

이제 단지 시작일 뿐	__ 134
--------------------	--------

부록	
1. 세계인권선언(1948년)—원문과 쉬운 말 표현	__ 137
2.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원문과 쉬운 말 표현	__ 147
3. 국제인권법 용어의 간략한 소개	__ 179
4. 관련 기관	__ 185
5. 기타 수업 활용 자료	__ 201

서문

이 책을 읽기에 앞서

『학교 인권교육 길라잡이 ABC : Teaching Human Rights』는 사용자 친화적인 인권교육 도구와 다양한 기본적 인권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이 책은 초·중등 학생들의 인권의식 및 행동을 강화하고자 하는 교사 및 기타 교육전문가들이 인권교육을 실시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학습활동의 구체적 사례 및 조언을 제시한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기존 교과과정에 새로운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인권문제들을 여러 교과목에 통합시켜 수업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성장과정에서 자기 자신과 타인의 권리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탐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인권을 존중하는 성인으로서 자라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특히 초등학교 시기는 구체적인 인권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인권에 관한 태도를 기르는 데 결정적인 시기라는 것이 인권교육 연구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모든 학교 구성원들이 모든 인권 원칙들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며, 만약 학생들이 처음부터 제대로 이해하기를 강요받는다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솔직히 표현하지 못하게 되고 도리어 발달이 방해 받을 수 있다.

이 책에 제안된 수업 활동들은 추가적인 학습자료를 거의 필요로 하지 않는

다. 대신에, 교사들은 함께 공부하는 학습자들과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며 얻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수준이나 학습 상황과 조건에 맞춰 활동의 촉진자와 안내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 책은 이러한 교수-학습의 원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주요한 인권의 개념들과 인권교육의 기초에 대해 언급하고, 참여기법participatory techniques의 기본적 내용과 방법론을 살펴본다.

제2장은 초등학교 교사를 위한 것으로, 인간의 존엄과 평등이라는 인권의 원칙들을 일깨워 줌으로써 어린 학생들에게 자신의 가치와 다른 사람들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3장은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더욱 정교하고 시사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활동들이 포함되어 있다.

제2장과 제3장에서 제안하고 있는 활동들을 통해 학생들이 전 세계에서, 자신들의 교실과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인권문제들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독립적인 사고와 연구를 촉진하며 민주사회에서 능동적인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능들을 함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활동에서는 학생들이 즐겁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학생들의 반발이 너무 크면 활동을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게 오

히려 낫다.

각 활동에는 「세계인권선언」 및 「아동권리협약」의 관련 조항을 참고할 수 있게 하였다. 이 두 유엔협약은 제1장에 소개되어 있으며, 각각 <부록 1>과 <부록 2>에 첨부되어 있다. 관련 조항을 참고하도록 한 이유는 각 활동의 근본 정신을 담은 조항들을 강조하는 데에 있다. 그러나 이 활동이 국제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위의 두 협약에 포함된 모든 권리를 완전히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

<부록 3>에서는 이러한 국제법규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간략하게 소개한다. <부록 5>에는 국제 및 지역 차원에서 개발된 인권교육 자료들을 선별해 놓았고, 이 자료들과 본문에서 언급된 다양한 인권교육 자료들은 <부록 4>에 수록된 기관들 및 기관의 지역사무소를 통해 받아 볼 수 있다.

이 책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인권교육 자료들 중 하나이다. 이 책은 모든 교육과정에 문화적으로 적합한 교육자료의 개발과 연구를 촉진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교사나 일반사용자들은 이 책을 정부, 국가인권기구, NGO 및 기타 시민단체 등에 의해 개발된 다양한 교육자료와 함께 혹은 보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인권교육의 기본

일반적으로 인권은 인간의 본성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리고 그것 없이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인권과 기본적 자유는 우리의 자질, 지능, 재능 및 의식을 최대한 개발·활용하게 해주며, 정신적 필요와 기타 필요를 충족시켜 준다. 인권과 기본적 자유는 각 개인의 천부적인 존엄성과 가치가 존중되고 보호되는 삶에 대한 인류의 점증하는 요구에 기초한다. 이러한 인권과 자유가 부정된다면 이는 한 개인의 비극일 뿐만 아니라 사회 및 국가 안팎으로 폭력과 갈등을 낳게 되어 사회적·정치적 불안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

인권의 역사는 모든 주요한 세계적 사건들과 세계 도처에서의 존엄성, 자유 및 평등을 위한 투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인권이 마침내 공식적, 보편적인 인정을 받게 된 것은 유엔이 창설된 이후였다.

제2차 세계대전의 고통과 잔학성, 그리고 식민지 국가들의 독립을 위한 투쟁이 증대되는 것을 경험한 국제사회는 후유증 극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제적 연대의 필요성에 동의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설립된 것이 유엔이다.

유엔은 1945년에 설립되었을 때 유엔헌장을 통해 인권이 유엔의 주요 관심사인 것을 재확인하였고, 이는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

새롭게 형성된 유엔의 초기 주요 성과 중의 하나는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¹⁾이다. 이 강력한 문서는 오늘날까지 전 세계 모든 이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역사상 처음으로, 보편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문서가 국제적인 조직에 의해 채택되었던 것이다. 또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것처럼 상세하게 진술된 것도 역사상 최초의 일이었다.

세계인권선언은 채택 당시부터 폭넓은 국제적 지지를 받았다. 치열한 이념대립의 시대를 살고 있던 당시 유엔의 58개 회원국들은 서로 다른 이념, 정치체제, 종교 및 문화적 배경, 사회경제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꿈꾸는 세계 비전이라는 인류 공통의 목표와 열망을 세계인권선언에 담아내었다.

1) 세계인권선언의 전문(全文)과 요약문은 부록 1 참조.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의 천부적인 존엄성은 세계의 자유·정의·평등의 기반’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모든 인간이 열망하는 기본권, 즉 생명, 신체의 자유 및 안전에 대한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박해를 피해 외국으로 망명하여 살 수 있는 권리, 사유재산권, 의견과 표현 자유의 권리, 교육받을 권리,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그리고 고문과 굴욕적 대우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는 누군가의 충동이나 의지에 의해 철회·유보·부여될 수 있는 ‘증여의 대상^{gift}’이 아니며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남녀노소, 취약집단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 집단)이 향유해야 할 천부적인 권리이다

초기에 유엔 인권위원회 위원장직을 역임한 엘리노어 루즈벨트 Eleanor Roosevelt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 이러한 기본권의 보편성과 기본권에 수반되는 책임성을 강조한 바 있다.

보편적 인권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걸까요? 우리의 가정 가까이에 있는 작은 장소, 너무나 가깝고 작아서 세계 어느 지도에도 나와 있지 않은 그러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비록 그곳이 개개인의 세계일지라도 말입니다.—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 자신이 다니는 학교, 자신이 일하는 농장이나 사무실도 모두 개인의 세계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모든 남녀노소는 차별 없이 공평한 정의, 동등한 기회, 동등한 존엄성을 추구합니다. 그러한 곳에서 보편적 인권이 의미가 없다면, 그 어느 곳에서도 의미가 없습니다. 보편적 인권이 가정 가까이에서 실현되도록 시민행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더 넓은 세계에서의 진보는 불가능할 것입니다.²⁾

2) 엘리노어 루즈벨트, “우리의 손에 In Our Hands” (1958년 세계인권선언 10주년 기념 연설)

1998년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기념하는 연설에서 당시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이었던 메리 로빈슨(Mary Robinson)은 세계인권선언을 ‘우리 인류의 열망을 담은 역사상 위대한 문서들 중의 하나’라고 칭찬 바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여러 국가에서 헌법의 모델이 되었으며, 다른 어떤 문서들보다도 많은 언어로 번역된 명실상부한 가장 보편적인 인권 기준이 되었다.³⁾

세계인권선언은 이후 상당수의 인권문서들에 영감을 불어넣었으며, 이러한 문서들이 합쳐져 국제인권법을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문서들로 는 1966년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1966년의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이 포함되며, 이 두 규약은 비준 국가들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지닌다. 세계인권선언과 위의 두 규약은 「국제인권장전(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을 구성한다.

국제인권장전 세계인권선언(1948)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 1966)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ESCR, 1966)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51)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1965)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1979)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1984)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1989)

3) 330개 언어 및 방언으로 번역된 세계인권선언 전문을 포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http://www.ohchr.org>나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을 통해 해당 자료를 얻을 수 있다.

세계인권선언과 두 규약에 포함된 권리들은, 인종적 우월성이나 증오에 기반한 사상의 보급을 법으로 처벌하도록 한 1965년의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정치적 및 공적 생활·교육·고용·보건·결혼 및 가정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대책을 명시한 1979년의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등의 기타 조약들에서 보다 구체화되었다.

학교와 관련된 이들에게 특히 중요한 조약으로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⁴⁾을 들 수 있는데, 이 협약은 아동의 인권 보장을 다루고 있다. 198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이 협약은 지금까지 어느 인권관련 조약보다도 많은 국가들에 의해 비준되어 왔다. 이 협약은 위해와 학대로부터의 아동 보호를 보장하고 의료·교육·가정생활 등을 통한 아동의 생존과 복지에 관한 특별 규정을 둔 것 외에도, 아동에게 그들과 관련된 사회 활동 및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2000년에는 동 협약에 대한 두 의정서, 즉 「아동매매, 아동매춘 및 아동포르노에 관한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와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가 채택되었다.

4)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전문과 요약본은 부록2 참조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이후 인권은 유엔 업무의 중심이 되어 왔다. 코피 아난Kofi Annan 유엔 사무총장은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식에서 인권의 보편성을 강조하면서 “인권은 어느 나라에 대해서도 이질적이지 않으며 모든 국가에 내재한다……인권이 없이는 어떠한 평화나 번영도 지속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유엔 체제 내에서, 인권은 여러 다양한 메커니즘과 절차들, 즉 실무단과 위원회, 보고서, 연구 및 성명, 회의, 계획 및 프로그램, 10개년 행동계획, 조사 및 훈련, 자발적 기금 및 신탁기금, 국제·지역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의 지원, 세부 대책의 이행, 실사, 기타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여러 절차들을 통해 더욱 향상되어 왔다.

인권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활동은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유엔개발계획UNDP, 국제노동기구ILO, 세계보건기구WHO 등과 같은 유엔의 전문기관, 프로그램 및 기금,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과 같은 유엔 사무국의 관련부서에 의해서도 지원되고 있다. 기타 국제·지역·국가 차원의 정부 및 비정부 기구들도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93년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서 개최된 세계인권회의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에 참가한 171개 회원국은 인권의 보편성 universality, 불가분성indivisibility,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을 재차 강조하고, 세계인권선언을 이행할 것을 재확인하였다.

참가국들은 인권 증진에 대한 전체적 접근법holistic approach의 채택을 촉진하고 지역·국가·국제 차원의 주체들을 포함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 대화 및 협력의 기본틀’을 제공하는 비엔나선언과 실행프로그램을 채택했다.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 중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인권교육이다. 세계인권선언 채택 이후, 유엔 총회는 회원국과 사회의 모두 부문에 이러한 인권선언문을 배포하고, 그 내용을 일반 대중에게 교육하도록 촉구하여 왔다. 1993년 세계인권회의에서도 교육, 훈련 및 대중홍보의 중요성이 재확인되었다.

세계인권회의의 요청에 따라, 1994년 유엔 총회는 1995년부터 2004년까지의 기간을 유엔 인권교육 10개년으로 선포하였다. 총회는 “인권교육은 정보의 제공에 그쳐서는 안 되며, 모든 발달단계와 모든 사회계층의 사람들이 타인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모든 사회에서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배우는 종합적인 평생과정이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10개년 실행계획(Plan of Action for the Decade)은, 국제사회가 합의한 인권교육에 관한 개념의 정의, 예를 들어 국제인권문서들의 조항들을 바탕으로 한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⁵⁾ 그 조항들에 의하면, 인권교육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지식 및 기능의 제공과 태도의 형성을 통해 보편적 인권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다음 사항을 지향하는 훈련, 보급 및 홍보를 위한 노력

- a)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
- b) 인간의 개성과 그 존엄성에 대한 인식의 완전한 개발

5) 세계인권선언(26조 2항),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3조 1항),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29조 1항), 비엔나선언 및 실행프로그램(sect. D, paras. 78-82) 포함.

- c) 모든 국가, 원주민, 인종·국적·민족·종교·언어 집단 사이의 이해, 관용, 성 평등, 우호관계 증진
- d) 모든 사람들이 자유 사회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 부여
- e) 평화유지를 위한 유엔 활동의 촉진⁶⁾

유엔 인권교육 10개년 실행계획은 수요조사와 효과적 전략의 수립, 국제·지역·국가·지방 차원에서 프로그램과 역량의 개발 및 강화, 상호협력에 의한 교육자료 개발, 대중매체의 역할 강화, 세계인권선언의 전 세계적 보급 등을 통해 인권교육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학교 인권교육 프로세스

인권교육을 교육체제에 흡수시키기 위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며,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국가전략에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실행 과정이 포함될 수 있다.

- 학교 교육을 규제하는 국내법에 인권교육 포함
- 교과과정 및 교과서 개편
- 인권에 대한 훈련과 인권교육방법론을 포함하는 현직 및 예비교사 연수
- 학내 활동과 가정 및 지역사회 현장 활동에 기초한 특별활동 조직
- 교육적 자료의 개발

6) 유엔 문서 A/51/506/Add.1의 appendix, para.2 참조. <http://www.ohchr.org>나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을 통해 해당 자료를 얻을 수 있다.

- 교사와 기타 전문가(인권단체, 교직원 노조, 비정부 기관, 전문가 협회) 등으로 구성된 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

이러한 과정이 각 국가에서 실행되는 구체적 방법은 현지의 교육체제에 따라 좌우된다. 교사들이 수업 목표 설정 및 목표 달성과 관련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재량권의 정도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로운 계획이 효과를 거두려면 항상 교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교사는 인권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중요한 책무성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권관련 주제를 역사·사회·문학·미술·지리·어학·과학 등의 기존 교과목에 자연스럽게 포함시키거나, 인권교육이 하나의 특별과정으로서 기존 교과목에 포함될 수 있으며, 방과후 활동·클럽·청소년 포럼과 같은 학교 안팎의 덜 공식적인 교육의 장을 통해 인권교육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인권 문화는 전체 교육과정 속에 통합되는 것이 이상적이다(그러나 특히 중등학교의 경우, 인권 문화는 대체로 사회학·경제학·인문학 속에 있는 기존의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단편적으로 취급되는 것이 현실이다.)

교실에서 인권교육의 원리들이 학습자들에게 의미 있게 전달되기 위하여 인권교육은 대상 아동의 발달단계와 그들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충분히 감안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저학년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은 자아 존중 및 타인 존중, 인권원리들을 지지하는 학급 문화의 발달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어린 아이들이 기본적인 인권문서들의 근본 원리들을 이해할 수 있지만, 인권문서의 좀 더 복잡한 내용에 대한 교육은 개념 발달 및 분석적 추론 능력이 좀 더 발달된 고학년에게 적합할 것이다.

다음의 표는 어린이의 연령에 따라 인권개념을 점진적으로 도입하도

록 제안하고 있다. 이 제안은 규정적인 것은 아니며 단지 1997년 제네바에서 열린 인권교육 전문가회의에서 개발되고 논의된 한 예를 제시한 것이다.

인권교육의 내용

인권의 역사는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과 가치 및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정의하기 위해 행해진 수많은 노력들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노력은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다. 교사는 이러한 역사의 가치를 인권 교수의 중요한 부분으로 포함하기를 원하며, 그것은 학생들이 성숙해감에 따라 점진적으로 더 복잡하게 될 것이다.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위한 투쟁, 노예제도 폐지를 위한 운동, 경제·사회적 정의를 위한 투쟁, 세계인권선언과 두 후속 규약의 수립, 이후의 모든 협약과 선언문들, 특히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과 같은 이 모든 주제들은 기본적인 법적/규범적 준거의 틀을 제공해 준다.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의 핵심내용은 세계인권선언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 두 문서는 경험을 평가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원리들과 아이디어들을 제공한다. 이 두 문서가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권리들은 모든 인간이 동등한 기준에서 그러한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점에서 보편적이며, 권리들 간에 어떠한 위계도 없다(예: 어떠한 권리도 다른 권리들보다 '비필수적non-essential' 이거나 '덜 중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비분리적이다. 오히려 여러 인권은 상호의존적이며 상호보완적 준거들의 일부분이다. 예를 들어, 정부 공무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표현의 권리, 결사의 권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심지어는

인권개념과 친해지기 — 단계적 접근법

단계	목표	주요 개념	실행	세부적 인권문제	인권기준, 제도 및 기제
이동기 초반					
취학전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생 (만 3세~7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이존중 부모와 교사 존중 • 타인존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아 • 공동체 • 개인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 공정성 • 차이표현/경청 • 협력/분담 • 소신단 활동 • 개별 활동 • 원인/결과에 이해 • 민주주의 • 타인의 입장 이해 • 갈등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종차별 • 성차별 • 불공정성 • (감정적, 신체적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규칙 • 가정생활 • 공동체 규범 • 세계인권선언 • 아동권리협약
이동기 후반 (위의 것 모두 포함하여)					
초등학교 고학년생 (만 8세~14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책임 • 시민의식 • 원하는 것을 필요한 것, 권리와 구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의 권리 • 집단 권리 • 자유 • 평등 • 정의 • 법치주의 • 정부 • 인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성의 가치 인정 • 공정성 • 사실과 의견 구분 • 학교 또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 • 시민으로서의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별/편견 • 빈곤/기아 • 불법(부당함) • 민족중상주의 • 자기중상주의 • 수동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의 역사 • 지방, 국가의 법체계 • 지방, 국가의 인권관련 역사 • UNESCO, UNICEF • 비정부기구(NGO)
사춘기 (위의 것 모두 포함하여)					
중학생 (만 12세~14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적 인권에 대한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법 • 세계평화 • 국제발전 • 국제 정치경제론 • 국제 생태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관점에 대한 이해 •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인용하기 • 연구 수행/정보 수집 • 정보 공유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지 • 무관심 • 방송주의 • 정치적 억압 • 식민주주의/제국주의 • 경제적 세계화 • 환경 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규약 • 인종차별 철폐 • 성차별 철폐 • UN 난민고등판무관 • 지역별 인권협약
청소년기 (위의 것 모두 포함하여)					
고등학교 (만 15세~17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편적 기준으로서 인권에 대한 지식 • 인권을 개인의 인식과 태도에 통합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덕적 책임/배제 • 도덕적 책임/이해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단체 참여 • 시민적 책임 완수 • 시민불복종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량학살 • 고문 • 전쟁범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네바 협약들 • 전문 협약들 • 인권기준의 발전

생필품에 대한 권리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각 인권은 필수적이며 각각은 모든 다른 인권들과 상호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최고의 기술과 정성으로 가르친다 해도, 문서와 역사만으로는 교실에서 인권이 활성화되게 할 수 없다. 세계인권선언이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각 조항의 취지를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그러한 조항들이 사람들의 삶에서 의미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는 없다. '사실들'과 '기본요소들', 심지어는 가장 잘 선별된 사실들과 기본요소들이라 하더라도 인권에 관한 문화를 조성하기에는 충분치 않다. 이러한 문서들이 지적인 중요성 이상의 의미를 갖도록 하기 위해, 학생들은 그러한 사실과 기본 요소들을 자신들의 실제 생활 경험의 기반 위에서 접근하여야 하며, 정의·자유·평등에 관한 그들 자신들의 이해에 기초하여 그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인권에 대한, 인권을 위한 수업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몇몇 초등학교 고학년생과 중·고등학생들은 사회화 능력을 제약하는 자신감의 부족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신이 어떠한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의 권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 인권교육은 이 책의 제2장에서 제안하는 것처럼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우선 자신감과 포용성을 가르쳐야 한다. 제2장에 기술된 신뢰 훈련은 어떤 집단에서도 활용될 수 있으며 화목한 교실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효과적인 인권교육을 위한 중요 전제가 되며, 이러한 활동들은 학생들이 단체협력이 필요한 활동에 익숙해질 수 있을 때까지 (적절히 변경시켜) 반복해서 실시할 수 있다. 이리

한 활동들은 또한 인간 내면의 실질적인 동정심을 육성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더도 덜도 아닌 인간 자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그리고 이 책의 주요 목적이기도 한, 인권에 대한 교육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교사는 인권을 위한 교육을 시작하기를 원하며, 결코 끝마치기를 원치 않는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책의 가장 많은 부분을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활동들에 할애했다. 이러한 실천 활동은 학생과 교사에게 먼저 인권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들, 즉 생명·정의·자유·평등과 인권을 파괴하는 약탈, 빈곤, 고통 등을 상세히 살펴보고, 그런 다음 이러한 개념을 매일의 삶 속에서 발생하는 인권관련 문제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실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인권교육의 초점은 외부의 문제와 사건뿐만 아니라 개인의 가치, 자세 및 태도와 같이 내부로도 향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행동양식을 변화시키고 인권을 위한 책임감을 고취시키기 위해, 인권교육은 독립적인 연구·분석 및 비판적 사고를 강조하는 참여적 방법론 participatory methodology을 사용한다.

권리와 책임

인권문화의 기본 원칙들이 유지되기 위해, 개개인은 자신들을 방어하는 데 “나에게는 이러한 권리가 있어. 그건 내가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게 아니야. 이것은 내 권리야. 책임을 져야 해.” 등과 같은 관점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의 주장은 이유 혹은 근거가 있어야 하며, 그 이유나 근거는 충분히 납득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만약 사람들이 스스로 권리 주장의 충분한 이유나 근거를 생각
해낼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다면(그러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곳으로
학교보다 더 좋은 곳이 있을까?), 그들은 자신의 권리가 유보되거나 박탈
되어도 그 권리를 주장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사람들의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책임감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
들에게 권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야 하며, 그 중요성을 제
대로 알 때 책임감도 함께 증진된다.

물론, 순서를 바꾸어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즉, 먼저 책임과 의무
의 관점에서 인권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교사가 학
생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
다. 책임과 의무가 살아 있는 개념이 되려면 교사들은 학생들이 그러
한 사회적 책임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교사와 학생들은 책임, 의무 또는 권리의 불
가피한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원리와 기
술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갈등 상황의 이러한 측면이 유용한 통찰력을 제공해 줄 수 있으므로,
기꺼이 갈등 상황을 받아들여야 한다. 갈등은 인권교육을 활력 있고
적합하게 만들며, 학생들에게 대립을 두려움 없이 창의적으로 직면하
여 자신만의 해결 방법을 찾도록 격려함으로써 일종의 학습 기회를
부여할 것이다.

가르치기와 설교하기—말보다는 행동

세계인권선언과 아동의 인권에 관한 협약이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유
효하며 적용 가능하다는 사실은 교사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보편적

인권기준을 증진시킴으로써, 교사는 자신이 설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교사들에게는 또 다른 도전이 있다. 즉, 교실과 학교의 교육 환경 자체가 인권이 존중되는 방식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학습이 실제로 효과적이라면, 학생들은 인권에 대해 학습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학습한 인권들이 모범적으로 존중되는 환경 속에서 학습해야 한다.

이것은 어떠한 위선도 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단순하게는, 위선이란 교사의 수업 내용이 교사의 수업 방식과 분명하게 불일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교사가 “오늘은 표현의 자유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자. 거기 뒷줄 입 닥쳐.”라고 말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러한 상황에서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배우게 되는 것은 ‘힘’이지 ‘인권’이 아닐 것이다. 학생들은 오랜 기간 교사를 관찰하면서 지내 교사의 신념을 잘 이해하고 있으므로 부당하게 행동하거나 입버릇이 사나운 교사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가 힘들다. 때때로 학생들은 교사를 기쁘게 해주려는 마음에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교사의 개인적인 견해만을 그대로 따르려고 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적어도 초반에는, 교사들이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 가장 복잡하게는, 위선은 교실과 학교에서, 더 나아가 사회에서 교사와 학생 모두의 인간 존엄성을 어떻게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는가에 관한 심오한 문제를 제기한다.

학교와 학급에서의 ‘인권 분위기(human rights climate)’는 관련된 모든 주체들 간의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의사결정의 진행방식, 갈등 해결 및 기강 확립 방식, 모든 주체 내 및 주체 간 관계 등은 이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들이다.

궁극적으로 교사는 학생, 학교 행정가, 교육당국 및 학부모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 전체를 인권교육에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

여야 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인권을 위한 수업은 교실에서 지역사회로 확대되어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모든 당사자들은 보편적 가치 및 그러한 가치와 현실과의 관계를 논의할 수 있고, 학교가 기본적 인권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일부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게 된다.

학생과 관련해서는 일련의 학급 규칙과 책임을 협의해 결정하는 것이 오랫동안 검증된 가장 효과적인 시작 방법이다(제2장의 '학급 규칙 정하기 활동 참조). 기본적 인권과 모순되지 않는 실천을 가르치는 것은 일관된 모형을 제공한다. 이 방법은 담당 교과와 상관없이 인권을 위한 수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민감한 문제 처리하기

학생들이 인권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때때로 논란의 여지가 있거나 민감한 주제들이 등장하기도 한다. 교사는 학생들의 불쾌감과 잠정적 의견 차이에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교사는 인권이 반드시 가치관의 갈등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학생들이 이러한 갈등을 이해하고 갈등 해결을 추구함으로써 얻는 바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교사들은 때때로 인권교육이 현지의 가치관 및 관습과 모순되어 그 존재를 위협하는 반문화관습적인 원리들(non-native principles)을 부여한다는 이유로 인권교육에 대한 저항에 부딪치기도 한다. 행정가의 저항을 우려하는 교사라면 그들을 사전에 만나 수업 목적과 계획을 공유하고 유엔 인권 준거틀과 관련 교육 사업(예: 유엔 인권교육 10년 사업)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행정가에게 수업에 참관하도록 권장하

라—인권교육은 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인권교육을 위한 교육학적 기법

다음에 소개되는 기법들과 이 기법을 제2장과 제3장의 활동에 적용한 사례는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감정이입과 도덕적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지, 어떻게 자신들이 단순히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가정들에 도전할 수 있게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인간 존엄성·평등과 같은 개념들을 사람·힘·책임 등과 관련된 자신들의 일상 경험 속에 통합할 수 있게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러한 기법은 특히 인권교육에 적합한 것으로 입증되고 있는데, 이는 비판적 사고, 인지적·정서적 학습, 경험 및 견해의 차이 존중, 학습 참가자 모두의 적극적 개입 등이 촉진되기 때문이다.

■ 브레인스토밍 Brainstorming

이 기법은 이론적이면서 동시에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다. 먼저 문제를 분석한 뒤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브레인스토밍은 참여도를 높이고, 참가한 이들이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자극한다.

문제가 제시되면, 그 문제에 대한 반응으로 나온 모든 아이디어를 칠판이나 차트지에 기록한다. 모든 반응을 기록하되, 이 단계에서는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치 않으며 어떠한 제안도 판단하거나 거부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교사는 반응들을 분류하고 분석하는데, 이 단계에서 통합·수정·삭제가 이루어진다. 마지막에 해당 집단은 건의를 하

고 그 문제에 대해 결정을 내린다.

활동의 예: '병 속의 메시지' (66쪽), '상처 주는 말' (84쪽), '소수집단 찾아내기' (97쪽),
'주거' (114쪽), '에너지' (117쪽)

■ 사례 연구 Case studies

학생들을 소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인권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실제 또는 상상의 사례를 연구하게 한다. 사례 연구는 두세 개의 주요 이슈에 초점을 둔 신빙성이 있고 현실적인 시나리오에 근거하여야 한다. 연구를 위한 시나리오는 학생들에게 전체를 한꺼번에 제시하거나, 전개되는 상황('진화하는 가설evolving hypothetical')으로서의 시나리오를 순차적으로 '제공feed'하여 학생들이 그에 반응하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협력과 팀워크team building 뿐만 아니라 분석·문제 해결 및 기획기술을 향상시켜 준다. 사례 연구는 논쟁·토론 또는 추가 조사를 준비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활동의 예: '사리진 기자' (68쪽), '집기방 싸기' (71쪽), '충분한 나이는 언제인가?' (87쪽)

■ 창의적 표현 Creative expression

예술은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고, 추상적 개념을 개인화하며, 인권에 대한 지적 반응뿐만 아니라 정서적 반응을 포함함으로써 태도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야기·시·그래픽 미술·조각·연극·노래·무용 등의 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 교사가 예술 전공자일 필요는 없으며, 단지 학생들이 담당할 과제를 결정하고 학생들의 창작품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활동의 예: '나는 누구일까?' 책 만들기' (46쪽), '나의 일대기 만들기' (48쪽), '벽/바다

에 나 그리기' (48쪽), '친구와 편지 교환하기' (52쪽),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 (61쪽), '아동은 무엇이 필요한가?' (62쪽), '아동의 권리 증진' (63쪽), '그 사람들은 모두 같아' (93쪽)

토론 Discussion

둘씩 짝지어서 소집단으로 아니면 반 전체가 의미 있는 토론을 진행하도록 독려하는 기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신뢰와 존중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생들은 나름대로의 '토론 규칙'을 정해도 좋다.

토론은 다양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일부 주제는 공식적 토론, 패널 또는 소위 '피시 보울(Fish Bowl, 어항)'의 형태에 적합하다. 소집단이 토론을 벌이는 동안 학급의 나머지 학생들은 경청하고 있다가 나중에 논평을 하거나 질문을 한다.

또 어떤 주제들은 '토크링 씨클(Talking Circle, 말하는 원)'에 더 적합할 수 있다. 학생들은 두 개의 겹친 원을 만들고, 안쪽 원의 학생들은 원 바깥쪽으로, 바깥 원의 학생들은 원 안쪽을 보고 앉는다. 서로 마주보고 앉은 사람과 토론을 한 뒤, 일정 시간이 지나면 교사가 안쪽 원의 학생들에게 한 자리 오른쪽으로 이동하도록 지시하여 동일한 주제로 새로운 파트너와 토론하게 한다. 개인적이거나 정서적인 주제들은 둘이 짝을 짓거나 소집단으로 토론하는 것이 가장 좋다.

하나의 주제를 놓고 반 전체가 참여하여 토론하게 하려면, '돌아가며 말하기(Talking Around)'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즉, 교사가 "존엄성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니?" 또는 "나는일 때 행복하단다."와 같은 자유로이 답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고 학생들이 이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하도록 한다.

토론을 시각적으로 생생하게 진행하는 방법으로 '디스커션 웹

Discussion Web, 토론 거미줄'이 있다. 학생들이 토론을 위해 원을 만들어 앉은 뒤 한 사람씩 이야기한다. 이렇게 토론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털실 뭉치를 말하는 사람에게 계속 전달하여 실이 풀어지게 한다. 이야기를 한 사람은 자신의 손을 거쳐 간 털실을 잡고 있다. 나중에는 토론 집단이 모두 털실 거미줄로 연결되면서, 이 집단 내에서 이루어진 커뮤니케이션의 패턴을 실감나게 보여줄 수 있다.

활동의 예: '돌아가며 말하기' (47쪽), '나와 내 감각 찾기' (48쪽), '돌아가며 소원 빌기' (49쪽), '새로운 나라 계획하기' (58쪽), '인간이라는 것의 의미' (66쪽), '시작과 끝' (67쪽), '법 앞의 평등' (111쪽), '자신의 권리를 알 권리' (109쪽)

■ 현장견학/지역사회 방문 Field trips/Community visits

학교의 연장선으로서 지역사회를 활용하는 방법도 유익하다. 인권 문제가 전개되는 곳(법원, 교도소, 출입국관리소 등)이나 권리를 수호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일하는 곳(비영리 단체, 식품 및 의류배급소 food or clothing banks, 무료 진료소 등)을 방문할 수 있다.

이러한 견학의 목적은 사전에 설명해 주어야 하며, 학생들에게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자신이 관찰한 것을 기록하도록 지시하고, 기록한 내용을 나중에 토론에 활용하거나 견학 감상문으로 작성하게 한다.

활동의 예: '의회와 법원' (76쪽), '우리 학교 학생이 아닌 사람은 누구?' (106쪽), '음식' (111쪽), '보건' (117쪽)

■ 인터뷰 Interviews

인터뷰는 직접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며 문제와 역사를 개인화한다. 인터뷰 대상자는 가족이나 지역사회 구성원, 활동가, 지도자 또는 인

권관련 사건의 목격자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구술된 역사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 인권문제를 문서화하고,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활동의 예: '의회와 법원' (76쪽), '옛날 옛적에' (91쪽), '장애인 연사 초청' (105쪽), '경
계 연사 초청' (123쪽)

■ 연구 프로젝트 Research projects

인권문제는 독립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는 여러 기회를 제공한다. 도서관이나 인터넷 시설을 이용하는 공식적인 연구도 가능하며, 인터뷰·여론조사·미디어 관찰·기타 자료 수집 기법을 바탕으로 하는 정보 제공 목적의 연구도 가능하다. 개인 프로젝트 또는 집단 프로젝트의 구분 없이, 연구 프로젝트는 독립적인 사고와 자료 분석 기술을 발달 시키며 인권문제의 복잡성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가능케 한다.

활동의 예: '집가방 싸기' (71쪽), '어린 병사' (73쪽), '인도주의적 법' (74쪽), '의회와 법
원' (76쪽), '국제형사재판소' (81쪽), '소수집단 찾아내기' (97쪽), '음식'
(111쪽), '근로' (115쪽), '에너지' (117쪽)

■ 역할극/시뮬레이션 Role-plays/Simulations

역할극은 학생들 앞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의 연극이라 할 수 있다. 대체로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며, (해설자와 주요 인물로 구성된) 이야기의 형태를 띠거나, (교사나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즉석 대화를 구성하여 인물들이 상호작용을 하는) 상황극의 형태를 띠 수 있다. 역할극은 짧을 때 가장 효과가 크다. 역할극이 끝난 후에는 토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도록 한다.

그러한 활동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점을 극대화하고 혹시 부정적인 감정이 남아 있다면 그러한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자신의 느낌, 두려움 또는 이해한 바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사는 학생이 자신의 실제 상황과 동일한 역할을 맡지 않게 하여야 한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행동에서 벗어나, 그에 대해 평가하거나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 학급의 다른 학생들도 논평이나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심지어는 역할극에 합류하는 것도 가능하다.

역할극의 변형된 형태로 모의재판·가상 인터뷰·시물레이션 게임·청문회·심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변형 역할극은 대체로 구성이 더 복잡하고, 시간이 더 오래 걸리며, 교사와 학생들이 더 많이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시각 자료 Visual aids

칠판·OHP·포스터·전시물·플립 차트·사진·슬라이드·비디오·영화 등을 사용함으로써 학습 효과를 배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슬라이드와 차트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간결하게 요약되어야 하며 개요 또는 목록의 형태를 띠어야 한다. 텍스트로 작성되어야 할 부분이 더 많다면, 유인물을 활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각 자료는 남용될 소지가 있다. 참여 토론이나 학생들의 직접 참여가 시각 자료로 대체되어서는 안 된다.

평가

정보의 내용과 학생들의 이해 수준을 표준적인 방법으로 검사하는 것

이 가능하다. 그러나 태도와 태도의 변화를 평가하는 일은 판단의 주관적 성격 때문에 더욱 힘들다. 반복적으로 주어지는 개방형 질문지가 가장 간단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기껏해야 순간적인 인상밖에 제공하지 못한다.

학생들에게 개인, 학급, 학교의 관행을 인권 차원에서 평가하는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학습활동이 될 수 있다(제3장 끝부분의 '우리 학교의 인권 온도 재기' 활동 참조).

2

취학전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인권교육 주제

일반적으로 인권은 인간의 본성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리고 그것 없이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인권과 기본적 자유는 우리의 자질, 지능, 재능 및 의식을 최대한 개발·활용하게 해주며, 정신적 필요와 기타 필요를 충족시켜 준다. 인권과 기본적 자유는 각 개인의 천부적인 존엄성과 가치가 존중되고 보호되는 삶에 대한 인류의 점증하는 요구에 기초한다. 이러한 인권과 자유가 부정된다면 이는 한 개인의 비극일 뿐만 아니라 사회 및 국가 안팎으로 폭력과 갈등을 낳게 되어 사회적·정치적 불안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인권교육의 목표는 ‘자신과 타인을 신뢰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키워주는 데 있다. 이것은 전체 인권문화의 기반이 되는데,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교사의 ‘수업 개성(teaching personality)’이 매우 중요하다. 지원적 접근법(supportive approach)은 언제나 모든 활동을 의미 있게 만들어 주며, 심지어 인권 수업을 위한 활동이 아닌 경우에도 그러하다.

이야기식 방법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아이들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이 매우 좋아하는 등장인물의 성품이나 이야기 속에 연관된 교훈을 통해 도덕심을 배우고 이를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이야기는 출판된 아동서적이거나, 부모 또는 조부모를 통해서 알 수도 있고 상상력을 발휘하여 만들어낼 수도 있다.

활용 가능한 자료가 있는 학급 도서관도 유용하다. 우선, 책을 선택할 때는 다문화적이고 적극적이며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성격을 지닌 남녀 모두가 등장하는 흥미로운 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그림책을 보여줄 때는 그 책의 이야기나 그림 속의 훌륭한 점들을 지적해 주어야 한다.

여건이 허락된다면 학생들은 요리하기, 나무로 긴 의자 만들기, 또는 나무 심기 등에 참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상상력을 동원해 할 수도 있다. 단, 모든 활동에 남학생과 여학생이 함께 참여하여야 하고, 활동과 관련하여 의견 대립이 생길 경우, 반 전체가 그 상황을 공평하게 해결하고 차별적인 태도를 근절할 수 있는 규칙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일상적인 학교생활에서 교실의 좌석 배치 방식이나 학생들의 줄 순서를 바꾸는 것으로도 평등의 개념을 체득하게 할 수 있는데, 이미 분명하게 드러나는 차이가 더 강화되는 방식으로 아이들을 분류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일상적인 경험을 통하여 아이들에게 차이는 인정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학생들 간의 우애를 도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갈등 해결하기

학급 생활에서 종종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교사는 갈등을 처리하는 일관된 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교사는 갈등 상황에 대해 토론할 때 항상 열린 자세로 임해야 하며, 어떤 문제든 ‘해결책은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그러나 아이들이 해결책을 찾기 위해 문제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도록 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다.

체계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접근법을 택할 수 있다.

1. 문제점을 확인하고 인정한다. 신체적·언어적 행동을 모두 멈추고 관련된 아이들에게 자신들의 태도에 대해 함께 논의하게 한다.
2.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듣는다. 사건에 관련된 아이들과 목격한 아이들에게 일어난 사건에 대해 묻는다. 모두 돌아가면서 방해 받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게 한다. 필요한 경우 쓰다듬는다든가 안아주는 등의 긍정적인 격려 행위를 통해 분노나 죄의식의 감정을 가라앉혀 줄 수 있다. 그러나 항상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직접 관련된 아이들에게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아이들이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교사가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공해도 좋다.
4. 제시된 해결 방안들을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공정한 해결책이 복수로 존재

- 할 수 있음을 지적해 주고, 이러한 해결 방안들이 가져올 수 있는 물리적 · 감정적 결과를 생각하게 하며, 유사한 성격의 과거 경험을 상기시켜 준다.
5. 행동 방향을 선택한다. 제시된 해결 방안들 중 가장 합리적인 안을 상호 합의를 통해 선택한다.
 6. 합의한 행동을 실행에 옮긴다.

차별에 대처하기



차별적 태도의 경우, 대체로 피해 아동과 가해 아동 모두 차별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의 행동은 특히 중요하다. 우선, 차별적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여 그러한 태도는 절대로 용인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교사는 피해 아동의 분노, 두려움 또는 혼란에 대해서는 어떠한 평도 하지 말고, 그 아이에게 분명한 지지의 태도를 보인다. 차별적 태도를 보인 아이에게는 단호하지만 따뜻한 태도를 취한다. 또한 피해 아동이 자신의 성별 · 외모 · 장애 · 언어 · 인종 또는 기타 측면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받은 것은 잘못된 편견 때문임을 깨닫도록 도와주고, 관련된 아이들 및 그 상황을 목격한 아이들과 함께 차별적 태도를 일으킨 편견에 대해 토론해 본다. 이러한 사건에 대해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토론해 보는 것도 좋다.

이 방법은 모든 학급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상황에서도 활용 가능하다. 모든 차별적 태도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데, 가능하다면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학급 내에서 민족적 다양성이 인정되고 이해되며 심지어 축하받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인종차별이나 남성우월주의는 대체로 아주 어린 나이의 아이들에게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방법을 활용하면 교정의 효과를 볼 수 있다. 교사는 자기 자신도 차별적 태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신의 차별적 태도를 늘 파악하여 극복하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교실과 학교가 장애 아동에게도 접근 가능한 따뜻한 곳이 되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다음에서는 인권개념을 유아교육에 도입하기 위한 전략 및 활동을 제시한다.

유사점과 차이점 인식하기

특징 찾기 Attributes

아이들에게 원을 만들어 앉게 한다. 한 아이에게 원 안에 서서 자신을 묘사하게 한다. 예를 들어, “허리띠를 매고 있어.”라든가 “여동생이 하나 있어.”라고 말하면 원 안의 아이를 포함하여 그와 같은 속성을 가진 모든 아이들은 자리를 바꾸어야 한다. 앉을 자리가 없어진 아이들 중 한 아이가 다음으로 원 안에 서서 자신의 속성 한 가지를 말한다. 아이들은 이 놀이를 통해 여러 면에서 자신들이 서로 비슷하거나 다르다는 점을 쉽게 이해하게 된다. 놀이가 끝날 무렵 ‘친절한 사람’과 같은 무형적인 속성을 선택하는 것도 재미있을 것이다. 대체로 이 게임은 이 시점에서 끝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무형적인 속성을 금방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교사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한 태도적 속성을 인정하는지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 UDHR 제1조와 2조: CRC 제2조

같은 사람끼리 보트 타기 In the same boat

교사는 사람들이 서로 비슷한 점이 있는데도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을 설명한다. 그런 다음, 교사는 태어난 달, 형제의 수, 애완 동물의 종류,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게임 등과 같이 분류항목 가운데 하나를 예를 들어 말하고, 그 분류항목에 대해 동일한 속성을 지닌 아이들끼리 집단을 만들게 한다. 연령대가 더 높은 아이들에게는 예를 들어, 구사 가능한 언어의 수, 장래 희망, 취미, 좋아하는 교과목 등과 같이 좀 더 복잡한 분류항목을 제시하여 답하게 할 수 있다. 이 게임은 “이 활동으로부터 어떠한 점을 알게 되었는가?”라는 질문과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한 토론으로 마무리 짓는다.

* UDHR 제2조: CRC 제2조

자신감과 자부심 키우기

1.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떠한가?

「나는 누구일까?」 책 만들기 A 「Who Am I?」 book

아이들에게 자신에 대한 책을 만들게 하고 표지에는 자신의 자화상을 그리게 한다. 책은 아이가 직접 그린 그림이나 시 또는 산문 등으로 꾸며질 수 있다. 글쓰기가 가능한 아이들이라면 자세한 자기소개, 자

신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도 포함할 수 있다. 자원이 제한되어 있다면, 한 아이에게 한두 페이지씩을 할애해서 학급 전체의 책을 만들 수도 있다.

* UDHR 제3조와 19조: CRC 제6~8조, 12~13조, 30조

■ 돌아가며 말하기 A circle for talking

아이들이 원을 만들어 앉게 하고, 교사와 방문객들도 함께 앉는다. 교사는 자유로운 답변이 가능한 질문들을 던지고, 아이들은 돌아가면서 답한다. 교사가 던지는 질문의 예는 다음과 같다.

- 나 자신에 대해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은 ……
- 나는 ……를 하고 싶어.
-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은 ……
- 내 이름의 의미는 ……
- 나는 ……에 대해 배우고 싶어.
- 내가 행복할 때는 ……
- 내가 슬플 때는 ……
- 나는 좀 더 ……해지고 싶어.
- 언젠가 ……이기를 바라.

답변을 들을 때는 말하는 도중에 끼어들지 않고 모두에게 동일한 시간을 허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말하고 싶지 않은 아이들은 ‘통과’를 사용할 수 있다. 활동이 끝날 때까지 모두가 제자리에 앉아 있도록 하고, 활동에서 나온 답변은 『나는 누구일까?』라는 책에 포함시킬 수 있다.

* UDHR 제18~19조; CRC 제8조, 12~14조, 17조, 31조

■ 나의 일대기 만들기 The lifeline

아이들 각자에게 자신의 삶을 의미하는 털실 한 가닥을 길게 늘어놓게 한다. 그런 다음, 자신의 털실(삶의 선)에 자신에게 일어났던 주요한 일들을 보여주는 그림, 이야기, 물건 등을 매달아 놓는다. 시간적 순서에 따라 매달 수도 있지만, 아이가 원하는 다른 어떠한 순서로도 가능하다. 또한 미래까지 연장할 수도 있다.

* UDHR 제1조, 3조, 19조; CRC 제6조, 8조, 12~14조, 27조, 30~31조

■ 벽/바닥에 나 그리기 Me on the wall/ground

커다란 종이에 각자의 몸의 윤곽선을 그리게 한다.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를 종이 위에 눕혀 놓고 몸의 윤곽선을 따라 그리는 것이다. 학생에게 신체의 세부적인 형태를 그리고 색을 칠하게 한 후 개인적, 신체적 특성을 쓰게 한다. 이름, 키, 몸무게, 학교에서 또는 어른이 되어서 가장 배우고 싶거나 하고 싶은 것 등을 쓰면 된다. 모든 활동이 끝나면 그림을 교실 벽에 붙여 놓고 아이들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한다.

* UDHR 제3조, 19조, 24조; CRC 제6~8조, 12~13조, 28~29조, 31조

■ 나와 내 감각 찾기 Me and my senses

아이들에게 원을 만들어 토론하게 하거나 역할극을 통해 다음에 대해서 경험해 보게 한다.

- 청각은 내가할 수 있게 해준다.
- 시각은 내가할 수 있게 해준다.
- 후각은 내가할 수 있게 해준다.
- 촉각은 내가할 수 있게 해준다.
- 미각은 내가할 수 있게 해준다.

장애아동의 경우라면 그 아이들의 필요에 맞게 “매우 잘/전혀) 보지 못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나아. 그리고 나는를 할 수 있어” 등과 같이 적절하게 질문을 고친다. 아이들 각자가 청각, 후각 또는 촉각을 도와줄 수 있는 기구를 발명하게 하고 발명품에 대해 묘사하게 하거나 그림이나 극으로 표현하게 한다.

* UDHR 제22조, 25~26조; CRC 제23조, 26조, 28~29조

■ 돌아가며 소원 빌기 Wishing-circle

아이들을 원으로 앉게 한다. 각자에게 다음과 같은 소원을 말하게 한다.(이 활동은 소집단이나 짝을 지어 할 수도 있다.)

- 내가 동물이 될 수 있다면, 나는 ___가 되고 싶고, 그 이유는
- 내가 새가 될 수 있다면, 나는 ___가 되고 싶고, 그 이유는
- 내가 곤충이 될 수 있다면, 나는 ___가 되고 싶고, 그 이유는
- 내가 꽃이 될 수 있다면, 나는 ___가 되고 싶고, 그 이유는
- 내가 나무가 될 수 있다면, 나는 ___가 되고 싶고, 그 이유는
- 내가 가구가 될 수 있다면, 나는 ___가 되고 싶고, 그 이유는
- 내가 악기가 될 수 있다면, 나는 ___가 되고 싶고, 그 이유는
- 내가 건물이 될 수 있다면, 나는 ___가 되고 싶고, 그 이유는

- 내가 자동차가 될 수 있다면, 나는 ___가 되고 싶고, 그 이유는 ……
- 내가 도로가 될 수 있다면, 나는 ___가 되고 싶고, 그 이유는 ……
- 내가 시/구/군(행정구역)이 될 수 있다면, 나는 ___가 되고 싶고,
그 이유는 ……
- 내가 외국이 될 수 있다면, 나는 ___가 되고 싶고, 그 이유는 ……
- 내가 게임이 될 수 있다면, 나는 ___가 되고 싶고, 그 이유는 ……
- 내가 음반이 될 수 있다면, 나는 ___가 되고 싶고, 그 이유는 ……
- 내가 TV 쇼가 될 수 있다면, 나는 ___가 되고 싶고, 그 이유는 ……
- 내가 영화가 될 수 있다면, 나는 ___가 되고 싶고, 그 이유는 ……
- 내가 음식이 될 수 있다면, 나는 ___가 되고 싶고, 그 이유는 ……
- 내가 색깔이 될 수 있다면, 나는 ___가 되고 싶고, 그 이유는 ……

* UDHR 제19조; CRC 제13~14조

2. 남 들 과 더 불 어 어 땡 게 살 고 있 는 가 ?

■ 우리 가족 인형 만들기 My puppet family

아이들 각자에게 자신을 포함한 가족의 인형을 만들게 한다. 인형 만들기는 간단하다. 두꺼운 도화지를 잘라 색을 칠하고 나무 막대기를 붙인 다음 찰흙으로 고정시키면 된다. 인형 만들기가 완성이 되면 각 인형에 이름을 적어놓고 가족 관계를 설명하게 한 다음 자기 가족들의 특별한 의식(예를 들어, 결혼식)이나 잔치를 고안해서 학급의 다른 아이들에게 보여주게 한다. 이러한 가족 인형 활동은 주변으로 확대해 이웃사람들을 포함시킬 수도 있는데, 정기적으로 이 활동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가족이나 이웃과 더욱 친밀해질 수 있다. 이 활동은 범위를 더욱 확대시켜 세계 여러 곳의 다른 사람들을 포함하게 할 수도 있다.

* UDHR 제16조, 20조, 27조; CRC 제9조, 10조, 15조, 31조

상상의 친구 찾기 Imaginary friend

아이들에게 눈을 감고 조용히 앉거나 눕게 한 후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게 한다. 이러한 호흡을 두 번 더 반복하게 한다. 아이들에게 이 세상의(또는 우주의) 특별한 곳, 마음에 드는 곳을 상상하라고 말한다. 아이들이 (상상 속에서) 지금 그 장소를 걸으면서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느끼고, 듣고, 보고 있다고 상상하라고 말한다. 아이들의 집 또는 건물을 상상하게 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특별한 방을 찾게 한다. 그 방의 한쪽 벽에 문이 있는데, 이 문은 위로 밀어 올려야만 열 수 있다고 얘기해주고 다음과 같은 상황을 제시해준다.

문이 천천히 위로 밀려 올라가면서 이전에 전혀 만나본 적이 없는 특별한 친구가 나타나는데 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으로 얼굴이 드러난다. 이 친구는 나이가 많을 수도 있고 어릴 수도 있다. 이 친구는 항상 그곳에 있고, 말할 상대나 의지할 상대가 필요할 때 원한다면 언제라도 이 친구를 찾아갈 수 있다. 문을 닫고, 집을 나와 교실로 다시 돌아온다.

상상 밖으로 나온 아이들을 원으로 돌려앉게 하거나, 집단 또는 짝을 지어 자신이 상상한 것을 서로 이야기해보도록 한다.

* UDHR 제20조; CRC 제15조

친구와 편지 교환하기 Letters and Friends

다른 학교 또는 다른 나라의 한 학급과 편지 또는 이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준비한다. 처음에는 반 전체가 준비한 시나 선물을 보내도록 한다. 어느 정도 관계가 가까워진 후에는 거리 등 여건이 가능하면 직접 방문하여 다른 학교나 다른 지역사회의 아이들을 만나는 기회를 만들어줄 수도 있다.

그 자매학교twin school에 대해 다음을 조사한다.

- 학교는 얼마나 큰가?
- 그곳의 아이들은 어떤 놀이를 하는가?
- 부모님들은 대부분 무슨 일을 하시나?(농촌, 어촌 등 지역별 특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 차이점과 유사점은 무엇인가?

* UDHR 제19~20조, 26조; CRC 제13조, 17조, 29조

상급생 도우미 만들기 Buddy

교사는 반 아이들이 상급생 한 명씩을 친구로 삼을 수 있게 해주고,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면 상급생 친구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을 격려해주는 활동을 준비한다. 상급생들이 자신보다 나이 어린 친구들과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거나 공부를 도와주는 등의 관심을 갖도록 독려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 UDHR 제20조; CRC 제15조



아이들에게 토론집단을 만들어 자신의 좋은 점에 대해 생각하게 하거나, “우리는 사람들의 어떠한 점을 좋아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그런 후에 다음과 같은 주제로 토론을 하도록 한다.

- 자신이 장점으로 여기고 있는 특성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러한 특성을 존중하는가?
- 자신에게는 없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장점을 존중하는가?
- 모든 인간은 존중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는?
-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다음으로 아이들에게 다른 사람이 자신을 존중해주지 않아서 마음이 상했던 적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라고 한다.

- 존중받지 못했을 때 어떠한 느낌이 들었는가?
- 왜 사람들은 때때로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는가?
- 존엄성(dignity)이란 무엇인가? 여러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했을 때 여러분 자신의 존엄성이 손상되는가?
-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을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 “우리가 모든 인간은 존중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할 때 이것은 무슨 의미인

가?”라고 질문한다.

- 사람들이 서로를 더 존중한다면 지역사회의 생활이 어떻게 평화로워질 수 있는지 사례를 말하게 한다.
- 누군가를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한 가지씩 생각해 보게 한다.

* UDHR 제1~2조, 12조; CRC 제2조, 12~14조, 16조, 29조

세차 놀이 The washing machine

아이들을 두 줄로 나란히 서게 한 후 간격을 좁혀 서로 마주보게 한다. 한 아이가 마치 세차기를 통과하듯 두 줄 사이를 지나가게 한다. 다른 아이들은 지나가는 아이의 등을 토닥거리거나 악수를 하면서 칭찬, 애정, 격려의 말을 해준다. 이때 문화적으로 문제가 없는 행동이 되도록 교사가 사전에 주의를 주어야 한다. ‘세차기’를 완전히 통과하고 나면 아이는 밝게 웃으며 행복해 한다. 일단 지나간 아이는 다시 줄에 서고, 다른 아이에 대해서 똑같은 과정을 반복한다. 한 번에 장시간에 걸쳐 모든 아이들에게 하는 것보다 매일 한두 명의 아이에 대해 하는 것이 더 재미있다.

*UDHR 제1조, 2조; CRC 제2조

신뢰 쌓기

신뢰는 교사-학생의 관계에서 시작된다. 교사는 다음과 같이 함으로써 학생이 마음을 편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한다.

- 학생들에게 교사 역시 학생들과 같은 인간이라는 점을 알게 한다.
- 모든 활동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준다.
- 친근하지 않은 용어나 개념을 설명해 준다.
- (특정 활동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한다.

가능하면 교사는 매일 몇 분간이라도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행사와 미디어에서 다룬 뉴스를 토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인권 문제를 덜 공식적인 방법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그 자체로도 교육이 될 수 있다.

맹목적 신뢰 Blind trust

반 아이들로 하여금 둘씩 짝을 짓게 한다. 둘 중 한 아이에게 눈가리개를 쓰게 하고 눈을 가리지 않은 아이가 앞장서서 눈가리개를 한 짝을 몇 분 동안 데리고 다니게 한다. 단, 이때 앞장서는 아이(이하 리더)가 자신의 힘을 남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준다. 이 활동의 취지는 신뢰를 쌓는 것이지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리더는 목소리로 안내를 하거나 게임을 하면서 가능한 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눈가리개를 한 짝의 발이나 손가락으로 사물을 더듬을 수 있게 하는 등의 방법 등이 있다.

몇 분 후에는 리더와 눈가리개를 한 아이의 역할을 바꿔서 앞서 했던 과정을 반복한다.

이 활동이 끝나면 아이들에게 있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한다. 이때 눈가리개를 했을 때의 느낌뿐 아니라 리더였을 때의 느낌도 서로 이야기하도록 한다.

이 활동은 시력(또는 청력) 장애를 지닌 사람들의 생활이 어떠한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줄 뿐 아니라 전체 사회에서 신뢰의 중요성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국제사회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없는지에 대한 토론을 진행할 수 있다.

* UDHR 제28조: CRC 제3조, 23조

학급규칙 정하기

학급 분위기의 중요성과 참여 및 협력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아이들의 제안이나 의견은 최적의 학급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열린 마음으로 아이들의 도움을 구하고 필요한 변화는 과감하게 시도한다.

다음의 활동은 학급 분위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교사는 학급 전체를 학급 운영에 참여시키려는 의지와 학생들을 향한 신뢰도를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다. 또한, 학급에서는 어떠한 규칙이 바람직하고 가능하며 그러한 규칙이 어떻게 지켜질 수 있으며 학급 환경을 유지하는 데 교사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아이들 스스로 생각하게 한다.

■ 학급에 필요한 것 Classroom needs

학급 규칙을 정할 때는 브레인스토밍이나, 소그룹의 토의 결과를 학급 전체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는 방법, 또는 개별 과제로 내주고 교사가 이를 취합하여 나중에 학급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법 등이 있다.

아이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묻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 목록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 아이들이 제시한 목록들을 나열해 놓고, 아이들에게 그중에서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을 고르게 하는데, 이때의 목록은 처음 작성한 것보다 훨씬 짧으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을 담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한 목록들을 ‘우리 학급에 필요한 것’이란 제목을 붙여 차트에 정리하게 하고, 이 가운데 자신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기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항목들을 다시 선택하게 한다. 선택된 항목들을 ‘우리 학급의 권리’라는 제목을 단 차트에 기입한다. 학생들에게 그러한 항목들을 선택한 이유를 묻는다.

* UDHR 제7조, 21조; CRC 제12~13조, 28~29조

■ **학급 책임** Classroom responsibilities

권리와 책임 사이의 본질적인 관계를 강조한다. 학생들이 학급 권리의 목록을 정하고 나면, 각 권리를 책임으로 바꾸어 쓰게 하고 바뀐 항목들을 ‘우리 학급의 책임’이라는 제목의 별도 차트에 기입한다. 예를 들면 “우리 모두가 교실에서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권리를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을 모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을 책임이 있다.”로 바꿀 수 있다.

* UDHR 제29조; CRC 제29조

■ **권리와 책임이 함께하는 생활** Living with rights and responsibilities

학급에서 기본 ‘권리’와 ‘책임’에 대한 목록이 합의에 의해 결정되면 필요할 때마다 ‘권리’와 ‘책임’을 참조하거나 수정할 수 있도록 보이

는 곳에 게시한다. 간혹, 학생이나 교사가 규칙을 어기거나, 규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학급 규칙이 다른 교사들이나 학교 행정의 규칙과 일치하지 않아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럴 때는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논의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모두 단순한 통제가 아닌 전체의 합의에 의해 질서를 확립하기가 훨씬 더 힘들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는 타협과 신중한 협상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과정 자체가 중요한 학습 경험이 된다.

* UDHR 제7조, 11조, 21조; CRC 제12~13조, 28조, 29조

인권 이해하기

일단 학급 규칙을 정했으면, 자연스러운 다음 단계는 보편적인 차원에서 동일한 사항을 고려해 보는 것이다.

새로운 나라 계획하기 Planning for a new country

아이들끼리 소그룹을 지어 앉게 하고 몇 가지 상황을 가정한다.



새로운 대륙이 발견되었는데 이 대륙에는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지만, 지금까지 아무도 그곳에 산 적이 없어서 법도, 역사도 없다. 이러한 곳에 학급 전체가 정착하려 한다고 설명하고, 아이들에게 이 새로운 나라 국민의 권리 목록을 작성하게 한다. 교사 또한 자신이 이 새로운 나라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게 될

지 전혀 알지 못한다.

학생들을 여러 소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의 학생들에게 서로 협의하여 나라의 이름과 10개의 권리를 정하게 한다. 각 그룹이 권리 목록을 제시하면, 학급 전체가 모여 제시된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학급 목록(class list)’을 작성한다. 이 학급 목록에 대해 토론한다.

- 일부 권리를 제외시키면 어떠한가?
- 목록에 빠져 있는 중요한 권리가 있는가?
- 이 목록과 학급 규칙 목록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UDHR 제13조, 21조, 26조; CRC 제12조, 13조

■ 세계인권선언 소개하기

Introducing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세계인권선언을 소개하면서, 이 선언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열거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나서, 세계인권선언의 요약본을 읽어준다(부록 1 참조). 학생들은 학급 목록에 포함된 권리와 일치하는 조항을 들을 때마다 학급 목록의 권리 옆에 해당 조항의 번호를 적는다. 다 읽은 후에, 그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토론한다.

- 세계인권선언에 포함되어 있는 권리 중에서 학급 목록에 빠져 있는 권리는 무엇이고, 학급 목록에 추가 하고 싶은 새로운 권리는 무엇인가?
- 학급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권리 중에서 세계인권선언에 빠져 있는 권리가 있는가?
- 세계인권선언은 권리뿐만 아니라 책임도 포함하고 있는가?

학생들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요약본을 활용하여 유사한 활동을 시도해 볼 수 있다.

* UDHR 제21조, 26조; CRC 제 29조

아동의 권리 소개하기

아동의 권리는 무엇인가?

학생들에게 단지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청소년(아동)으로서의 자신들에게 특별히 적용되는 권리와 책임이 있는지 묻는다. 어떤 사람이 그 당시에 단지 '어린이'라는 이유로 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한다면(또는 안 한다면) 잘못이라고 여길 수 있을 만한 행동에는 무엇이 있을까?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소개하면서, 이 협약은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하여 자신의 공동체에서 훌륭한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설명한다. 아이들이 '필요한 것needs'과 권리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다음에 대해 토론한다.

- 유엔이 아동의 인권을 위한 별도의 협약을 채택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 하는가?
- 아동에게 '필요한 것'과 성인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 다른가?
- 왜 아동은 특별 보호가 필요한가? 예를 들어 설명하라.

- 왜 아동의 복지에 관한 특별 조항이 필요한가?
- 아동은 자신의 생존, 행복, 발달을 위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 아동은 자신의 공동체에 참여할 필요가 있는가? 예를 들어 설명하라.
-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도록 하여야 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예를 들면, 부모 · 교사 · 기타 성인 · 다른 아이들 · 정부)

■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 Wants and needs

아이들을 소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별로 아동이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보여주는 카드 10장을 만들게 한다. 잡지에서 사진을 오리거나 직접 그려도 좋다. 카드에 제목을 달도록 도와준다. 각 그룹이 카드를 설명하고 ‘필요한 것’이라는 표제 아래 카드를 붙이게 한다.

그 다음, 새로운 정부가 학급이 선택한 필요한 것 중에서 일부만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발표하고, ‘필요한 것’ 목록에서 10개의 항목을 삭제해야 한다고 말한다. 선택된 카드는 떼어내서 ‘원하는 것 wants’이라는 표제 아래 붙인다.

그리고 나서, ‘필요한 것’ 목록을 더 줄여야 한다고 발표하고 목록에서 10개를 더 삭제하게 하고 이전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끝으로 이 활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토론한다.

- 처음에 어떠한 항목들이 삭제되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
-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은 사람에 따라 다른가?
- 계속해서 필요한 것을 줄여야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아동의 권리는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에 근거한다고 설명하면서 활동을 끝맺는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모든 아이들이 이러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한다(앞의 ‘아동의 권리는 무엇인가?’ 활동 참조). 더 나이가 많은 아이들에게는 협약의 요약본(부록 2 참조)을 크게 읽어보고 협약의 내용을 자신들이 작성한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의 목록과 비교해 보게 한다.⁷⁾

■ 아동은 무엇이 필요한가?



학생들을 소그룹으로 나누어, 어린이의 모습을 크게 윤곽만 따라 그리고 (그룹 중 한 명의 윤곽을 그릴 수도 있다) 그 그림의 아이에게 이름을 붙여 준다. 그다음에 이 상상의 아이가 나중에 커서 어른으로서 지녀야 할 심적·신체적·정신적·인성적 특성들(건강, 유머감각, 친절함 등)을 정하여 윤곽선 안쪽에 적는다. 또한, 그림 속의 아이에게 또는 그 주위에 이러한 이상적인 특성을 표시하기 위한 상징(교육을 의미하는 책 등)을 그려 넣을 수 있다. 아이의 바깥에는, 그 아이가 이러한 특성을 갖기 위해 필요로 할 인적, 물질적 자원의 목록을 작성한다. (예를 들면, 아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음식과 의료가 필요할 것이다.) 각 그룹은 상상의 아이를 공동체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소개’하고 그 아이를 위해 선택한 것들에 대해 설명한다.

7) 수잔 파운틴 Susan Fountain의 『그건 다만 권리일 뿐이야—아동권리협약에 관한 실제적 학습 가이드 It's Only Right! A Practical Guide to Learning about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Child』(UNICEF, 1993)에서 발췌하여 정리함.

교사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소개한다(앞의 ‘아동의 권리는 무엇인가?’ 활동 참조). 그리고 나서 협약의 요약본(부록 2 참조)을 읽어준다. 학생들은 상상의 아이를 위해 자신들이 작성한 ‘필요한 것’을 보장하는 협약 조항을 들을 때마다, 그 조항의 번호를 ‘필요한 것’의 항목 옆에 적어 놓는다. 학생들이 찾아낸 ‘필요한 것’ 중 협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항목이 있다면 동그라미로 표시한다.

■ 아동의 권리 증진

일부 국가에서는 신문·라디오·TV를 통해 아동의 권리를 홍보하고 있다. 학생들을 소그룹으로 나누어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특정 조항을 광고로 만들어 보게 한다. 예를 들면 포스터·춘극·노래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각 그룹별 아이디어를 전체 학급 앞에서 발표하게 한다.

3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고등학생을 위한 인권교육 주제

인권이 존중되는 문화에서는 인간의 모든 행동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원칙을 정립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원칙을 실현하는 데 따르는 여러 이슈들이 뒤따르게 된다. 여기서는 각 이슈별로 몇 개의 활동만을 설명하지만, 이것이 교사들의 자체적인 활동 개발의 출발점이 되리라 믿는다. 그리고 일부 이슈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교사의 감수성과 신중함이 요구된다.

특히 특정 이슈(평화와 무기감축, 세계개발, 양심수, 소수집단, 반인종주의 또는 반성차별주의 등)를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교사들은 그러한 이슈들을 인권의 맥락에서 제시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학생들이 자신들이 논하고 있는 이슈가 다른 여러 이슈들을 포함하고 있는 더 폭 넓은 기본들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인권에 대한 전반적 이해는 학생들의 인식의 폭을 넓혀주고, 특정 이슈는 인식의 깊이를 더해줄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의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해서는 인권의 다양한 측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여러 교사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개인들의 집합체인 인류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위해, 교사는 학생들과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탐구해볼 수 있다. 이 활동은 신뢰와 존중에 관한 제2장의 활동을 좀 더 정교한 형태로 바꾼 것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즉, 우리는 개별적인 인성을 지니고 있지만, 다른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배운다. 따라서 개인에 대한 연구는 사회에 대한 연구이기도 하다.

인간이라는 것의 의미 Being a human being

학생들 앞에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예를 들어 거꾸로 세워 놓은 휴지통)을 가져다 놓는다. 그 물건을 우주의 다른 곳에서 온 방문객이라고 가정한다. 이 방문객은 스스로를 ‘인간’이라고 부르는 존재에 대해 알고 싶어 한다. 학생들에게 그가 우리들이 ‘인간’임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방안을 제시하게 한다.

다음에 대해 토론한다.

- ‘인간’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 그것은 단지 살아 있다는 것 또는 ‘생존하고 있다는 것(surviving)’과 어떻게 다른가?

* UDHR 제1조; CRC 제1조

병 속의 메시지 Message in a bottle

학생들에게 외계에서 온 신호가 포착되었다고 상상하게 한다. 유엔이

특수 우주선에 인간에 대한 정보를 담아 보낼 예정인데, 무엇을 보내야 할지 결정하는 것은 학생들의 몫이라고 말한다(예를 들면 음악, 인간 모형, 의류, 문학, 종교적 물건 등). 학급 전체 차원에서 브레인스토밍을 하거나, 개인 또는 소그룹 프로젝트로 활동할 수 있다.

여기서 제기되는 질문들은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심오한 질문들이다. 위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인간으로서의 자신에 대한 인식과 인간 존엄성에 대한 이해를 쌓아가기 시작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학생들이 자신들이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인류사회에 대해 책임을 지닌 인간 주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인간적이라는 것의 일반적 정의를 내림으로써 비인간적이라는 의미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 UDHR 제1조: CRC 제1조

■ 시작과 끝 Beginnings and endings

사회 속의 인간은 지극히 복잡한 존재다. 교사의 신중한 지도 아래, 학생들은 한 개인의 생명이 끝나는 시점에 논의되는 ‘살 권리(the right to be alive)’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 ‘생명’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가?
- 우리들이 ‘생명’의 의미를 결정하게 하는 요소들은 무엇인가?(예: 종교, 과학, 법)

* UDHR 제3조: CRC 제6조

■ ‘사라진 기자’ ‘A journalist has disappeared!’

다음의 사례 연구를 위해서는 교사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학생들에게 다음의 상황을 제시한다.

여러분은 기자입니다. 여러분이 취재해서 쓴 기사가 높은 자리에 있는 누군가를 화나게 했습니다. 신문 기사가 나간 다음 날 정체 모를 사람들이 여러분의 집에 강제로 들어와서는 여러분을 끌고 갔습니다. 여러분은 두들겨 맞은 다음 혼자 어떤 방에 갇혀 있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보려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곳에 몇 개월 동안 갇혀 있습니다.

이 기사는 많은 기본권을 박탈당한 상태다. 세계인권선언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어떠한 구체적 조항들이 위반되었는지 판단하게 한다. 학생들이 법무부 장관에게 이러한 권리를 지적한 편지를 쓰게 하거나, 그 기사를 위해 공개편지를 쓰게 한다. 이러한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를 생각해보게 한다. 여기서 학생들에게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에 대해 소개할 수 있다.

* UDHR 제3조, 5조, 8~9조, 11~12조

■ 아동의 보호 Protecting children

아동권리협약 전체를 살펴보고, 아동의 보호를 명시한 조항의 목록을 만든다. 또 이 조항들이 언급하고 있는 상황, 구체적인 학대 및 착취의 모습을 모두 열거한 목록을 만든다.

- 더 추가할 만한 것이 있는가?

- 다른 아동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취약하고 보호를 더 절실히 필요로 하는 아동들이 있는가?

아동 보호 책임에 대해 다음 주제를 토론한다.

- 협약에 의하면, 아동 보호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협약은 이러한 책임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는가?
- 아동 보호의 책임이 있는 자가 그러한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 활동의 초반에 작성하였던 목록을 이용하여, 해당 지역사회의 아동 보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 우리가 사는 지역공동체에서 아동 보호와 관련하여 특히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 어떠한 사람들 또는 집단이 아동 보호를 제공하고 있는가?
- 학생 개인과 학급이 이러한 아동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 아동의 권리가 특별 인권조약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CRC 제2~3조, 6조, 8조, 11조, 16~17조, 19조, 20조, 22~23조, 32~33조

전쟁, 평화 그리고 인권

세계인권선언은 제2차 세계대전의 참혹한 상황에 맞서 작성되었다. 세계인권선언은 그 전문에서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인류의 양심을 분노케 한 야만적 행위들을 낳았다”고 적고 “인류사회의 모든 구

성원들에 내재된 존엄성과 그들의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정의·평화의 기반이다”라고 강조한다. 평화·무기감축·개발 및 인권은 상호 관련된 이슈들이다. 인권을 위한 수업에 총체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개발과 환경의식을 위한 수업인 동시에 평화와 무기감축을 위한 수업이기도 하다.

군비경쟁과 이를 억제하려는 시도에 관한 정보를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로 150건이 넘는 분쟁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무장폭력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급의 수준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국제정치 및 경제 이슈를 연구하는 것도 왜 평화를 유지하기가 그렇게 힘든지에 대해 학생들이 심도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개발 불균형과 생태학적 문제들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그 자체로 폭력적일 뿐 아니라 전쟁의 불씨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전쟁, 특히 핵전쟁은 소규모 모일지라도 환경에 대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 평화 Peace

가능하다면 날씨가 맑은 날을 잡아서,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지역 분쟁과 전쟁의 위협이 있는 세계 속에서, 왜 평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학생들을 교실 밖으로, 이왕이면 쾌적한 곳으로 데리고 나간다. 모든 학생들에게 바닥에 드러눕게 한 다음 약 3분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눈을 감고 있으라고 한다. 수업을 재개하고 평화의 근본적 가치에 대해 토론한다. ‘평화’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 수 있는가? 평화와 인권의

관계는 무엇인가?

* UDHR 제1조, 3조, 28조; CRC 제3조, 6조

정상회담 Summit

모든 국가의 지도자들이 모여 지뢰 사용의 축소 또는 위해한 노동으로부터 아동의 보호와 같은 중요한 이슈를 주제로 정상회의를 연다고 가정하고, 역할극을 하게 한다. 학생들을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 관련 국가들의 역할을 맡게 하고 정해진 주제에 대해 학급토의를 시작하게 한다. 일부 그룹들은 이러한 관행을 금지시키려고 하고, 반면에 다른 그룹들은 그러한 금지조치에 반대한다. 가능한 경우, 1997년의 「대인지뢰금지협약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Anti-Personnel Mines」 또는 1999년의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금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hibition of the Worst Forms of Child Labour: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182호」의 채택을 이끌어낸 토의 내용들과 비교한다. 서로 다른 국가들과 사람들이 모두가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대체할 수 있는 활동으로 뒤의 ‘모의 유엔 시뮬레이션’ 참고)

* UDHR 제28조; CRC 제3~4조, 6조

집가방 싸기 Packing your suitcase

전쟁과 탄압의 가장 일반적인 결과 중의 하나는 난민의 발생이다. 난민이란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단체 가입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하는 탄압에 대한 충분히 근거 있는 두려움” 때문에 조국으로부터 도망친 사람들을 가리킨다.(1951년의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의 제1조 A.2)

아래와 같은 상황을 학생들에게 이야기해준다.

여러분이 어느 나라의 교사라고 가정합니다. 당신의 절친한 동료가 사라지더니 얼마 후에 살해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정부 전복 기도 용의자 명단이 실린 신문 기사에 여러분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얼마 후에 여러분이 정치 활동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여러분의 목숨을 위협하는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그 나라를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짐가방을 싸야 합니다. 그런데 겨우 5가지 물건만을 가지고 갈 수 있으며(예를 들어 세면도구, 옷, 사진 등) 그것도 여러분 혼자서 가방 1개에 담아 갈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일부 학생들에게 자신이 선택한 물건 목록을 읽게 한다. 선택한 목록 가운데 문제의 신문 기사 또는 위협 편지(도착 할 나라의 당국에 자신이 '탄압에 대한 근거 있는 두려움'의 증거로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구체적 증거물)가 빠져 있다면, “망명

신청이 거부되었습니다.”라고 말한다. 몇몇 학생들의 목록을 더 들으면 다음, 난민의 정의와 탄압 증거물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한다. 초조한 상태에서 감정적인 결정을 내렸던 경험에 대해 토론한다.

오늘날 세계의 난민에 대해 조사한다.

- 난민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곳은 어디인가?
- 그들은 어느 곳으로부터 도망친 난민들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그들을 보살필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UDHR 제14조, CRC 제22조

어린 병사 Child soldiers

세계의 어떤 곳에서는, 심지어는 채 10살도 되지 않는 소년 소녀들이 군인으로 징집되고 있다. 때로 이 아이들은 납치되거나 강제로 끌려가 목숨을 잃거나, 신체가 절단되는 위험한 일에 내몰리며 자신의 고향과 전체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된다. 아동권리협약에 신설된 「선택의정서(2000년)」는 국제노동기구의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금지에 관한 협약(1999년)」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무력분쟁에 아동이 연루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다음에 대해 토론한다.

- 군대에서 아동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싶어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 이러한 아동의 경우에는 그들의 어떠한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것인가? 아동권리협약의 특정 조항을 인용한다.
- 어린 병사가 된다는 것이 소년과 소녀의 경우에 어떻게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 아동이 전쟁터에서 살아남아 고향으로 돌아간다면, 그 아동이 가장 먼저 직면하게 될 어려움은 무엇일까? 단기적으로는 무엇이며, 장기적으로는 무엇인가?

다음의 방법을 통해 학생들은 행동을 취하거나 이 문제를 좀 더 탐구해 볼 수 있다.

- 세계의 여러 지역에 현존하는 어린 병사에 대해 좀 더 알아본다.
- 어린 병사였던 이들의 재활을 돕고 지원을 제공하는 단체들에 대해 알아본다.
- 정부에 아동의 무력분쟁 연루를 금지하는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기준을 촉구하는 편지를 쓰도록 한다.

* UDHR 제3~5조; CRC 제3조, 6조, 9조, 11조, 32조, 36~39조

인도주의적 법 Humanitarian law

국제인권법과 병행하여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이라는 보완적 법체계가 운용되고 있다. 1949년 제네바협약에 구체화된, ‘전쟁규칙rules of war’이라고 불리는 이 법제는 질병 또는 부상을 입거나 난파한 군인들, 전쟁포로 및 전쟁지역 또는 적 점령지에 거주하고 있는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 많은 국가의 군대에서 군인들에게 제네바협약을 교육시키고 있으며,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무력분쟁지역에서 인도적 구호 활동을 펼칠 뿐만 아니라 국제인도법의 전 세계적 홍보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전의 양상은 크게 바뀌었다. 전투원은 더 이상 교전국자들(국제적 무력분쟁)의 군대에 한정되지 않고, 반군·테러리스트·경쟁관계의 정치 또는 민족 집단(비국제적 무력분쟁)까지 포함한다. 더욱이,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더 이상 군인이 아니라 민간인, 특히 여성·아동·노인들이다.

여러 면에서, 인권 기본틀과 국제인도법은 상호 보강의 관계에 있다. 예를 들어, 둘 다 군인으로 징집된 아동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무력분쟁 상황에 처한 아동을 위한 특별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인권과 인도법이 전쟁의 경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더 알아

본다.

- 국제적십자운동과 제네바협약의 역사에 대해 조사한다. 1949년의 최초 제네바협약은 현대전의 양상을 다루기 위해 어떻게 변경되어 왔는가?
- 국제적십자위원회가 전쟁 피해자들을 위해 펼치는 인도적 활동에 대해 알아본다. 국제적십자위원회의 7가지 기본원칙(인도, 공평, 중립, 독립, 봉사, 단일, 보편)을 세계인권선언의 원칙과 비교하여 본다.
- 아동권리협약, 1949년 제4차 제네바협약(전시의 민간인 보호와 관련된 제네바협약)과 1977년 제네바협약 추가의정서(Additional Protocols to the Geneva Conventions)에 포함된 전쟁 상황의 아동에 관한 규정들을 비교한다. 왜 아동 보호를 위해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이 모두 필요한가?
-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와, 아동의 징집에 관한 제네바협약 추가의정서 제77조를 비교한다.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인가? 둘 다 필요한가? 15세는 군인이 되기에 충분한 나이라는 데 동의하는가?
- 현재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력분쟁에 관한 뉴스 보도를 살펴본다. 해당 무력분쟁에서 제네바협약이 준수되고 있는가? 세계인권선언은 준수되고 있는가?

* UDHR 제5조, 9~14조, 21조; CRC 제3조, 6조, 22조, 30조, 38~39조

정부와 법

인권은 모든 인간에게 내재된 권리다. 그러한 내용이 법에 명시되어 있느냐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는 도덕적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모든 인간은 생명에 대한 권리가 있으며, 이는 그러한 권리를 인정하는 법의 통과 여부와 상관없다.

그러나 법은 도덕적 요구에 법적 구속력을 더해준다. 그리고 권리가 법으로 명문화된 국가라 하더라도, 이러한 법이 실제로 충실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는 여전히 살펴보아야 할 문제다. 하지만 도덕적 요구를 법적 권리로 전환하는 것은 중요한 첫 단계다.

법은 또한 중요한 교육적 효과를 지닌다. 법은 사회가 공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정의하며, 사회가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기준들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법은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존재하며, 법은—적어도 원칙적으로는—국민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평등하다.

의회와 법원 Councils and courts

법은 입법부에서 제정된다. 학생들은 다음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직접 법 제정 프로세스를 알아보아야 한다.



- ‘법’이란 무엇인가?
- 누가 ‘법’을 만드는가?
- 왜 만드는가?

반 전체가 회기 중에 있는 국회 또는 지방의회를 방문하여 직접 의원들의 업무를 지켜볼 수 있도록 준비한다. 위의 세 질문에 대해 토론한다. 마찬가지로 법 행정 업무뿐만 아니라 향후 판결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결이 되는 판결이 내려지는 과정을 견학하기 위해 법원 방문을 계획한다. 위의 세 질문에 대해 토론한다.

위에서 제안한 방문이 가능치 않은 경우, 심지어는 가능한 경우라 하



더라도, 교실에서 모의의회(model parliament)나 모의재판(mock trial) 활동을 할 수 있다. 학생들로 모의의회를 구성하여 현안에 대해 논의하게 하거나, 모의재판을 통해 현재 재판중인 지역적 또는 국가적 사건을 심판하게 한다. 학생들에게 직접 적합한 사례를 찾아보게 한다.

국제적 차원의 사건을 소개하기 위해, 교사는 학생들에게 유엔의 결정과정과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 조사하게 한다. 국제적 위원회, 재판소 및 법원에 회부된 사건들을 검토해 볼 수도 있다. (뒤의 '국제형사재판소' 활동 참고)

또는 지역의 정치인을 초대하여 학생들과 이야기하는 기회를 갖는 것도 좋다. 이때 앞서 열거한 세 가지 질문에 다음의 세 질문을 추가하여 주제로 삼도록 한다.

- 왜 법을 준수하는가?
- '정의(justice)'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정부와 법에서 어떻게 '공정성(fairness)'이 확보되는가?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아동권리협약 제12조를 살펴본다. 이 권리는 우리나라의 법정에서 인정되어 왔는가? 인정된다면 어떻게 인정되어 왔는가? 다음에 대해 토론한다.

- 여성은 법 앞에서 동등한 지위를 지니는가?
- 우리나라의 여성 변호사의 수는 얼마인가? 판사, 지방의회와 국회의 의원 중에서 여성은 몇 명인가?

- 이러한 수치가 법에 의한 여성의 대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뒤의 ‘법 앞의 평등’과 ‘결정과정’ 참고)

* UDHR 제7~8조, 10조, 12조, 21조, 40조; CRC 제12조, 40조

법원의 종류 Sorts of courts

비공식 법정을 통해서도 입법과정에 대해 학습할 수 있다. ‘분쟁 당사자들’을 가운데에 앉게 하고 그 양쪽 가까이에 각자의 ‘친구들’과 ‘가족’을 앉게 한 다음 나머지 학생들은 그들 주위에 원으로 둘러앉아 ‘마을’을 만든다.

‘판사’ 1명을 뽑아 원 밖에 있게 한다. 마을 사람들은 외부인의 의견을 원하는 경우에만 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분쟁 당사자들이 차례대로 사건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펴게 하되, 모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상세하게 말할 수 있게 한다. 논의는 만장일치 평결이 나올 때까지 계속하게 한다.

이 활동에서 다룰 이슈는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교사가 정할 수 있다. 나중에 ‘법’이 공식적 사건과 비공식적 사건에서 어떻게 작용하였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잘못된 사람을 찾아내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며, 특히 양측이 모두 합리적인 논지를 펴는 경우에는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 UDHR 제8조, 10조; CRC 제3조, 12조

법 앞의 평등 Equality before the law

세계인권선언 제7조는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로 시작한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이 실제에도 항상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에 대해 토론한다.

- 이 공동체에서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한가, 아니면 다르게 취급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것은 어떤 요소들 때문인가?
- 왜 법 앞의 평등이 인권문화 조성의 필수요소인가?

* UDHR 제7조: CRC 제2조



■ '인권' 관련 문서 비교하기 Comparing 'rights' documents⁸⁾

인권은 세계인권선언 같은 국제적 문서에 의해서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같은 지역, 국가, 지방 차원의 법규에 의해서도 보장된다. 는 점을 지적해 준다. 학생들에게 세계인권선언과 그 밖의 문서 2건의 사본을 나누어주고, 각 문서가 다음의 권리를 포함하고 있는지 비교하고 관련 조항들을 찾아내게 한다.

1. 교육권
2. 표현의 자유(미디어 포함)
3. 자유로운 배우자 선택
4. 여성과 소수집단을 포함한 모든 이의 평등

8) 데이비드 쉬만David Shiman의 『인권 가르치기Teaching Human Rights』(Center for Teaching International Relations Publications, University of Denver, 1998)에서 발췌, 정리함.

5. 자유로운 자녀수 선택
6. 고문과 비인간적 대우로부터의 자유
7.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8. 재산소유권
9. 화기firearms 소지권
10. 적당한 음식
11. 적당한 주거지
12. 적당한 의료 보호
13. 국내외로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
14. 평화적 집회에 대한 권리
15. 깨끗한 공기와 물에 대한 권리

다음에 대해 토론한다.

- 어떠한 차이점과 유사점을 발견하였는가? 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 우리나라의 헌법 또는 국내법이 세계인권선언보다 더 많은 권리를 포함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
- 이 문서들을 작성한 사람들은 '권리'의 의미에 대해 동일한 개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가?
- 모든 문서가 권리와 함께 책임도 다루고 있는가?
- 대한민국 국민들은 헌법 또는 국내법에 포함된 권리 외에 다른 권리들도 지니고 있는가?
- 이러한 법들이 상충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들에게 특정 권리를 보장하는 데 어떠한 제약과 책임이 따라야 하는가? 예를 들어, 기아 또는 노숙homelessness의 문제는 정부의 책임인가?

- 위에 열거된 권리들 모두는 모든 정부에 의해서 보장되어야 하는가?

* UDHR의 모든 조항

국제형사재판소 An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1945~1946년에 뉘른베르크와 도쿄에서 열린 국제군사재판에서, 승리한 연합군은 독일과 일본의 장교들을 제2차 세계대전과 관련하여 자행한 ‘반평화적 범죄crimes against peace’, ‘전쟁범죄war crimes’, ‘반인도적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로 기소하였다.

이후로도, 그와 같은 범죄와 대규모의 인권유린 행위는 또 다른 여러 무력분쟁 속에서 자행되어 왔다. 캄보디아에서 크메르루즈는 1970년대에 약 2백만 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된다. 모잠비크, 리베리아, 엘살바도르와 기타 국가에서 발생한 무력분쟁 속에서 수천 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고, 그중에는 놀랄 정도로 많은 수의 비무장한 여성들과 아이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그러한 잔혹행위를 다루기 위한 국제재판소 설치에 관한 국제적 합의는 1990년대에 와서야 이루어졌다. 이는 구 유고슬라비아에서 분쟁이 발발하면서 다시 한 번—‘인종청소ethnic cleansing’라는 이름으로—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및 대학살이 자행된 이후였다. 1993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그와 같은 계획적인 대규모의 인권유린 행위에 책임이 있는 개인들을 기소하고 처벌하기 위해 구 유고 국제형사재판소를 임시로 설치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1994년 4월부터 7월까지 약 1백만 명의 비무장 민간인의 목숨을 앗아간 르완다 내전이 종식된 후에는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를 설치하였다.

역사적으로 볼 때, 개인의 책임을 가리기 위한 국제형사재판소라는 법 집행 메커니즘이 가동되지 않아서, 대량학살 행위와 심각한 인권

유린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경우도 여러 번 있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대량학살,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와 관련하여, 그러한 범죄가 자행된 국가에서 책임자를 기소할 수 없거나 기소할 의지가 없는 경우 책임자를 기소할 수 있는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제도는 국제법상의 중죄가 앞으로 일어나지 못하게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1998년 각국의 정부 대표들은 로마에서 외교회의를 개최하고 상설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기로 합의하였다. 1998년 7월 17일 찬성 120개국, 반대 7개국, 기권 21개국의 투표 결과에 의해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이 채택되었다. 이 규정은 최소 60개국 비준 기준이 충족된 2002년 7월에 발효하였으며, 현재 국제형사재판소는 네덜란드의 헤이그에 위치하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은 몇 가지 중요한 이슈를 제기하며 학생들의 조사 및 활동의 기회도 제공한다.

- 왜 그러한 재판소가 필요한가? 효과를 거둘 수 있는가?
- 국제사회는 무슨 권한으로, 예를 들어 ‘정부가 국민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와 같은 한 국가의 내정에 관여할 수 있는가? 이러한 개입은 내정간섭이 아닌가? (국제기구가 한 나라의 내정에 개입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와 언제 그러한 권리를 지니는지에 대해 학급 활동을 통해 토론할 수 있다.)
-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해 더 알아본다(예 : 절차규정, 다루게 될 사건의 유형 등—국제형사재판소의 공식 웹사이트 <http://www.icc.org>). 각 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와 협력해야 할 의무의 내용은 무엇인가?
- 국제형사재판소가 설치되기 위해서는 최소 60개국이 관련 규정을 비준하여야 했다. 지금까지 비준한 국가는 어디인지 알아본다. (자국이 아직까지 비준하지 않았다면, 비준의 찬반을 놓고 토론을 벌인다. 비준에 대한 학생들의 입

장을 알리고 이를 촉구하는 편지나 청원서를 국회의원에게 보낸다.)

- 당시에 국제형사재판소가 존재했다면 이 재판소에 회부되었을 수도 있었던 사례들을 세계사를 통해 조사한다.

* UDHR 제7조, 10조, 11조, 28조

사상 · 양심 · 종교 · 의견 및 표현의 자유



사상 · 양심 · 종교 · 의견 및 표현의 자유는 인권문화의 핵심이다.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성숙단계에 따라 이러한 권리를 아동에게 부여하고 있다(뒤의 '아동의 성숙'과 '충분한 나이는 언제인가?' 활동 참고). 이러한 권리에는 종교나 신념을 바꿀 자유, 간섭 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자유, 어떠한 미디어를

통해서든 국경에 상관없이 정보와 아이디어를 구하고 받고 전해줄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

■ 준거의 기준 Frames of reference

사람들은 자신이 본 것을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가진다. 이러한 차이는 어휘의 선택에 반영된다. 예를 들어, 같은 사람에 대해 '냉담하다'고 볼 수도 있고 '독립성이 강하다'라고 볼 수도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공격적이다'와 '자신의 주장이 강하다', '복종적이다'와 '협력할 자세가 되어 있다', '다소 충동적이다'와 '힘든 일을 꺼려하지 않는 편이다' 등의 사례는 어휘 선택에 따른 의견의 차이를 보여준다. 학생들에게 이와 같은 양단의 표현 사례를 더 생각

해보게 한다.

학생들에게 자신의 5가지 특성을 가장 긍정적인 방법으로 적게 한다. 그다음 이러한 특성들을 부정적인 준거 기준으로 바꾸게 하여, 동일한 특성이라 하더라도 칭찬이 아니라 감정을 상하게 하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음을 알게 한다. 이번에는 그 반대로, 먼저 자신의 부정적 특성을 5가지 적게 한 다음, 이 특성들이 덜 공격적으로 느껴지게 하는 단어를 쓰게 한다.

이 활동을 약간 변형시켜, 학생들에게 일반적으로 소년이나 소녀를 묘사하는 형용사를 열거하게 한다. 다음으로 성별을 바꾸어 쓰게 한다. 예를 들어 소년의 특성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한 ‘활기 넘치는’ 또는 ‘야심찬’은 소녀에게는 ‘신경에 거슬리는’ 또는 ‘나서기 좋아하는’으로 여겨질 수 있다.

* UDHR 제1조, 2조; CRC 제2조

상처 주는 말 Words that wound

아동권리협약 제13조 2.a는 아동에게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신념에 대해 말할 때 제한을 두어야 하는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항상 말할 수 있어야 하는가? 다음의 활동은 교사의 신중한 지도를 필요로 한다.

모두에게 종이 몇 장씩을 나누어 주고, 학교에서 듣고 감정이 상했던 말들을 1장에 1가지씩 적게 한다. 벽에 ‘놀리는 말/장난의 말’에서부터 ‘상당히 고통스러운 말/모욕적인 말’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의 등급표를 만들어 놓는다. 학생들에게 각자가 적은 말들을 등급표에서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단계에 붙이게 한다. (또는 익명을 유지하기 위해

종이를 모두 걷어서 교사가 읽고 학생들이 그 말의 등급을 정하게 할 수도 있다.) 학생들에게 조용히 벽의 등급표를 살펴보게 한다. 대체로 같은 말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지만, 학생에 따라 느끼는 강도가 달라 거의 항상 다른 등급으로 매겨져 있다.

이러한 경험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 학생들에게 그 말들을 분류하게 한다. (예를 들어 외모, 능력, 인종적 배경, 성sexuality)



- 여학생이나 남학생에 대해서만 사용한 말이 있는가?
- 이러한 분류로부터 언어 남용에 대해 어떠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가?
- 어떤 사람들은 매우 고통스럽게 여기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는 장난스럽게 여겨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학급을 소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에 가장 고통스러운 단계에 포함되었던 말들을 몇 가지씩 정해준다. 각 그룹의 한 학생에게 첫 번째 말을 크게 읽게 한다. 해당 그룹은 이 말이 상처를 주는 말임을 인정하고 (1) 사람들이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는지 여부와 (2)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토론한다. 다른 말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절차를 반복한다.

끝으로 언어 남용과 관련된 권리 및 책임에 대해 반 전체와 토론한다.

- 교사는 학교에서 혐오스러운 표현을 금지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가?

- 학생들은 자신의 생활에서 혐오스러운 표현을 사용하지 말아야 할 책임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 혐오스러운 표현을 중지시키기 위해 학생들이 자신의 공동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 그렇게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 UDHR 제1~2조, 18~19조; CRC 제12~14조, 16~17조, 29조

■ 아동의 성숙 Growing maturity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에게 그 성숙 단계에 따라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아동이 종교를 실천하거나 자신의 가족, 문화 또는 전통과는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성숙해지는 때는 언제인가에 대해 토론하게 한다. 누가 결정해야 하는가?

* CRC 제14조

사생활에 대한 권리



아동권리협약 제16조는 아동에게 사생활, 가족, 가정 및 통신의 간섭으로부터, 그리고 명예훼손 또는 비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협약에서 아동에게 보장하고 있는 다른 여러 권리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권리가 행사될 수 있는 범위는 아동의 '진화하는 역량(evolutionary capacity)'에 의해 결정된다. 분

명히 7세 아동은 17세 아동과 동일한 권리 및 책임을 지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 ‘충분한 나이’는 언제인가? When is ‘old enough’?

다음의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들려준다.

에쿠와 로밋은 초등학교에서 옆자리에 나란히 앉게 되면서 처음 알게 되었다. 그들은 곧 친구가 되었지만, 그들의 우정에 문제가 있었다. 두 집안이 서로 다른 사회집단에 속해 있었는데, 이 두 집단은 오랜 반목의 역사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로밋이 부모님에게 에쿠가 집에 와도 괜찮으냐고 물어보았을 때, 부모님은 완강하게 거절하였다. 에쿠의 가족은 선생님에게 말씀드려 두 친구를 떨어뜨려 앉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우정은 에쿠가 다른 도시의 중학교로 전학가기 전까지 지속되었다. 둘은 서로 편지하자고 약속했지만, 에쿠의 편지가 올 때마다 로밋의 부모는 로밋이 보기 전에 그 편지를 없애 버렸다. 로밋은 부모님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16세 라면 자신의 친구를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나이가 들었고 개인적 편지를 비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에 대해 토론한다.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의하면 로밋은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 로밋의 ‘진화하는 역량’은 어떻게 정해질 수 있는가?
- 로밋의 부모는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이러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운다.

* UDHR 제12조: CRC 제5조, 16조

집회를 열고 공적인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



공동체는 어떻게 유지되고 성장하는가? 부분적으로는 그 구성원들이 서로 만나 조직을 구성하여 그들의 관심사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가능하다. 이러한 자유는 공동체 참여의 중요성을 높인다. 이 자유를 부인한다면, 사회로부터 그 사회의 가장 풍부한 자원 중의 하나인 구성원의 기술과 재능을 빼앗는 셈이 된다.

공동체 참여의 습관은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키울 수 있다. 학교 밖에서의 공동체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평생 동안 사회, 정치적 문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현실적으로는 성인 위계질서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많은 학교에서 학생회를 두어 학생들이 자신들의 문제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인권클럽 A human rights club

힘을 합쳐 뜻있는 일을 이루는 경험을 직접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으로, 교사는 학생들에게 인권 증진을 위한 클럽을 만들게 할 수 있다. 교사는 그러한 클럽의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여러 관련 업무를 알려 줄 수 있다.

- 인권클럽의 목적을 더욱 상세하게 정한다.
- 클럽의 상징(로고)을 공모한다.
- 클럽 로고가 새겨진 개인 회원카드를 제작한다.
- 임원을 선출한다.
- 인권클럽 활동을 보여주는 특별 게시판을 붙인다.
- 인권클럽이 연락할 수 있는 국내 및 국제 인권네트워크 및 기관에 대해 알아보고, 그러한 단체가 발행한 출간물을 요청하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적당한 장소에 비치한다.
- 회의를 개최한다. 1차 회의에서는 결사의 자유 자체에 대해 논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왜 조직하는가?’ ‘왜 지역, 국가 그리고 그 이상의 차원에서 공무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가?’를 주제로 논의한다.
- 외부 연사(지역 정치인, 이슈 전문가,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짧은 연설을 듣거나 토론을 한다.
- 특정 사안에 대한 회의를 열고 조사를 실시하는 소위원회를 설치한다.
- 국제인권의 날International Human Rights Day인 12월 10일을 기념한다. 인권과 관련된 기타 국제 기념일에 대해 알아보고 그날을 기념한다.⁹⁾

학생 몇 명이 그룹으로 다른 학급을 방문하여 특정 인권이슈/분야에 대해 설명해주겠다고 제안하면서, 왜 이 클럽이 조직되었으며 클럽이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고 연합회원 가입 자격을 제시할 수 있다. 자원이 허용한다면 클럽의 정기 소식지를 발간할 수도 있다.

* UDHR 제20조, 21조; CRC 제15조

9) 실용적인 아이디어는 『세계인권선언을 기념하는 50가지 이상의 아이디어More than 50 Ideas for Commemorating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를 참조할 것. 이 자료는 <http://www.ohchr.org>나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을 통해 이용가능하다. 국제기념일 목록도 또한 앞의 웹사이트와 사무실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세계인권선언과 아동권리협약은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대로 쉬고 배우고 종교를 가질 수 있으며 공동체의 문화적 생활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고 자신의 인성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해당 지역 및 전 세계의 예술과 과학에 대한 접근

권을 제공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 언어 및 가치관을 존중하는 마음을 키워주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역사적 시기의 다문화적 사례를 활용하여 인권 이슈를 가르쳐야 한다.

개인적, 사회적 행복을 느끼는 것은 상당 부분 가정에서 비롯된다. 가족은 그 구성원이 속한 문화 및 경제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고



립된 지역의 단독세대 가구에서부터 공동체 전체를 포함하는 확대 친족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아동권리협약 제18조는 부모가 자녀 양육에 대해 공동의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음을 인정하며, 제20조는 가족이 없는 아동은 대체가족이나 시설을 통해 특별 보호하도록 정하고 있다.

학교 교과과정의 대부분 활동이 이 주제와 관련이 있다. 교육과정 자체를 토론의 시작으로 삼을 수 있다. 모든 세대의 문화는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 한 재학습되기 때문에 교육(학교교육과는 다르게)은 평생의 일이며 진실로 총체적인 작업이다. (위의 '문화적 정체성' 활동 참고)

■ 옛날 옛적에…… Once upon a time……

할아버지, 할머니를 몇 분 모셔다가 그분들이 어렸을 때 무엇을 배웠고 그것이 나중에 커서 어떤 소용이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듣는다. 그분들의 어린 시절에는 현재 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들 중에 어떠한 권리가 결여되어 있었는가?

할아버지, 할머니께 인성의 완전한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인권과 자유에 대한 존중 강화에 대해 무엇을 배웠는지, 서로 다른 인간 집단들 사이에 이해와 상호존중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무엇이 정의와 평화에 이바지하는지를 묻는다.

* UDHR 제19조, 27조; CRC 제29조, 31조

■ 가계도 A family map

학생들에게 현재 가족에 대한 가계도를 작성하게 한다. (이때 교사는 입양된 학생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비교해 보고 그 결과 드러난 차이에 대해 토론한다.

- 현재의 가족생활은 증조부모님 때와 어떻게 다른가?
- 조부모님, 부모님과 비교하면 어떠한가?
- 무엇이 이러한 변화를 가져왔나?
- 그 변화는 가치관, 문화, 기술 또는 기타 유형의 변화 중에서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유익한 변화는 무엇이며 그렇지 않은 것은 어떠한 것인가?
- 가족 구성원의 인권은 이전 세대와 비교하여 개선되었는가?

*UDHR 제16조, 19조, 27조; CRC 제5조, 29조,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모두 평등하고, 평등한 인권을 지닌다.

평등equal하기는 하지만, 동일identical하지는 않다. 이러한 사실에 따라, 사람들은 개인들 간에도 선을 긋고 자신이 중요하다고 믿는 차이에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집단을 구분 지을 뿐

아니라 어느 집단이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또는 출신 국가나 사회를 이유로 우수하거나 열등함을 암시하는 선이 그어지면, 그것이 바로 차별이다.

성별은 가장 흔한 차별의 근거 중 하나다. 성별은 우리 인간이 타고난 생물학적 이분법과 일치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러한 차이를 넘어 더 심오한 정체성을 파악하기가 매우 힘들다. 어떤 면에서 다르다는 것이 우리를 다르게 만들지는 않는다. 다른 일을 하는 다른 신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인권도 달라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 다른 치명적인 형태의 차별은 피부색 또는 인종에 따른 차별이다. 우리가 모두 인간이라는 공통점을 감추기 위해 특정한 차이를 반복적으로 지나치게 강조한다.

교사라면 어느 누구도 차별 문제를 피할 수 없다. 인간평등과, 그로 인해 향상되는 삶의 기회life-chances와 삶의 선택life-choices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학생들에게 자신이 충분히 능력이 있고 배려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알게끔 고정관념에 뿌리를 둔 태도와 편견을 찾아내고, 적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가르쳐야 한다.

이것은 절대 끝나지 않는 질문의 과정이다. 사회경제적·정치적 이슈

들과 그러한 이슈들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아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이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교사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도 품고 있는 편견과 차별적 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교사는 자기성찰이라는 무거운 개인적 책임을 지고 있다. 편견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편견이 없어지지 않고 차세대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1. 차 별 — 고 정 관 념

고정관념stereotype을 극복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 반대 현상을 조장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음을 적시해 주어야 한다. 어떠한 고정관념 속에 일말의 진실이라도 있다면 일말의 진실이 있다고 사실대로 말해야 한다. 대안으로 학생들에게 “그 사람들은 모두 그래, 그렇지?” 또는 “그 쪽 사람들은 다 똑같아.”와 같은 말을 들었던 상황에 대해 물어본다.

■ 그 사람들은 모두 같아 They're all alike

각 학생에게 작은 돌이나, 감자와 같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을 나누어 주고 (단, 모든 학생에게 같은 종류의 물건을 나누어주어야 한다) 그 물건과 ‘친구’가 되어서 그것에 대해 알게 하도록 한다. 몇몇 학생에게 자신의 ‘친구’를 반 학생들에게 소개하면서 그 ‘친구’의 나이는 몇 살이고, 지금 기분이 좋은지 그렇지 않은지, 그리고 왜 지금과 같은 모양을 갖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하게 한다. 그러한 주제로 에세이, 노래 또는 시를 쓰게 할 수도 있다. 그러고 나서 모든 물건들을 상자나 가방에 넣게 하여 섞는다. 상자나 가방을 열어 물건들을 보여준 후 학생

들에게 모두 비슷하게 생긴 그 물건들 중에서 자신의 ‘친구’를 찾아보라고 한다.

여기서 사람들의 경우에도 확연하게 드러나는 사실을 알려준다. 즉, 어떤 집단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같아 보이지만, 일단 그 사람들에 대해 알게 되면 그들이 모두 다르고 자신의 인생사가 있으며, 그들 모두 우리의 잠재적 친구임을 알게 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상대를 알게 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고정관념(예를 들면 “돌은 차갑고 단단하고 무섭하다.”)도 보류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즉, 상대에 대해 미리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 UDHR 제1조, 2조; CRC 제2조

차이점 알기 Spot the difference

다음의 문장들을 제시한다.

1. 나는 의사들이 항상 친절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좋아.
2. 나는 어떤 의사들은 내게 친절하다는 점이 마음에 들어.
3. 의사들은 친절한 사람들이야.

위 문장들 중 어느 것이 고정관념이고(3번 문장), 어느 것이 선입견이며(1번), 어느 것이 단순히 의견을 말한 것인지(2번)에 대해 토론한다. 세 문장 모두 (심적 준거 기준으로서) 의사들이 친절하고 배려 넘치는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또한 통명스럽고 조급한 사람들일 수도 있음을 인식하는 데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를 지적해 준다. 고정관념, 선입견, 의견이 어떻게 태도를 미리 결정하는지에 대해 토론한다.

* UDHR 제2조; CRC 제2조

2. 차 별 — 피 부 색 또 는 인 종

인종주의는, 어떠한 인간 집단은 특정한 (대부분 신체적인) 특징 때문에 다른 집단에 비해 우월하거나 열등하다는 믿음이다. 인종주의적 태도는 사람들을 인종 또는 피부색에 따라 대하는 공공연한 것일 수도 있고, 일정한 형태의 차별적 판단에 따라 사회가 체계적으로 특정집단을 대한다는 점에서 은밀한 것일 수도 있다.

인종주의적 태도는 때로 인종차별을 초래한다. 이는 다르거나 열등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단순히 무시하거나 피하는 것에서부터, 폭행, 착취 또는 배제와 같은 더 노골적인 형태에 이르기까지 여러 부정적 결과를 낳는다.

이와 관련하여 살펴볼 수 있는 유용한 자료로는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ICERD)」을 들 수 있다.

피부색은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상 사람들을 차별하는 가장 자의적인 방법 중의 하나다. 이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자신의 피부색이 어떨지 미리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태어나 살게 될 운명인 다인종 사회를 설계해 보게 한다.

인종차별 없는 학급 The non-racist classroom

학급을 여러 문화가 환영 받고 포용적인 장소로 만드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각각의 문화적 요소들은 학생들의 반응 즉, 어느 정도로 시선을 맞추는 것(eye contact)이 편안하게 느껴지는지, 그룹학습진락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지, 연극이나 이야기 발표 스타일은 어떠한지 등과 같은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 학급 내에 인종적 갈등이 발생하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해결하도록 한다. 학생들에게 인종주의를

악화시킬 수도 있는 행동을 인식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차별에 맞서 싸워온 위인들의 이야기를 조사한다. 세계 곳곳의 사람들이 인류 공동의 지식과 경험의 축적에 기여한 바에 대해 조사한다. 문화적 다양성을 최대한으로 교과과정에 도입한다. 이와 관련하여 학부모나 기타 친척 또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한다. 공동체 활동에 적극적인 다른 인종 또는 피부색의 사람들을 초청하여 학생들에게 그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부탁한다.

* UDHR 제1~2조: CRC 제2조

3. 차 별 — 소 수 집 단 의 지 위

‘소수집단(minority group)’의 개념은 ‘민족성(ethnicity)’과 때로는 ‘인종(race)’의 개념과 혼동되어 쓰이고 있으며, 그런 경우에는 앞의 활동들이 여기에서도 의미를 지닌다. ‘소수집단’이란 용어는 느슨한 용어로서, 원주민(indigenous peoples), 유민(displaced peoples), 이민 노동자, 난민, 그리고 심지어는 억압받는 다수를 묘사하는 데 사용되어 왔다. 이 집단은 종종 ‘빈곤’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소수집단은 충분한 힘을 갖게 되면 더 이상 ‘소수집단’이 아닐 수 있다.

소수집단의 구성원들은 개별적 인권을 지니고 있지만, 대체로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지니는 일정한 권리도 주장한다. 특정 집단에 따라 다르지만, 그러한 권리에는 문화 및 정치적 자결권, 토지권, 강탈에 대한 보상, 천연자원 통제권, 또는 종교적 성지 접근권이 포함된다.

■ '소수집단' 찾아내기 Identifying some 'minority groups'

학생들이 '소수집단'의 정의를 내리도록 도와준다.

- 수학적으로 항상 소수인가?
- 대체로 어떠한 면에서 소수집단은 다수집단 또는 지배적 집단과 다른가?

학급 전체와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현대의 '소수집단' 목록을 만들어 보되, 지역 공동체에서부터 시작한다. 계급, 능력, 성적 지향과 기타 비인종 요소에 근거한 소수집단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한다. 이러한 소수집단은 차별을 겪고 있는가? 어떠한 면에서 그러한가?

고등학생이라면 특정 소수집단을 정하여 그 집단의 규모, 지리적 위치, 역사, 문화, 현재 생활조건, 주요 요구사항 등을 알아보기 위한 사례연구를 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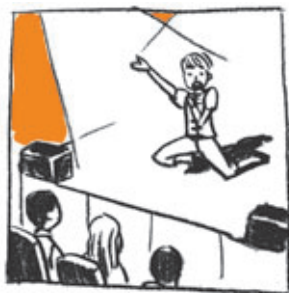
- 어느 인구 집단에서 소수집단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어떤 상황 때문인가?(예: 원주민, 이민자, 난민, 이주노동자)

* UDHR 제1조, 2조; CRC 제2조, 29조, 30조

■ 문화적 정체성/문화적 다양성 Cultural identity/cultural diversity



모든 사람에게에는 문화적 정체성이 있으며, 이러한 정체성은 그 사람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일부이기 때문에 종종 의식하지 못한다. 그러나 민족적, 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민족 또는 원주민 출신의 소수집단이 존재하는 국가에서는 문화적 정체성이 인권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으며, 특히 힘이 강한 집단이 자기 집단의 문화를 힘이 약한 집단에게 강요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아동권리협약은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아동의 권리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제29조는 자신의 문화, 언어 및 가치체계에 대한 존경심을 키워갈 수 있는 교육에 대한 권리를 아동

에게 보장하고 있다. 제30조는 소수 공동체 및 원주민 집단 아동이 자신의 문화를 향유하고 자신의 종교 및 언어를 실행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제31조는 문화적, 예술적 생활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유네스코의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은 문화적 정체성과 다양성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 즉, “문화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다양성은 인류를 구성하고 있는 집단 및 사회정체성 속의 독창성(unicqueness)과 복수성(plurality)에서 기인한다. 교류, 혁신 및 창의성의 원천으로서 문화적 다양성은, 생물학적 다양성이 자연에게 필수적인 것처럼, 인류에게 필수적이다.”(제1조)

자신의 공동체에 대해 다음을 살펴본다.

- 문화적 소수집단이 존재하는가?
- 소수집단의 문화가 존중되고 있는가?
- 소수집단은 자유롭게 공개적으로 자신의 문화에 참여하고 있는가, 아니면 비밀리에만 가능한가, 또는 전혀 불가능한가?
- 학교에서 소수집단 문화를 존중하도록 지도하고 있는가?

다음에 대해 토론한다.

-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권리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다양한 문화를 보전하고, 개발하며, 인정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 지배적 집단이 때로 자신의 문화를 소수집단에게 강요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UDHR 제26조; CRC 제29조, 30조, 31조

소수집단 연사 초청 Minority group speakers

학급의 인권클럽의 후원 하에, 특정 '소수집단'의 구성원을 학급으로 초청하여 연설을 듣도록 한다. 학생들이 자신의 고정관념에 의해 어떠한 기대를 하고 있는지 깨닫게 하고 유용한 질문을 준비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러한 특별한 경우에 학생들이 정의, 자유, 평등 증진에 참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

* UDHR 제26조; CRC 제29조, 30조



4. 차 별 — 문 화 적 성 gender

세계인권선언 제2조는 '어떠한 구분도 없는' 인권의 유효성을 선언하고 있다. 더 나아가 집단 사이에 자의적인 선을 긋기 위해 사용하는 여러 라벨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그중의 하나가 생물학적 성sex으로서, 이러한 생물학적 성에 의한 차별(성차별 sexism)은 여전히 가장 보편적인 사회적 불의의 원천이라는 점에서 특별히 언급할 만한 이유

가 있다.

성차별은 인종차별주의와 마찬가지로 문화와 사회의 모든 측면과 연관될 수 있다. 이러한 성차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사람들의 생각에 반영되고, 이는 차별을 더욱 악화시킨다. 한 쪽의 성이 인권을 완전하게 향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그 성이 온전한 인간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 생물학적 성 vs 문화적 성 Sex or gender?

생물학적 성sex과 문화적 성gender의 차이를 설명해 준다. 학생들을 두 팀으로 나누어 각 팀에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목록으로 만들어 보게 하되 일부는 생물학적 성을 근거로(예: 성인 남자는 수염이 난다든가, 여자가 더 오래 산다.) 그리고 다른 일부는 문화적 성을 근거로 하게 한다(예: 남자가 수학을 더 잘한다든가, 여성은 소심하다.). 각 팀에게 차이 한 가지씩을 읽게 한 다음 패널에게 그것이 생물학적 성에 의한 차이인지 아니면 문화적 성에 의한 차이인지를 판단하게 한다. 물론, 반대 의견이 나올 수 있지만(예: 남자가 천부적으로 더 공격적인가?) 그로 인한 토론은 학생들이 문화적 성에 대한 자신의 고정관념을 깨닫게 하는데 효과가 있다. 문화적 성에 대한 고정관념 사례를 학급, 교과서, 미디어, 공동체에서 찾아본다.

* UDHR 제2조: CRC 제2조

■ 교과서 속의 남녀 Who's who?

학생들이 학교에서 접하는 책과 기타 자료를 조사하게 한다.

- 남성과 여성에 대한 언급 횟수가 동일한가?
- 여성 등장인물은 신체적으로 강하고, 모험심이 있으며, 창의적이고 광범위한 업무에 관심이 있는, 과감하게 결정을 내리는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는가?
- 남성 등장인물은 인간적이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으로, 남을 도와주려 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며, 남들이 자신을 ‘남자답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는가?
-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동등한 존재로 존중하고 있는가?
- 남성이 육아와 살림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가?
- 여성이 가정 밖에서 적극적 역할을 맡고 있는 경우, 전통적으로 여성의 직업으로 여겨지던 직업들(교사, 간호사, 비서 등)이나 무임금 또는 저임금직종은 아닌가?

* UDHR 제2조: CRC 제2조, 29조

■ 성 바꾸기 Gender bender

잘 알려진 이야기(예: 소설, 영화, TV 시리즈 또는 전설 속의 이야기)를 골라 등장인물의 성별을 바꾸어 이야기를 재구성해 본다. 성을 바꿈으로써 나타나는 효과에 대해 토론한다.

* UDHR 제2조: CRC 제2조, 29조

■ 내가 좋아하는 것/내가 하는 것 What I like/What I do¹⁰⁾

학생들에게 다음 질문에 대해 자기 자신에 관하여 답변을 쓰게 한다.

10) 줄리 머티스Julie Mertus, 낸시 플라워즈Nancy Flowers, 말리카 더트Mallika Dutt의 『지역적 행동/지구적 변화: 여성의 인권에 대한 이해Local Action/Global Change: Learning about the Human Rights of Women and Girls』(UNIFEM, 1999)에서 발췌, 정리함.

1. 내가 속한 성sex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 세 가지
2. 내가 속한 성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중에서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 세 가지
3. 내가 반대의 성이라면 하고 싶거나 되고 싶은 것 세 가지

학생들을 같은 동성끼리 둘씩 묶어 작성한 목록을 짝과 함께 보게 한다. 그리고 나서, 각 2인조가 다른 성의 2인조(같은 성으로만 이루어진 반의 경우라면, 다른 2인조)와 목록을 함께 보게 한다.

그 결과에 대해 토론한다. 이 공동체는 성적 역할기대gender expectations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하는가? 성적 역할기대는 인권을 제약하는가?

* UDHR 제2조; CRC 제2조

결정하기 Making decisions

학생들에게 가족이 내려야 하는 중요한 결정으로서 가족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에 무엇이 있을지 브레인스토밍 하여 찾아내게 한다. 각 결정 옆에, 그 결정이 주로 남성이나 여성에 의해 내려져야 하는지, 아니면 함께 내려야 하는지를 쓰게 한다. 가정에서 남성과 여성이 내리는 결정의 종류의 차이에 대해 토론한다.

다음으로 학생들에게 지난 몇 년간 공동체에서 내려진 결정 중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중요한 결정을 몇 가지 적게 한다(예: 새로운 클럽이나 팀 창설, 병원 신축 및 폐쇄, 토지 분할, 버스요금 인상). 각 소그룹에게 이러한 결정을 한 가지씩 나눠주고 다음과 같이 분석하게 한다.

- 이러한 결정이 성gender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가? 여성(성인, 아동을 모두 포함하여)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남성(성인,

아동 모두 포함)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 각 결정 옆에, 그러한 결정을 내린 조직의 명칭과, 이 조직에서 여성과 남성 각각의 대략적인 성별 구성비를 적는다.
- 그 결정을 내린 조직이 남녀 동수로 구성되어 있었다면 그 결정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었겠는가?

* UDHR 제2조, 21조: CRC 제2조, 12조

성차별 없는 학급 The non-sexist classroom

인종차별 없는 학급을 위해 제안한 방법(앞의 '2. 차별—피부색 또는 인종 참조)의 대부분은 성차별 없는 학급을 위한 활동으로도 응용될 수 있다. 성적 고정관념(gender stereotype)을 깰 수 있도록 활용 가능한 모든 도움을 찾는다. 성별에 의한 배제(소외)를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 항상, “어떤 것이 공평하지?”라고 묻는다. 학생들에게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EDAW)」을 소개한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교사들 자신이 여학생에 대한 차별의 잠재적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한다. 교사들이 남학생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남학생을 호명하여 말하게 하는 경우가 여학생보다 2배 더 많다는 것이다. 많은 학급에서 남학생은 호기



심이나 강한 자기 주장에 대해 칭찬을 받는 반면, 여학생들은 단정함, 기민성, 지시사항을 완수하는 능력에 대해 칭찬을 받는다. 조사 대상이 된 교사들은 자신의 남아선호를 의식하지 못했으며, 그 조사 결과에 매우 당황해 하였다.

미디어, 특히 광고는 성 분석(gender analysis)을 위한 좋은 자료가 된다. 학교 교과과정과 교과서를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또한 앞의 '교과서 속의 남녀' 참고).

- '역사(과목)'는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의 역할에도 진지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가?
- '경제학'은 노동시장(가정 안팎)에서의 여성에 대해 논하고 있는가?
- '법'은 여성과 재산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가?
- '행정(정부)'은 여성의 낮은 대표 비중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가?
- '과학'은 여성이 이룩해 놓은 것에 대해 적절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
- 여학생들은 수학, 과학, 컴퓨터 과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도록 격려되고 있는가?
- '문학', '어학', '예술' 수업은 얼마나 성차별적인가?

학교의 교과외 활동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살펴본다.

- 여학생에게 클럽의 임원직 또는 선출직에서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가? 대외적으로 학교를 대표하는 경우에는 어떠한가?
- 학교가 지원하는 활동 중에서 여학생이 제외되는 것이 있는가?
- 체육시설과 운동부에 대해 여학생이 남학생과 동등한 접근권을 가지고 있는가?
- 여학생들은 학교에서 성폭행이나 신체적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는가?
- 상금, 장학금, 재정지원 등과 같이 학생에게 주어지는 포상이 여학생들에게도 동등하게 열려 있는가?

* UDHR 제2조, 26조; CRC 제2조, 29조

5. 차 별 - 장 애

학생들이 이와 관련된 이슈들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학교 밖의 지역 사회에서 신체적·지적 장애를 가진 이들과 직접 활동을 해 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 장애인 연사 초청 Speakers on disability

학급 인권클럽의 후원 하에 특정 장애를 가진 분을 학급으로 초청하여 연설을 듣는다. 초청된 연사는 자신이 직면한 어려움, 결과적으로 얻은 교훈, 그리고 장애인들이 어떠한 구체적인 권리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해줄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들도 우선적으로는 인간이며 그 다음으로 취약집단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 UDHR 제1조, 2조; CRC 제2조, 23조

■ 모두를 위한 학교 One school for all

학생들에게 학교와 주위 환경을 살펴보고 특정 장애를 가진 이들이 학교 시설 및 환경에 얼마나 접근 가능한지를 알아보게 한다. 다음을 토론한다.

- 장애인들은 어떠한 변경을 건의하겠는가?
- 학교가 1975년과 1971년에 유엔에 의해 각각 선포된 「장애인 권리 선언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Disabled Persons」과 「정신지체인 권리 선언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Mentally Retarded Persons」을 증진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교육에 대한 권리

모든 사람이 교육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은 아동권리협약 제29조를 충족시킬 만한 교육, 즉 “아동의 인성, 재능 및 심신의 능력을 최대한 개발”(CRC 제29조 1항)하도록 하는 교육을 전혀 받고 있지 못하고 취학의 기회를 갖지 못한 아동들이 수백만에 이른다. 사회적 지위, 성별 또는 생계유지를 위해 일해야만 하는 빈곤한 생활 등이 그들을 교육으로부터 소외시키는 요소들이다. 더욱이 교육 부족으로 인해 그들의 다른 인권들을 누릴 수 있는 능력도 제한된다.

우리 학교 학생이 아닌 사람은 누구? Who is not in our school?

학생들에게 다음 중에서 학교에 없는 개인이나 집단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한다.

- 많은 수의 여학생 또는 남학생?
- 신체적 장애가 있는 학생?
- 정신적 장애가 있는 학생?
- 법 또는 학교 당국과 문제가 있었던 아동, 일명 ‘문제 학생’?
- 부모나 친지가 전혀 없는 학생?
- 집 없이 떠도는homeless 학생?
- 어린 나이에 가장(소년소녀가장)이 되었거나 결혼한 학생?
- 난민?

- 해당 지역사회의 소수집단에 속해 있는 학생?
- 가족을 위해 일해야 하는 빈곤가정의 학생?

학교에 없는 집단으로 지적된 각 집단유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왜 그 아동들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가? 그들도 학교에 다녀야 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이 아동들이 다른 학교에는 다니고 있는가?
- 학교에 다닐 수 없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아동들은 어떠한가? 그들은 어떻게 교육을 받고 있는가?

다른 학교에 다니는 아동들이 있다면,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왜 그 아동들은 다른 학교에 다니고 있는가?
- 그 학교는 어디에 있는가? 아동들이 쉽게 갈 수 있는 곳인가?
- 가족이 아동들의 학비를 부담하여야 하는가? 부모가 이러한 대안학교의 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 그 아동들이 그곳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동들(예를 들어, 가족 때문에 일을 해야 하는 빈곤층 아동들, 학교에 다녀야 할 나이지만 결혼을 하거나 자녀가 있는 여자 등) 이 교육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할 방법에 대해 묻는다. 그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가능하다면,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학교에 대해 조사하고 방문하게 한다. 이러한 대안학교가 아동권리협약에 포함된 아동

의 교육권 관련 기준들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토론 및 글쓰기를 하게 한다. 모든 아동들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촉구하기 위해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 UDHR 제26조; CRC 제28조, 29조

■ 만일 글을 읽을 수 없다면? What if you couldn't read?

학생들에게 평상시에 집, 학교, 지역사회 또는 그 밖의 곳에서 언제 무엇을 읽는지 목록을 작성하게 한다. 이 목록에는 컴퓨터를 한다든가 TV를 본다든가 아니면 동네를 산책한다든가 하면서 이루어지는 '무의식적 읽기'도 포함되어야 한다.

학생들에게 서로의 목록을 비교해보고 다음을 토론하게 한다.

- 만일 글을 읽을 수 없다면 자신의 생활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겠는가?
- 어떠한 활동을 전혀 또는 잘 할 수 없게 되겠는가?
- 문맹이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 만일 아래와 같은 사람이 글을 읽을 수 없다면, 문맹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겠는가?
 - 부모
 - 공장 근로자
 - 농업 종사 근로자
 - 상점 주인
 - 군인
 - 시민

인권으로서의 교육 Education as a human right

교육권은 인권의 상호의존성 원칙을 잘 보여준다. 학생들에게 세계인권선언의 30개 조항 또는 아동권리협약의 요약판을 검토하게 한 뒤, “여러분이 전혀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권리 행사 능력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겠는가?” 라고 묻는다(예: 세계인권선언 제21조의 정부 및 자유선거에 참가할 권리, 또는 아동권리협약 제13조의 표현의 자유).

2000년 현재 8억 5,000만 명이 넘는 전 세계의 성인 문맹 인구 중에서 거의 2/3가 여성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초등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약 1억 1,300만명의 아이들 중에서 60%가 여이라는 점도 알려준다. 이러한 사실이 여성의 인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자신의 권리를 알 권리 The right to learn your rights

권리에 관한, 그리고 권리를 위한 교육 그 자체가 세계적으로 인정된 인권임을 설명한다(제1장 참조). 학생들에게 다음을 질문한다.

- 사람들은 인권에 대하여 무엇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가?
- 인권교육은 왜 중요한가? 다른 사람들보다 인권교육이 더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누구이며, 이유는 무엇인가?
- 인권은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 인권(수업)은 기타 학교 과목들과 어떻게 다른가? (예: 지식과 함께 활동이 포함된다.)
- 학생들이 직접 인권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 UDHR 제26조; CRC 제17조, 29조

우리가 어느 곳에 살든지 개발·인권·환경의 문제는 상호의존적인 이슈일 수밖에 없다. 개발은 인간 중심적이며 참여적이고 환경적으로 건전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개발이란 단순히 경제적 성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평한 배분, 인간의 역량 개선, 인간의 선택범위 확대도 포함한다. 개발은 빈곤 퇴치, 개발과정에서의 여성 참여, 국민과 정부의 자립 및 자결, 원주민 권리의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인권과 개발의 밀접한 연관성은 유엔이 반세기 이상 심사숙고해 온 과정에 특히 잘 드러나고 있다. 개발에 대한 권리는 1986년 유엔의 「개발의 권리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 to Development)」 제1조에서 명확히 하고 있는데, 이 조항에 의하면 “개발에 대한 권리는 양도할 수 없는 인권으로서, 이 권리에 의해 모든 인간과 모든 국민(민족)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치적 개발에 참여하고, 기여하며, 이를 향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다”.

개발권은 다음을 포함한다.

- 천연자원에 대한 완전한 주권
- 자결권
- 대중의 개발 참여
- 기회 평등
- 기타 시민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우호적인 조건의 조성

학생들은 세계의 어느 곳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 이러한 이슈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바나 경험이 다를 수 있다.

일상적으로 물질적 결핍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은 자신의 활동을 당면한 현실에 바탕을 두고자 할 것이며 또 이 활동들을 세계체제와 밀접하게 연관시키고자 한다. 교사들은 진보적 개발에 대한 전망과 이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 생각해보기를 원할 것이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라면 개발 및 자결권 요구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와 인식을 높이고 그러한 개발과 자결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의 실제 사례를 제시하고자 할 것이다. 학생들은 이와 관련하여 비정부기구들과,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환경계획UNEP과 같은 정부간 기구들이 국제협력을 통해 어떻게 개발 및 환경에 대한 권리를 증진시키고 있는지 그 역할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음식 Food

학생들에게 하루에 먹고 마시는 것을 모두 적게 한다. 우리 신체가 생존과 성장을 위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물) 등에 관하여 배운 것을 분석한다.

식사 한 끼를 택하여 그 음식을 구성하고 있는 재료들을 추적하여 누가 생산·가공·운송·조리하였는지를 알아본다. 이러한 활동은 현지 시장과 식료품점에 물품을 공급하는 생산지나 가공지의 견학과 병행하여 할 수 있다.

일상의 식단 가운데 주위에서 쉽게 키울 수 있는 한 가지 채소(가급적이면 잘 알지 못하는 것)를 선택한다. 학생들을 둘씩 짝지어 그 채소를 캔이나 화분 또는 학교 화단에서 키우도록 한다. 왜 어떤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에 비해 채소를 성공적으로 키울 수 있었는지 그 원인을 알



아본다. 식물이나 작물 키우기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을 초청하여 원예에 대한 수업을 해본다. 학급의 모든 학생들이 함께 일하고 수확물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학급 텃밭을 시작해 본다. 개선 방법을 논하기 위한 브레인스토밍 시간을 갖는다. 예를 들어, 우리가 택한

재배방법이 최적인가? 해충을 제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가? 작업 분담 체제의 효과와 협력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러한 학급 활동을 통해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의 상황을 견주어 생각해볼 수 있다. 비도시 지역의 학교는 도시 지역의 학교와 연계를 맺어 서로 방문하고 각자의 경험(이 경우에는 식량 생산과 유통에 대한 각각의 관계)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 UDHR 제25조; CRC 제24조, 27조

■ 물 Water

신선한 물은 지금도 부족한 상태인데 앞으로는 더욱 부족해질 것이라고 한다. 건조한 지역에 사는 학생들은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학생들에게 마시고 씻는 데 쓰는 물의 양을 도표로 만들어 하루 물 사용량을 계산하게 한다. 학생들이 사용하는 물이 어디에서 오는지에 대해 조사하게 한다.

물은 오염물질과 질병을 야기하는 유기물을 운반한다. (공급과 처리 양쪽 다) 위생적인 수질 관리는 공동체 복지에 필수적이다. 학생들에게—개인적으로 또는 소그룹으로—학교의 물 공급 및 처리 시스템에 대해 조사하여 개선 방안을 제안하게 한다. 지역사회 전체에 대해서도 같은 활동을 해 볼 수 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물의 안전을 책임

지는 자기관이 있다면 누구인가?

* UDHR 제25조; CRC 제24조, 27조

적정 생활수준 An adequate standard of living

적당한 음식과 물은 기본적인 우선적 개발과제다. 세계인권선언 제25조는 음식을 건강과 복지에 적합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의 일부라고 명시한 구체적인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더 나아가 아동권리협약 제27조는 아동의 신체적·심적·정신적·도덕적·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는 유엔아동기금 UNICEF과 유엔의 식량농업기구FAO와 같은 기구의 주요 관심사이며, 국가안보 및 세계평화와도 관련이 깊다.

학생들에게 생존 및 복지를 위해 필요한 음식과 물의 최저요건을 조사하게 한다. 아동이 충분히 발달하기에 적합한 생활수준이 충족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학생들에게 개발수준이 매우 다른 국가들을 지정해 주고 유엔아동기금의 「세계의 아동현황State of the World's Children」 또는 유엔개발계획의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와 같은 유엔 발간 통계자료를 사용하여 조사하게 한다. 각각의 학생에게 해당 국가의 보통 사람의 프로필을 제시하게 한다(예를 들어, 수명, 소득, 식생활, 깨끗한 물 접근성). 이러한 국가간 수치의 차이가 국가와 지역뿐만 아니라 개인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토론한다.

물질적으로 풍요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는 학생들에게 그 지역 사회의 빈곤에 대해 알아보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빈곤의 영향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 토론한다.

* UDHR 제23조, 25조; CRC 제6조, 27조

주거 Housing

건축물로서의 집은 현지의 기후 및 지리, 가계 구조 및 지위, 문화적·종교적 성향, 건축자재의 활용 가능성 등을 직접 반영한다. 학급 전체와 함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집이 갖추어야 할 모든 것을 목록으로 작성하고 이러한 요소들을 갖춘 집을 학생들이 직접 설계하도록 한다. 학생들이 설계한 집을 묘사하고 특징을 설명하게 한다.

- 집 설계는 학생들의 가치관과 문화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
- 물, 전력 등의 자원을 절약하고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현지의 집 구조를 변경, 개선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는 가정에서 집 구조와 관련하여 특별히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는가?

현지 지역사회에 노숙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누구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토론하고 조사한다.

- 노숙자들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노숙homelessness은 인권 문제인가?
-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UDHR 제25조: CRC 제27조

인구 Population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인구증가의 효과는 매우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그 효과가 상대적으로 덜한 지역도 있지만, 이러한 현상은

보편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통계를 보면, 세계 인구가 기하학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증가가 환경과 자원 경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알 수 있다. 학생들은 인구 증가와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이슈들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또한 인구라는 주제는 상충하는 권리와, 국가에 대한 개인의 관계를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학생들에게 여러 국가들이 실시하고 있는 출산 장려 또는 산아 제한 등의 가족규모 관련 정책을 조사하고 이에 대해 토론하게 한다.

- 이러한 정책은 개인의 권리와 상충하는가?
-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가?

* UDHR 제16조

■ 근로 Work

세계경제가 변화하면서, 이와 함께 일work의 성격도 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선진국에서는 산업화가 도시화로 이어지면서 농촌지역에서 살며 농산물을 생산하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줄고 있다. 대도시에서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점점 늘고 있다. 모든 취업 희망자를 고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일자리가 없는 경우에는, 자신의 경제적 기회를 향상시키기 위해 다른 지역 또는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경향도 늘고 있다. 국내 또



는 국가간 이주 패턴은, 경제 개발의 패턴과 마찬가지로, 일자리와 관련된 경우가 많다. 각 국가는 자국민의 생산적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농업·산업·금융 및 무역 정책을 통합하는 데 힘써야 한다.

성인이 되기 위한 준비과정의 일환으로, 많은 학생들은 이미 다양한 유형의 직업에 대해 조사하고 있을 것이다.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을 학급으로 초청하여 학생들의 인식의 폭을 넓혀줄 수 있다. 더 좋은 방법은 학생들을 직접 다양한 업무 환경으로 데려가서 업무 과정을 실제로 보게 하는 것이다. 가능하다면, 학생들에게 어떠한 직업 분야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 물어서 그에 따른 현장학습을 계획할 수 있다.

각별한 관심을 끌고 있는 분야는 아동노동과 관련된 이슈들이다. 아동의 근로 연령, 근로 시간 및 업무 유형을 규제하여야 하는가? 이와 관련된 실제적이고 도덕적인 이슈들은 심사숙고하고 조사해보아야 할 중요한 분야이다. 학생들은 국제노동기구의 1999년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금지에 관한 협약(제182호)」과 아동권리협약의 조항들을 비교해볼 수 있다.

아동노동 및 노동관행에 대해 조사함으로써 대체로 학생들은 소비자 책임이라는 주제와, 인권과 국제무역관행의 관계에 대해서도 고찰하게 된다. (뒤의 '기업과 인권' 참고)

근로에 관한 학생 프로젝트(예를 들어 ① 지역, 국가 또는 국제 고용동향 ② 각 단계에서 '일'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③ '근로자들'은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조직체를 결성하는가)는 중요한 학습성과를 거둘 수 있다. 국제노동기구의 협약, 권고 및 보고서는 근로와 인권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 UDHR 제23~24조: CRC 제31~32조, 36조

에너지 Energy

무슨 일을 하던지 에너지가 필요하다. 많은 일을 할수록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학급 전체와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태양·음식물·석탄·가스·전기와 같은 모든 가능한 에너지원을 열거한다. 학생들에게 하루에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의 형태를 적게 한다. 각 에너지는 어디에서 오며 그 에너지는 어떻게 사용자에게 전달되는지에 대해 추적해 본다. 각 에너지가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인가? 이러한 에너지 유형의 환경적 효과에 대해서도 토론해 본다.

학교의 에너지 재고목록energy inventory을 작성한다.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는가? 에너지 절감 방안을 제시한다. 동일한 절차를 가정, 공동체, 지역 및 전 세계에 대해서도 적용해볼 수 있다.

지역사회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장치를 설계—심지어 제작까지—하는 그룹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이러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현지 자원은 무엇인가? (예: 바람, 태양, 물, 화석연료, 폐기물)

* UDHR 제25조; CRC 제27조

보건 Health

보건은 기본적 인권이며, 동시에 세계 개발의 기본 목표이기도 하다. 유엔 산하의 보건 분야 전문기구인 세계보건기구는 수많은 결의문을 통해서 이러한 목표와, 전 세계인의 보건상태에서 총체적인 불평등을 줄일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일차적 보건 혜택의 계획 및 실행은 개인 및 집단 차원의 행동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보건 혜택이 모두에게 제공되는 동시에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최대한의 자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다. 지역, 국가 및 국제 보건체제 조사는 다양하고 흥미로운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보건교육



을 학과목에 포함시킴으로써 학생들에게 영양, 생리학, 질병의 원인 및 예방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 지역의 의사나 보건 전문가를 연사로 초청하거나 관련 사실 및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훌륭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병

원이나 지역의 보건사업 견학을 계획한다.

보건이라는 주제를 폭넓게 보면 다른 중요한 인권 이슈들이 제기된다. 즉, 보건에서 여학생에 대한 차별, 아동노동 및 아동결혼이 보건과 관련하여 갖는 함축적 의미, 생식 보건 관련 정보에 대한 권리, 환경오염과 영양실조의 부정적 효과, 교육이 보건에 대해 갖는 긍정적 효과 등과 같은 이슈들을 포함한다.

* UDHR 제2조, 19조, 25조; CRC 제2조, 3조, 17조, 24조, 27조, 28조

경제발전과 상호연관성

세계인권선언과 아동권리협약의 여러 조항에서 양호한 생활수준에 대한 인간의 권리를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의 실현 여부는 해당 국가의 자원, 산업개발, 경제적 우선과제 및 정치적 의지 등에 의해 좌우된다. 경제발전의 실현—이것은 국가적, 국제적으로 의미를 가진다—은 분명히 그러한 권리의 이행과도 관련이 있다.

전 세계의 자원과 처리 가능한 부는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다. 왜 그럴까? 이 질문에 적절하게 대답하기 위해서는 지리와 국제사회 및 그 정치경제의 역사 전반에 대해 기술하고 설명하여야 할 것이다.

로컬 vs 글로벌 Local/global

학생들에게 신문이나 시사 잡지에서 세계의 다른 지역이 국내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으며, 우리나라가 세계의 다른 지역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는 기사(예: 환경·경제·보건 및 정치적 문제·음식·패션·음악 또는 기타 형태의 문화 교류, 이민, 특히 식품이나 자원의 수입과 수출)를 찾아보게 한다. 학생들이 찾아낸 관련 기사의 유형을 분류하기 위한 항목들(예: 무역·문화·관광·환경)을 만들고 각 기사에 해당 분류항목을 표시한다.

세계지도를 칠판에 붙이고 학생들에게 기사들을 항목별로 분류한 후 세계지도 주위에 붙이게 한다. 원인 발생 국가와 그 국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



국가로부터 영향을 받는 국가 사이에 화살표로 선을 긋거나 털실로 잇는다.

다음에 대해 토론한다.

- 세계의 어느 부분이 가장 많이 연결되었는가? 가장 적게 연결된 곳은 어디인가? 그 이유는?
- 어떠한 유형의 연계가 가장 많은가?
- 이러한 활동은 우리의 전 지구적 상호의존성에 대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 UDHR 제13조, 19조; CRC 제17조

■ 노사관계 Working life

어떠한 사업장(공장, 농원 또는 농장 등)에서 근로자들이 사업주나 경영주에게 여러 가지 요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학생들에게 말한다. 근로자들은 사업장의 경영에 대해 더 많은 발언권을 원한다. 또한 더 높은 임금, 더 높은 부상/질병 급여, 사업장 안전에 대한 배려, 교육 프로그램, 휴무기간 연장 등도 원한다.

학급을 근로자와 사용자 두 그룹으로 나눈다. 각각 협상 대표단을 보내 협상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함으로써 협상을 시작한다. 학생들에게 근로자의 권리에 관한 정보를 위해 국제노동기구의 협약을 참고하게 한다. 이번에는 역할을 바꾸어 동일한 절차를 반복한다.

* UDHR 제23조; CRC 제32조

■ 인과 그물망 Effects webs

오늘날 젊은이들은 세계를 상호의존적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물망으로서 이해하고 그러한 그물망의 여러 부분이 미묘한 균형을 이루고 있어 어느 한 부분의 변화가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 곳에서의 환경오염은 다른 많은 곳의 먹이사슬·보건·생활조건 및 생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슈들도 역시 상호연관성을 지닌다. 빈곤은 여러 요소들에 의해 야기되므로 빈곤 퇴치를 위한 노력에서는 그 요소들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복잡한 상호연관성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학급을 짝수의 소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에 한 문장을 나누어 주되, 적어도 두 그룹은 동일한 문장을 받게 한다. 이러한 문장들은 사실(예: “.....에는 인구의 30% 이상이 에이즈에 감염되어 있다”) 또는 “만일...이라면 어떨까?” 형식의 문장(예: “만일 여성이 남성만큼 재산을 소유한다면 어

떨까?) 이어야 한다. 각 그룹은 전지의 상단에 주어진 문장을 쓰고, 그 아래에 그 문장의 결과 세 가지를 적는다(예: “많은 아이들의 부모가 죽을 것이다”, “많은 아이들이 에이즈에 감염된 채 태어날 것이다”, “너무나 많은 감염자로 인해 국가보건사업이 재정적 부담이 클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 세 문장 각각의 아래에 그로 인한 결과를 다시 세 문장씩 적는다(예: “많은 아이들의 부모가 죽을 것이다”는 문장은 “고아가 된 아이들을 보살피기 위한 가족 및 사회 서비스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것이다”, “근로자의 수가 줄어들 것이다”, “자신들을 제대로 키워줄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많아질 것이다”로 이어진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 시각적인 인과 그물망web of effects이 만들어지게 된다. 동일한 문장이 주어진 그룹들끼리 결과를 비교하고 그에 대해 토론하게 한다. 전지로 ‘화랑gallery walk’을 만들어 전시하여 학생들이 자신이 만든 그물망을 다른 학생들에게 설명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그물망이 인권에 대해 갖는 함축적 의미와, 단일 이슈가 어떻게 사회의 여러 측면과 여러 다른 국가들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토론한다.

* UDHR 제28조: CRC 제3조

■ 개발 이슈 관련 연사 초청 Speakers on development issues

학급 인권클럽의 후원 하에, 개발 이슈와 관련된 인사를 학급에 초청하여 연설을 듣는다. 학생들에게 배경자료를 제공하고 질문할 내용을 작성하게 도와줌으로써 초청 연설에 대비한다. 이후에 학생들을 소그룹으로 나누어 토론되었던 내용을 여러 측면들에 대해 조사하게 한다(예: 지리적 위치, 지역사회의 특정 부분, 현대화·관료화·세계화·도시화 및 문화적 가치관의 변화 등과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특별한 이슈들).

기업과 인권

20세기 중반에 들어서면서, 세계인권선언과 당시 개발단계에 있던 인권 기본틀은 주로 각국의 정부가 자국민에 대해 어떻게 행동하였는가를 주로 다루었다. 그러나 경제의 세계화 추세로 인해, 오늘날에는 재정이나 힘, 국민의 생활에 대한 영향력에서 많은 기업들이 정부를 앞서고 있다. 정부는 국민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지만, 기업들, 특히 전 세계의 여러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은 주주에 대한 책임 외에는 법적인 공공책임성(public accountability)이 거의 없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다국적 기업들이 인권 이슈의 중심으로 등장하고 있다.

기업에게도 책임이 부과되어야 하는가?

Should businesses be accountable?

다음과 같은 이슈에 대해 토론한다.

- 거대한 다국적 기업은 어떠한 방식으로 자사 근로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가? 일반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 다국적 기업이 그 영향력을 사용하여 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 인권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왜 기업에 이익이 될 수 있는가? 아니면 왜 불이익이 될 수 있는가?

- 기업에게 인권기준 준수의 책임을 부과하여야 하는가?
- 시민과 비정부기구(NGO)들이 기업에게 인권기준을 준수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 UDHR 제28조; CRC 제3조, 6조

기업의 윤리규범 A corporate code of conduct

기업의 인권기준 이행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일부 기업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계열사 및 협력사에게 적용될 기업행동규범을 마련하였다.

어떠한 다국가 기업(의류 제조업체, 석유회사) 등에서 행동규범의 초안을 작성하기 위해 학생들을 고용하여 도움을 구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 하에 학생들을 소그룹으로 나누어 그 기업이 모든 업무의 측면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들의 목록을 작성하게 한다. 인권, 노동관행, 환경문제를 포함시킨다. 작성된 목록들을 서로 비교, 절충하여 최종 문서를 만든다.

학생들과 함께 만든 문서를, 1999년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이 발표한 원칙 목록인 ‘지구적 계약(Global Compact)’과 비교해볼 수 있다(전문은 해당 사이트 <http://www.unglobalcompact.org>나 유엔에 직접 연락해 볼 수 있음).

* UDHR 제3조, 28조; CRC 제3조, 6조

경제계 연사 초청 Speakers from the business community

학급 인권클럽의 후원 하에, 공정/윤리 거래 실천과 관련된 공공당국 및 비정부기구의 대표 및 지역의 기업연합체 대표(상공회의소, 로터리 클럽, 상인연합회 등)를 초청하여, 어떻게 지역 상거래가 세계경제에 의

해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 토론하고, 인권에 대한 기업의 책임성에 대한 연사들의 견해를 들어본다.

* UDHR 제19조, 23조, 25조; CRC 제3조, 6조, 17조, 27조

유엔에 대한 이해

세계인권선언 제26조는, 교육은 “평화유지를 위한 유엔의 활동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적고 있다. 모의 유엔, 즉 학생들이 유엔 회원국의 ‘대사’ 역할을 맡은 유엔체제 시뮬레이션은 유엔의 한계와 잠재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당히 유용한 교육적 도구다.

모의 유엔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명확하게 구분된다.

1. 준비: 학생들은 세 가지 기본 주제에 대해 조사한다.
 - ① 유엔과 그 업무
 - ② 유엔 회원국의 정부, 정책 및 관심사
 - ③ 의사일정에 포함된 지구적 이슈들조사 및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각자 할당된 회원국의 입장에서 ‘의견서’ 또는 결의서를 작성하고 협상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참가: 앞 단계의 조사 내용이 활용되는 단계로서, 학생들은 회원국의 ‘대사’ 역할을 맡아 대중연설, 경청하기, 시간 관리, 협상 및 협의 기술을 실제로 사용하게 된다.
3. 평가: 이 활동을 마치기 전에 반드시 신중한 결과 보고 및 평가를 하도록 한다. 시뮬레이션의 각 측면(예: 조사, 프레젠테이션, 협상)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 활동에서 교사는 전문가로서가 아니라 학생들의 조사 및 분석을 지원하는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다음은 모의 유엔 활동의 내용을 축약한 것이다. 모의 유엔 프로그램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부록 5>의 자료 목록을 참조하기 바란다. 또한, 국제연합협회세계연맹 World Federation of United Nations Associations에 연락하여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부록 4> 참조).

모의 유엔 시뮬레이션 A model United Nations simulation

현재 지구적 중요성을 띠고 있는 이슈들을 골라 학생들에게 제시한다. 개별적으로 또는 그룹으로 여러 유엔 회원국을 대표하고 각국에 대해 조사하게 한다. 조사 목적은 정해진 국가에 대해 알고 그 국가가 주요 이슈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데 있음을 설명한다.

학생들이 조사를 끝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준 후에, 각 '대사'에게 해당국가 또는 지역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주요 이슈 하나를 선택하여 그에 대해 '총회'에 제출할 결의문을 작성하게 한다. 결의문에는 관련 문제에 관한 상세한 설명과 상황 개선을 위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유엔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학생들에게 결의문을 비교하고 지지자 그리고/또는 공동후원자를 구해 보게 한다. 학생들에게 결의문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과 결의문을 수정할 수도 있음을 설명해 준다.

모의 유엔 포럼을 개최한다. 학생들을 둥글게 앉히고 앞에 대표하는



국가의 이름을 적어 놓는다. 교사 또는 감당할 능력이 있는 학생이 ‘사무총장’ 역할을 맡는다. 포럼의 의사규칙을 마련한다(예를 들어 각 참가자에 대해 국가명을 붙여 ‘...의 대사’로 지칭한다, ‘사무총장’이 발언을 허가하기 전에는 아무도 발언할 수 없다).

‘사무총장’은 결의문이 발표되고 이에 대한 토론, 질문, 투표가 차례대로 진행되게 한다. 잠정 결의문에 대한 토론이 끝나면, 누구든지 그 결의문을 표결에 부치는 것을 발의할 수 있다. 발의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다른 ‘대사’의 재청이 있어야 한다. 결의문 통과를 위해서는 참가자 2/3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서면 또는 구두 평가로 활동을 마무리한다. 이 평가에는, 유엔과 국제문제에서 유엔의 역할에 대해 학생들이 배운 것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과 교사의 평가가 포함된다.

* UDHR 제1조, 28조, 30조; CRC 제3조

인권 공동체 형성

인권교육의 궁극적 목표중 하나는 참다운 인권문화 조성이다. 이를 위해서, 학생들은 실제생활의 경험들을 인권적 측면에서 평가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러한 평가는 자신의 행동과 자신이 살고 있는 공동체 사회에서부터 시작된다. 학생들은 자신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현실이 인권 원칙들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정직하게 평가하고, 공동체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학생들에게 자기 학교의 인권 분위기를 평가해보게 한다. 즉, 다음의 질문지 작성을 통해 학교의 ‘인권 온도human rights temperature’를 재보도록 한다. 결과를 기록하고 그에 대해 다음을 주제로 토론한다.

- 우리 학교는 어떤 분야에서 인권원칙을 증진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가?
- 우리 학교는 어떤 분야에 인권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가?
- 문제가 되는 그러한 상황의 존재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차별과 관련이 있는가? 아니면 결정과정의 참여와 관련이 있는가? 이러한 인권침해로 이익을 보는 사람은 누구이며 손해/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인가?
- 여러분 또는 이 지역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은 인권 상황을 개선 또는 악화시킴으로써, 지금의 인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바 있는가?
- 우리 학교의 인권 분위기 개선을 위해 어떠한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학급 전체가 목표, 전략 및 책임을 설정하여 행동계획을 수립한다.

11) 데이비드 쉬만David Shiman의 『사회적·경제적 정의: 인권의 관점에서Social and Economic Justice: A Human Rights Perspective』에서 발췌, 정리함.

우리 학교의 인권온도 측정하기

다음의 각 문장을 읽고 여러분의 학교에 대해 아래에 해당되는 점수를 빈칸에 써 넣으세요. 여러분의 학교 구성원, 즉 학생·교사·관리자·직원들 모두를 고려하여 작성하십시오. 질문지 작성이 끝나면 모든 점수를 합산하여 여러분의 학교에 대해 전반적인 평가를 하십시오. 각 문장의 아래에는 세계인권선언UDHR과 아동권리협약CRC의 관련 조항을 괄호 안에 표기하여 두었습니다.

(점수)

- 1: 전혀 아니다(전혀/거짓이다)
- 2: 드물다
- 3: 때로 그렇다
- 4: 항상 그렇다 (전혀/사실이다)
5. 모른다: 해당 문제에 대해 답을 알지 못하는 경우

1. 우리 학교 구성원들은 인종, 성별, 가정배경, 장애, 종교 또는 생활 방식을 이유로 차별받고 있지 않다.

* UDHR 제2조, 16조; CRC 제2조, 23조

2. 우리 학교에서 나는 안전하고 보호받는 느낌이 든다.

* UDHR 제3조, 5조; CRC 제6조, 제37조

3. 모든 학생들에게 학업 및 진로 기회에 관한 정보와 지원을 동등하게 제공하고 있다.

* UDHR 제2조, 26조; CRC 제2조, 29조

4. 우리 학교에서는 모든 이들에게 동등한 접근권, 자원, 활동 및 편의 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 UDHR 제2조, 7조; CRC 제2조

5. 우리 학교 구성원들은 학교에서의 차별적 행위, 차별적 내용의 교재 그리고 차별적 발언에 반대할 것이다.

* UDHR 제2조, 3조, 7조, 28조, 29조; CRC 제2조, 3조, 6조, 30조

6.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위반하면, 위반한 사람에게는 자신의 태도를 고칠 방법을 알 수 있도록 도움이 제공된다.

* UDHR 제26조; CRC 제28조, 29조

7. 우리 학교 구성원들은 나의 학업적 발전뿐만 아니라 나의 인간적 측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어 내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도와 주려고 노력한다.

* UDHR 제3조, 22조, 26조, 29조; CRC 제3조, 6조, 27~29조, 31조

8. 갈등이 발생하면, 우리는 비폭력적이고 협력적인 방법으로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 UDHR 제3조, 28조; CRC 제3조, 13조, 19조, 29조, 37조

9. 우리 학교는 차별과 관련된 정책 및 절차를 두고 있어서, 관련 사건이 발생하면 그러한 정책 또는 절차를 이용한다.

* UDHR 제3조, 7조; CRC 제3조, 29조

10. 징벌과 관련된 사항의 경우, 유죄 여부의 결정과 징벌 부과에서 모두에게 공평하고 공정한 처우가 보장된다.

* UDHR 제6~10조; CRC 제28조, 40조

11. 우리 학교에서는 어느 누구도 모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않는다.

* UDHR 제5조; CRC 제13조, 16조, 19조, 28조

12. 잘못을 저지른 혐의가 있는 자라도 유죄가 인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간주한다.

* UDHR 제11조; CRC 제16조, 28조, 40조

13. 나의 사적인 공간과 소유물은 존중된다.

* UDHR 제12조, 17조; CRC 제16조

14. 우리 학교는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배경과 문화를 지닌 학생, 교사, 관리자 및 직원을 환영한다.

* UDHR 제2조, 6조, 13~15조; CRC 제2조, 29~31조

15. 나는 차별에 대한 걱정 없이 나의 신념과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 UDHR 제19조; CRC 제13조, 14조

16. 우리 학교의 구성원들은 검열 또는 차별에 대한 걱정 없이 출판물을 제작, 배포할 수 있다.

* UDHR 제19조; CRC 제13조

17. 교과과정, 교과서, 조회, 도서관, 교실수업에 다양한 관점(예를 들어 gender, 인종/민족, 이념적 관점)이 고루 존재한다.

* UDHR 제2조, 19조, 27조; CRC 제17조, 29조, 30조

18. 나에게는 학교내 문화적 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며, 나의 문화적 정체성, 언어 및 가치관은 존중받고 있다.

* UDHR 제19조, 27조, 28조; CRC 제29~31조

19. 우리 학교의 구성원들은 학교 정책과 교칙을 수립하기 위한 민주적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 UDHR 제20조, 21조, 23조; CRC 제13조, 15조

20. 우리 학교의 구성원들은 교내에서 자신의 권리 또는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합체를 결성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UDHR 제19조, 20조, 23조; CRC 제15조

21. 우리 학교의 구성원들은 불의, 환경, 빈곤 및 평화와 관련된 사회적·지구적 문제들에 대해 배우도록 서로 격려한다.

* UDHR 전문, 제26조, 29조; CRC 제29조

22. 우리 학교의 구성원들은 불의, 환경, 빈곤 및 평화와 관련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단체를 결성하고 행동을 취하도록 서로 격려한다.

* UDHR 전문, 제20조, 29조; CRC 제29조

23. 우리 학교의 구성원들은 수업일 중에 적절한 휴식/휴무 시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공정한 근로조건 하에서 합리적인 길이의 시간을 일한다.

* UDHR 제23조, 24조; CRC 제31조, 32조

24. 우리 학교에 고용된 근로자들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 및 행복을 위해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충분한 보수를 받는다.

* UDHR 제22조, 25조; CRC 제27조

25. 나는 우리 학교에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 UDHR 제1조, 29조; CRC 제29조

총합: _____

최대 인권 온도 = 100도

우리 학교의 인권 온도 = ()도

이제 단지 시작일 뿐……



이 책 『학교 인권교육 길라잡이』는 단지 시작일 뿐 결코 끝이 아니다. 이 책에서는 제안하고 있을 뿐 결코 처방을 내리지는 않는다. 이 책의 목적은 토론과 아이디어를 활성화시킴으로써 학생들이 권리와 의무에 대해 객관적인 이해의 기초를 닦도록 도와주어, 결과적으로 인권원칙을 우리 인간의 삶에 최대한 적용시킬 수 있게 하는 데에 있다.

또한 이 책은 교사들에게 동기와 영감을 불어넣어, 이를 기반으로 교사들이 학교의 교과과정 및 문화에 인권을 통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교수법과 전략을 모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교사들은 다른 인권 교육가들과 아이디어 및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모든 인권교육을 위한 노력에는 몇 가지 기본적인 공통점이 있다.

- 인간 존엄성, 평등과 같은 보편적인 인권원칙들을 핵심적인 가치체계로 삼는다.
- 그 내용이 세계인권선언, 아동권리협약과 같은 주요 인권조약에 뿌리를 두고 있다.
- 인권의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을 인정한다.
- 인권과 개인 및 국가의 책임 사이에 상호관련성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
- 인권을, 인간의 필요needs에 대한 이해가 발전함에 따라 진화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며, 인권과 관련한 관심사를 국제무대로 이끌어내는 데 시민과 비정

부기구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예를 들어,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되었을 당시에 환경오염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깨끗한 공기와 물을 기본적인 인권으로 보는 시각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환경적 문제를 다루기 위한 국제 차원의 법적 장치가 현재 논의 중에 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깨달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는 인권이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인권유린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인권이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권리와 자유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국제적 질서 속에서 인간적 품성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것이다.

* UDHR 제26조, 28조

학생들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배웠던 사항들을 어떻게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도록 격려하라. 인권원칙들을 사회에 실제 적용한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는 이 책의 여러 활동들을 기초로 삼아 그러한 활동들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활동 과정은 지금까지의 학습내용을 통합할 수 있게 하며, 학생들이 현재 그리고 성인이 된 후에, 교실과 학교를 벗어나 인권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들을 축적해 나가는 데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다.

부록 1

세계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

이 부록의 '쉬운 말 표현'은 단지 길잡이의 역할에 불과하다. 각 원리의 정확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원문을 참고하게 해야 한다. 여기에 실린 이 '요약본'은 L. 매사렌티(L. Massarenti)의 책임하에 제네바 대학의 연구 모임이 1978년에 '평화의 기구로서 학교를 위한 세계연합(World Association for the School as an Instrument of Peace)'을 위해 제작한 불어판을 근거로 하였다. 이 연구모임은 이 책에 스위스의 불어권 지역에서 사용하는 2,500개의 기본 어휘를 사용하였고, 불어판의 영어 번역은 유엔이 담당하였다. 교사들은 세계인권선언의 본문을 각 나라에서 사용되는 언어로 번역할 때 이러한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3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된 세계인권선언의 원문은 <http://www.orchr.org>에서 볼 수 있다.

원문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 받았으며 서로에게 형제의 정신으로 대하여야 한다.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나아가 개인이 속한 나라나 영역이 독립국이든 신탁통치지역이든, 비자치지역이든 또는 그 밖의 다른 주권상의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이든, 그 나라나 영역의 정치적·사법적·국제적 지위를 근거로 차별이 행하여져서는 안 된다.

(제3조)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제4조)

어느 누구도 노예나 예속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 및 노예매매는 금지된다.

(제5조)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쉬운 말 표현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로우며, 서로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지니고 있으며, 서로에게 우호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아래와 상관없이 이 선언에서 말하는 권리들을 주장할 수 있다.

- 다른 성별
- 다른 피부색
- 다른 언어의 사용
- 다른 사고방식
- 다른 종교
- 소유 재산의 정도
- 소속 사회집단
- 출신 국가

또한,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독립여부와 관계없이 그러한 권리들을 주장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생명에 대한 권리와, 자유롭고 안전하게 살 권리를 지닌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자신의 노예로 취급할 권리가 없으며, 다른 사람이 자신을 노예로 삼게 해서도 안 된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고문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

원문

(제6조)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7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을 위반하는 어떠한 차별에 대하여도, 또한 어떠한 차별의 선동에 대하여도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담당 국가법원에 의하여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9조)

어느 누구도 자의적인 체포, 구금 또는 추방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형사상의 혐의를 결정함에 있어서 독립적이고 편견 없는 법정에서 공정하고도 공개적인 심문을 전적으로 평등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1조)

1. 형사범죄로 소추 당한 모든 사람은 자신의 변호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장치를 갖춘 공개된

쉬운 말 표현

사람은 모든 곳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한다.

법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다. 즉,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법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은 국가로부터 부여 받은 자신의 권리가 존중되지 않을 때 법적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어느 누구도 부당하게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을 감옥에 가두거나,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거나, 그의 나라에서 쫓아낼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공개재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재판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모든 사람은 죄가 있다고 입증될 때까지는 무죄로 간주되어야 한다. 범죄 행위로 고발된 사람은 언

원문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어느 누구도 행위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상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작위 또는 무작위를 이유로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또한 범죄가 행하여진 때에 적용될 수 있는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제12조)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하여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과 공격에 대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3조)

- 모든 사람은 각국의 영역 내에서 이전과 거주에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로부터도 출국할 권리가 있으며, 또한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

(제14조)

-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하여 타국에서 피난처를 구하고 비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이 권리는 비정치적인 범죄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만으로 인하여 제기된 소추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15조)

-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쉬운 말 표현

제라도 자신을 변호할 권리가 있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이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 형을 선고하고 처벌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집에 들어오거나, 편지를 열어보거나, 자신과 가족을 괴롭히려는 경우 보호를 요청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나라에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또한 자신의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로 갈 수 있으며, 원하는 경우 귀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을 해치려는 사람의 위협을 피해 다른 나라로 가서 자신을 보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단, 누군가를 죽였다거나 이 선언에 쓰여진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권리를 잃게 된다.

모든 사람은 한 국가에 속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

원문

2.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국적을 박탈당하거나 그의 국적을 바꿀 권리를 부인당하지 아니한다.

(제16조)

1. 성년에 이른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따른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혼인하여 가정을 이룰 권리를 가진다. 이들은 혼인 기간 중 및 그 해소시 혼인에 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2. 결혼은 양 당사자의 자유롭고도 완전한 합의에 의하여만 성립된다.
3.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며 기초적인 구성 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7조)

1.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는 물론 타인과 공동으로 자신의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재산을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바꿀 자유와 선교, 행사, 예배, 의식에 있어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쉬운 말 표현

며,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나라에 속하려고 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모든 사람은 법적 자격을 얻게 되면 결혼하여 가정을 가질 권리를 가지고 있다. 피부색, 출신 국가, 종교 때문에 이러한 권리가 방해 받아서는 아니되며, 남성과 여성은 결혼한 상태일 때나 이혼한 상태일 때나 서로 동등한 권리를 지닌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결혼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정부는 그 국가에 속하는 가정과 가정의 구성원들을 보호하여야 한다.

모든 사람은 물건을 소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이 소유한 물건을 빼앗을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종교를 자유롭게 공개적으로 말하며, 종교를 바꾸고, 혼자서 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종교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원문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 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자유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제20조)

1. 모든 사람은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어떤 결사에 소속될 것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제21조)

1.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자국의 통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국의 공무에 취임할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3. 국민의 의사는 정부의 권위의 기초가 된다. 이 의사는 보통 및 평등 선거권에 의거하며, 또한 비밀투표 또는 이와 동등한 자유로운 투표 절차에 따라 실시되는 정기적이고 진정한 선거를 통하여 표현된다.

(제22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각국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 자신의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하여 불가결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실현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쉬운 말 표현

모든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좋아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어느 누구도 이를 막을 수 없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다른 나라의 사람들과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사람은 평화적 모임을 조직하거나 그러한 모임에 평화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개인을 집단에 속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잘못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직접 정부에 참여하거나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가진 정치가를 선택함으로써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또한 정권을 선택하기 위한 투표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투표는 비밀투표로 하여야 한다. 모든 사람은 투표권을 가져야 하며, 모든 투표권은 동등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과 똑같이 공무원이 될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사회는 그 속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가 주어진 모든 이점(문화, 경제, 사회복지)을 개발하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원문

(제23조)

1. 모든 사람은 근로의 권리, 자유로운 직업 선택권,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 및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모든 근로자는 자신과 가족에게 인간적 존엄에 합당한 생활을 보장하여 주며, 필요할 경우 다른 사회적 보호의 수단에 의하여 보완되는,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4.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제24조)

모든 사람은 근로시간의 합리적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휴일을 포함한 휴식과 여가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제25조)

1. 모든 사람은 식량, 의복, 주택, 의료, 필수적인 사회역무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실업, 질병, 불구, 배우자와의 사별, 노령, 그 밖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다른 생계 결핍의 경우 사회보장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2. 모자는 특별한 보살핌과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어린이는 부모의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동등한 사회적 보호를 향유한다.

쉬운 말 표현

모든 사람은 일할 수 있고,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며, 자신의 생활과 가족부양에 충분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남성과 여성이 똑같은 일을 하는 경우, 그들은 똑같은 보수를 받아야 한다. 일하는 사람은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같이 모일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근무일이 너무 길어서는 안 되며, 정기적으로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병에 걸리지 않고, 굶지 않으며, 입을 옷과 살 집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이 병에 걸리거나, 실직하거나, 나이가 들거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그 밖에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이유로 인해 생계비를 벌 수 없는 경우에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아기를 출산하게 될 여성과 그 아이에게는 특별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모든 아동은 자신의 어머니의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똑같은 권리를 가진다.

원문

(제26조)

1.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최소한 초등 기초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은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고등교육도 능력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개방되어야 한다.
2.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 교육은 모든 국가들과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 간에 이해, 관용 및 친선을 증진시키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촉진시켜야 한다.
3. 부모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함에 있어서 우선권을 가진다.

(제27조)

1.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과학적·문학적·예술적 창작물에서 생기는 정신적·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8조)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제시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 및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29조)

1. 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만 자신의 인격을 자유

쉬운 말 표현

모든 사람은 학교에 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학교에 다녀야 한다. 초등학교 교육은 무료로 제공되어야 하며, 직접 교육을 배우거나 희망하는 정도까지 공부를 계속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에서 자신의 재능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하고, 인종, 종교 또는 출신국가에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배워야 한다. 부모는 자녀가 학교에서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할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공동체의 예술과 과학, 그리고 그러한 예술과 과학이 주는 혜택을 함께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다. 예술가, 작가 또는 과학자의 작품은 보호되어야 하며, 이들은 자신의 작품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사람의 권리가 확실히 존중되도록 하기 위해 권리보호를 위한 '질서'가 필요하다. 이러한 '질서'는 지역적 또는 세계적인 것이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개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

원문

롭고 완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2.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 타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적절한 인정과 존중을 보장하고, 민주사회에서의 도덕심, 공공질서, 일반의 복지를 위하여 정당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에서만 법률에 규정된 제한을 받는다.
3.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여 행사될 수 없다.

(제30조)

이 선언의 그 어떠한 조항도 특정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이 이 선언에 규정된 어떠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할 목적의 활동에 종사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행위를 행할 어떠한 권리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쉬운 말 표현

는 공동체에 의무를 지닌다. 법은 인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법을 통해 다른 사람을 존중하도록 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중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세계의 어떤 개인이나 사회도 이 선언에 기술되어 있는 권리들을 파괴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부록 2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89

전문(前文)은 유엔과 관련인권조약 및 선언문의 세부 규정이 담고 있는 기본 원칙을 상기시키고 있다. 전문에서는 아동은 취약한 집단이기 때문에 특별한 배려와 보호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고 있으며, 가족의 일차적 보살핌과 보호책임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또한, 출생 전후 아동에 대한 법적 또는 기타 보호 장치가 필요하며, 아동이 속한 공동체의 문화적 가치를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과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어 국제적 협력의 역할이 중요함을 재확인하고 있다. (1989년 11월 20일 UN 총회에서 채택됨)

쉬운 말 표현의 출처는 국제아동구호기금(UNICEF)이다.

원문

제 1 부

(제1조)

이 협약의 목적상 '아동'이라 함은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보다 조기에 성인 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2조)

1.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안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그의 부모나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표명된 의견 또는 신념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

1.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후견인, 기타 아동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아동에게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쉬운 말 표현

아동의 정의

국내법에 의해 성년의 나이를 더 낮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동은 18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차별금지

이 규약의 모든 권리는 예외 없이 모든 아동에게 적용된다. 국가는 모든 형태의 차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권리의 증진을 위해 적극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닌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s of the child)

아동과 관련된 모든 조치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국가는 부모 또는 기타 양육의 책임이 있는 자가 아동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대신하여야 한다.

원문

3. 당사국은 아동에 대한 배려와 보호에 책임 있는 기관, 편익 및 시설이 관계당국이 설정한 기준, 특히 안전과 위생 분야 그리고 직원의 수 및 적격성은 물론 충분한 감독면에서 기준에 따를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하여 당사국은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협력의 테두리 안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아동이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당사국은 부모 또는 적용 가능한 경우 현지 관습에 의하여 인정되는 확대가족이나 공동체의 구성원, 후견인 기타 아동에 대한 법적 책임자들이 아동의 능력발달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감독과 지도를 행할 책임과 권리 및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6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7조)

1.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시

쉬운 말 표현

권리의 이행

국가는 본 협약에 포함되어 있는 권리를 이행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야 한다.

부모의 지도와 아동의 진화하는 역량

국가는 부모와 확대가족이 아동의 능력발달에 적합한 지도를 할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존중하여야 한다.

생존과 발달

모든 아동은 고유한 생명권이 있으며, 국가는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성명과 국적

아동은 출생시부터 이름을 가질 권리가 있다. 또

원문

부터 성명권과 국적 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당사국은 이 분야의 국내법 및 관련 국제문서상의 의무에 따라 이러한 권리가 실행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권리가 실행되지 아니하여 아동이 무국적으로 되는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제8조)

1. 당사국은 위법한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국적, 성명 및 가족관계를 포함하여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신분을 보존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한다.
2. 아동이 그의 신분요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불법적으로 박탈당한 경우, 당사국은 그의 신분을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하여 적절한 원조와 보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1. 당사국은 사법적 심사의 구속을 받는 관계당국이 적용 가능한 법률 및 절차에 따라서 분리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외에는, 아동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위의 결정은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 또는 유기의 경우나 부모의 별거로 인하여 아동의 거소에 관한 결정이 내려져야 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필요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떠한 절차에서도 모든 이해당사자는 그 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견해

쉬운 말 표현

한, 아동은 국적을 취득하고,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신분의 유지

국가는 아동의 신분을 보호하고, 필요할 경우 기본적 신분요소를 회복시킬 의무가 있다. 여기에는 성명, 국적, 가족관계가 포함된다.

부모로부터의 분리

아동의 최상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간주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아동은 자신의 부모와 함께 살 권리를 가지고 있다. 또한, 아동은 부모가 이혼한 경우 양부모와 접촉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원문

를 표시할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외에는,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가짐을 존중하여야 한다.
4. 그러한 분리가 부모의 일방이나 쌍방 또는 아동의 감금, 투옥, 망명, 강제퇴거 또는 사망(국가가 억류하고 있는 동안 어떠한 원인에 기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등과 같이 당사국에 의하여 취하여진 어떠한 조치의 결과인 경우 당사국은 그 정보의 제공이 아동의 복지에 해롭지 아니하는 한, 요청이 있는 경우, 부모, 아동 또는 적절한 경우 다른 가족구성원에게 부재 중인 가족구성원의 소재에 관한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그러한 요청의 제출이 그 자체로 관계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10조)

1.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국의 의무에 따라서, 가족의 재결합을 위하여 아동 또는 그 부모가 당사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기 위한 신청은 당사국에 의하여 긍정적이며 인도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이러한 요청의 제출이 신청자와 그의 가족 구성원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수반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 부모가 타국에 거주하는 아동은 예외적 상황 외에는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이

쉬운 말 표현

가족의 재결합

아동과 그 부모는 재결합 또는 자녀부모의 관계 유지를 목적으로 어느 나라든지 입·출국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원문

러한 목적에 비추어 그리고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당사국의 의무에 따라서, 당사국은 아동과 그의 부모가 본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국가로부터 출국할 수 있고 또한 본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어떠한 국가로부터 출국할 수 있는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공보건이나 도덕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이 협약에서 인정된 그 밖의 권리에 부합되는 제한에 의하여만 구속된다.

(제11조)

1. 당사국은 아동의 불법 해외이송 및 미귀환을 퇴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양자 또는 다자협정의 체결이나 기존 협정에의 가입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12조)

1.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2.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아동에게는 특히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적·행정적 절차에 있어서도 직접 또는 대표자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가 국내법적 절차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주어져야 한다.

쉬운 말 표현

불법이송 및 미귀환

국가는 부모 중 1인 또는 제3자에 의해 아동이 해외로 납치되거나 해외에 억류되는 것을 막고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동의 의견

아동은 자신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항이나 절차에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원문

(제13조)

1. 아동은 표현에 대한 자유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필기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아동이 선택하는 기타의 매체를 통하여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국경에 관계없이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이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제한은 오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 (a) 타인의 권리 또는 신망의 존중
 - (b)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제14조)

1. 당사국은 아동의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부모 및 경우에 따라 후견인이 아동의 능력발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그를 감독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여야 한다.
3. 종교와 신념을 표현하는 자유는 오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서, 보건이나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권적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다.

(제15조)

1. 당사국은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2.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

쉬운 말 표현

표현의 자유

아동은, 국경에 관계없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생각이나 정보를 알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국가는 부모의 적절한 지도하에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결사의 자유

아동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만나고, 모임을 결성하거나 참가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법의 준수 및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

원문

되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이나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해져서는 된다.

(제16조)

1.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상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2. 아동은 이러한 간섭 또는 비난으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7조)

당사국은 대중매체가 수행하는 중요한 기능을 인정하며, 아동이 다양한 국내적 및 국제적 정보원으로부터의 정보와 자료, 특히 아동의 사회적·정신적·도덕적 복지와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와 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가짐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 (a) 대중매체가 아동에게 사회적·문화적으로 유익하고 제29조의 정신에 부합되는 정보와 자료를 보급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 (b) 다양한 문화적·국내적 및 국제적 정보원으로부터의 정보와 자료를 제작·교환 및 보급하는 데 있어서의 국제협력력을 장려하여야 한다.
- (c) 아동도서의 제작과 보급을 장려하여야 한다.
- (d) 대중매체로 하여금 소수집단에 속하거나 원주민인 아동의 언어상의 곤란에 특별한 관심

쉬운 말 표현

호를 위해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한 받지 않는다.

사생활 보호

아동은 사생활, 가족, 가정 및 통신의 간섭, 그리고 명예훼손과 비방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적합한 정보에의 접근

국가는 아동에게 다양한 정보원의 정보와 자료에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대중매체가 아동에게 유익한 사회·문화적 정보를 보급하도록 장려하고, 유해한 정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원문

을 기울이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 (e) 제13조와 제18조의 규정을 유념하며 아동 복지에 해로운 정보와 자료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지침의 개발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18조)

1. 당사국은 부모 쌍방이 아동의 양육과 발전에 공동책임을 진다는 원칙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서 후견인은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일차적 책임을 진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그들의 기본적 관심이 된다.
2.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보장하고 촉진시키기 위하여, 당사국은 아동의 양육책임 이행에 있어서 부모와 후견인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아동 보호를 위한 기관·시설 및 편의의 개발을 보장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취업부모의 아동들이 이용할 자격이 있는 아동보호를 위한 편의 및 시설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

1.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후견인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쉬운 말 표현

부모의 책임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일차적 책임을 지니며, 국가는 부모의 이러한 책임을 지지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아동학대와 유기로부터의 보호

국가는 부모 또는 기타 아동보호의 책임을 진 자의 학대행위가 있을 시 아동을 보호하여야 하며, 아동학대 방지와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적절한 사회 프로그램을 수립하여야 한다.

원문

2. 이러한 보호조치는 아동 및 아동양육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계획의 수립은 물론,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은 아동학대 사례를 다른 형태로 방지하거나 확인·보고·조회·조사·처리 및 추적하고 또한 적절한 경우에는 사법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 절차를 적절히 포함하여야 한다.

(제20조)

1. 일시적 또는 항구적으로 가정환경을 박탈당하거나 가정환경에 있는 것이 스스로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허용될 수 없는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부여받을 권리가 있다.
2.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러한 아동을 위한 보호의 대안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이러한 보호는 특히 양육위탁, 회교법의 카팔라, 입양, 또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아동 양육 기관에 두는 것을 포함한다. 해결책을 모색하는 경우에는 아동 양육에 있어 계속성의 보장이 바람직하다는 점과 아동의 인종적·종교적·문화적 및 언어적 배경에 대하여 정당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제21조)

입양제도를 인정하거나 허용하는 당사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또한 당사국은,

- (a) 아동의 입양은, 적용 가능한 법률과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적절하고 신빙성 있는 모든 정보에 기초하여, 입양이 부모·친척 및 후견인에

쉬운 말 표현

가정이 없는 아동의 보호

국가는 가정환경을 박탈당한 아동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조치를 제공하고 그러한 경우에 적절한 대체 가족양육 및 기관 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아동의 문화적 배경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입양

입양이 인정되거나 허용되는 국가에서, 입양은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해야 하고, 아동을 위한 안전장치의 마련 위에 관할당국의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원문

대한 아동의 신분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음을, 그리고 요구되는 경우 관계자들이 필요한 협의에 의하여 입양에 대한 분별 있는 승낙을 하였음을 결정하는 관계당국에 의하여만 허가 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b) 국제입양은, 아동이 위탁양육자나 입양가족에 두어질 수 없거나 또는 어떠한 적절한 방법으로도 출신국에서 양육될 수 없는 경우, 아동 양육의 대체수단으로서 고려될 수 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 (c) 국제입양에 관계되는 아동이 국내입양의 경우와 대등한 보호와 기준을 향유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d) 국제입양에 있어서 양육 지정이 관계자들에게 부당한 재정적 이익을 주는 결과가 되지 아니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e) 적절한 경우에는 양자 또는 다자약정이나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이 조의 목적을 촉진시키며, 이러한 테두리 안에서 아동의 타국 내 양육 지정이 관계당국이나 기관에 의하여 실시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

1. 당사국은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구하거나 또는 적용 가능한 국제법 및 국내법과 절차에 따라 난민으로 취급되는 아동이, 부모나 기타 다른 사람과의 동반 여부에 관계없이, 이 협약 및 당해 국가가 당사국인 다른 국제인권 또는 인도주의 관련 문서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적절한 보호와 인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

쉬운 말 표현

난민 아동

난민 아동 또는 난민 지위를 신청한 아동에게는 특별한 보호가 제공되어야 하며, 국가는 그러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들과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원문

- 하여야 한다.
-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국제연합 및 국제 연합과 협력하는 그 밖의 권한 있는 정부간 또는 비정부간 기구들이 그러한 아동을 보호, 원조하고 가족재결합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난민 아동의 부모나 다른 가족 구성원을 추적하는 데 기울이는 모든 노력에 대하여도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협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모나 다른 가족구성원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 그 아동은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을 박탈당한 다른 아동과 마찬가지로 이 협약에 규정된 바와 같은 보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제23조)

- 당사국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아동이 존엄성이 보장되고 자립이 촉진되며 적극적 사회참여가 보장되는 여건 속에서 충분히 품위있는 생활을 누려야 함을 인정한다.
- 당사국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인정하며, 신청에 의하여 그리고 아동의 여건과 부모나 다른 아동양육자의 사정에 적합한 지원이, 활용 가능한 자원의 범위 안에서, 이를 받을 만한 아동과 그의 양육 책임자에게 제공될 것을 장려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 장애아동의 특별한 어려움을 인식하며, 제2항에 따라 제공된 지원은 부모나 다른 아동양육자의 재산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장애아동의 가능한 한 전면적인 사회참여와 문화적·정신적 발전을 포함한 개인적 발전의 달성에 이바지하는 방법으로 그

쉬운 말 표현

장애 아동

장애 아동은 존엄성 속에 충분히 품위 있는 생활을 향유하며, 최대한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특별보호, 교육 및 훈련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원문

아동이 교육, 훈련, 건강관리 지원, 재활 지원, 취업 준비 및 오락기회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4. 당사국은 국제협력의 정신에 입각하여, 그리고 당해 분야에서의 능력과 기술을 향상시키고 경험을 확대하기 위하여 재활, 교육 및 직업보도 방법에 관한 정보의 보급 및 이동을 포함하여, 예방의학 분야 및 장애아동에 대한 의학적·심리적·기능적 처치 분야에 있어서의 적절한 정보의 교환을 촉진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하여 특별히 고려되어야 한다.

(제24조)

1. 당사국은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하고,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당사국은 건강관리 지원의 이용에 관한 아동의 권리가 박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이 권리의 완전한 이행을 추구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a) 유아와 아동의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
 - (b) 기초건강관리의 발전에 중점을 두면서 모든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 지원과 건강관리의 제공을 보장하는 조치
 - (c) 환경오염의 위험과 손해를 감안하면서, 기초건강관리 체계 안에서 무엇보다도 쉽게 이용 가능한 기술의 적용과 충분한 영양식 및 깨끗한 음료수의 제공 등을 통하여 질병

쉬운 말 표현

보건 및 보건 서비스

아동은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보건 및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국가는 일차적·예방적 보건 서비스 제공, 국민보건교육, 유아사망률 감소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국가는 이와 관련하여 국제적 협력을 추구하고 필요한 보건 서비스의 이용권을 박탈당하는 아동이 없도록 힘써야 한다.

원문

- 과 영양실조를 퇴치하기 위한 조치
- (d) 산모를 위하여 출산 전후의 적절한 건강관리를 보장하는 조치
 - (e) 모든 사회구성원 특히 부모와 아동은 아동의 건강과 영양, 모유·수유의 이익, 위생 및 환경정화 그리고 사고예방에 관한 기초 지식의 활용에 있어서 정보를 제공받고 교육을 받으며 지원을 받을 것을 확보하는 조치
 - (f) 예방적 건강관리, 부모를 위한 지도 및 가족계획에 관한 교육과 편의를 발전시키는 조치
3. 당사국은 아동의 건강을 해치는 전통관습을 폐지하기 위하여 모든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당사국은 이 조에서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하여 특별히 고려되어야 한다.

(제25조)

당사국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관리, 보호 또는 치료의 목적으로 관계당국에 의하여 양육 지정 조치된 아동이, 제공되는 치료 및 양육 지정과 관련된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정기적으로 심사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제26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

쉬운 말 표현

양육지정의 정기적 검토

국가에 의해 양육지정, 보살핌, 보호 또는 치료의 목적으로 배치된 아동은 그러한 조치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게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사회보장

아동은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의 혜택을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다.

원문

며,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러한 혜택은 아동 및 아동에 대한 부양책임자의 자력과 주변 사정은 물론 아동에 의하여 직접 행하여지거나 또는 아동을 대신하여 행하여지는 혜택의 신청과 관련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적절한 경우에 부여되어야 한다.

(제27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2.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는 능력과 재산의 범위 안에서 아동 발달에 필요한 생활여건을 확보할 일차적 책임을 진다.
3. 당사국은 국내 여건과 재정의 범위 안에서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가 이 권리를 실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특히 영양, 의복 및 주거에 대하여 물질적 보조 및 지원계획을 제공하여야 한다.
4. 당사국은 국내외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책임 있는 자로부터 아동양육비의 회부를 확보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히 아동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책임 있는 자가 아동이 거주하는 국가와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 당사국은 국제협약의 가입이나 그러한 협약의 체결은 물론 다른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쉬운 말 표현

생활수준

모든 아동은 자신의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다. 부모는 아동에게 적합한 생활수준을 제공할 일차적 책임이 있으며, 국가는 이러한 책임이 이행되고 완성되도록 할 의무가 있다. 국가의 책임은 부모와 그 자녀에 대한 물질적 지원 제공을 포함할 수 있다.

원문

(제28조)

1. 당사국은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며, 점진적으로 그리고 기회 균등의 기초 위에서 이 권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a)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 (b) 일반교육 및 직업교육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중등교육의 발전을 장려하고, 이에 대한 모든 아동의 이용 및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며, 무료교육의 도입 및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c) 고등교육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입각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d) 교육 및 직업에 관한 정보와 지도를 모든 아동이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e) 학교에의 정기적 출석과 탈락율 감소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특히 전세계의 무지와 문맹의 퇴치에 이바지하고, 과학적·기술적 지식과 현대적 교육방법에의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하여, 교육에 관련되는 사항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하여 특별히 고려되어야 한다.

쉬운 말 표현

교육

아동은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국가는 초등교육이 의무적으로 무상 제공되고, 모든 아동이 다양한 유형의 중등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촉구하며, 모두가 역량에 따라 고등교육을 이용할 수 있게 할 의무가 있다. 학교규율은 아동의 권리 및 존엄성에 부합하여야 한다. 국가는 이 권리의 이행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원문

(제29조)

1. 당사국은 아동교육이 다음의 목표를 지향하여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 (a)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개발
 - (b)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국제연합 헌장에 규정된 원칙에 대한 존중의 진전
 - (c) 자신의 부모, 문화적 정체성, 언어 및 가치 그리고 현거주국과 출신국의 국가적 가치 및 이질문명에 대한 존중의 진전
 - (d) 아동이 인종적·민족적·종교적 집단 및 원주민 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성(性)의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유사회에서 책임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준비
 - (e)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의 진전
2. 이 조 또는 제28조의 어떠한 부분도 개인 및 단체가, 언제나 제1항에 규정된 원칙들을 준수하고 당해 교육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이 국가에 의하여 설정된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조건하에,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제30조)

인종적·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자나 원주민이 존재하는 국가에서 이러한 소수자에 속하거나 원주민인 아동은 자기 집단의 다른 구성원과 함께 고유 문화를 향유하고, 고유의 종교를 신앙하고 실천하며, 고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부인당하지 아니한다.

쉬운 말 표현

교육의 목적

교육은 아동의 인격, 재능,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교육은 아동이 자유로운 사회에서 활동적인 성인으로 살아가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하며, 자신의 부모, 문화적 정체성, 언어 및 가치관과 타인의 문화적 배경 및 가치관에 대한 존경심을 키워주어야 한다.

소수집단 또는 원주민 집단의 아동

소수 공동체와 원주민 사회의 아동은 자신의 문화를 향유하고 자신의 종교 및 언어를 실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원문

(제31조)

1.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 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문화적·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32조)

1. 당사국은 경제적 착취 및 위협하거나, 아동의 교육에 방해되거나, 아동의 건강이나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또는 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여하한 노동의 수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이 조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그 밖의 국제 문서의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a) 단일 또는 복수의 최저 고용연령의 규정
 - (b) 고용시간 및 조건에 관한 적절한 규정의 마련
 - (c) 이 조의 효과적인 실시를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처벌 또는 기타 제재수단의 규정

(제33조)

당사국은 관련 국제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적 사용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이러한 물질의 불법적 생산과 거래에 아

쉬운 말 표현

여가, 오락활동 및 문화적 활동

아동은 여가를 즐기고, 놀이 및 문화적·예술적 활동에 참가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아동노동

아동은 자신의 건강, 교육 또는 발달을 위협하는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국가는 최저고용연령을 정하고 근로조건을 규제하여야 한다.

약물남용

아동은 중독성·향정신성 약물의 사용으로부터, 그리고 그러한 약물의 생산 또는 거래에 연루되는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원문

동이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법적·행정적·사회적·교육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4조)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국내적·양국간·다국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a) 아동을 모든 위법한 성적 활동에 종사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 (b) 아동을 매음이나 기타 위법한 성적 활동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c) 아동을 외설스러운 공연 및 자료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제35조)

당사국은 모든 목적과 형태의 아동의 약취유인이나 매매 또는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국내적·양국간·다국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6조)

당사국은 아동복지의 어떠한 측면에 대하여라도 해로운 기타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쉬운 말 표현

성적 착취

국가는 매춘, 포르노 등 성적 착취 및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인신매매, 거래 및 유괴

국가는 아동의 인신매매, 거래 및 유괴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

기타 유형의 착취

아동은 본 협약의 제32조, 33조, 34조, 35조에서 다루고 있는 착취 외에도, 자신의 복지를 침해하는 기타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원문

(제37조)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 (a) 어떠한 아동도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사형 또는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은 18세 미만의 사람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 (b) 어떠한 아동도 위법적 또는 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아동의 체포, 억류 또는 구금은 법률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서 또한 적절한 최단기간 동안만 사용되어야 한다.
- (c)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인도주의와 인간 고유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에 입각하여 그리고 그들의 연령상의 필요를 고려하여 처우되어야 한다. 특히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성인으로부터 격리되지 아니하는 것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합치된다고 생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인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신과 방문을 통하여 자기 가족과의 접촉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 (d)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법률적 및 기타 적절한 구조에 신속하게 접근할 권리를 가짐은 물론 법원이나 기타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당국 앞에서 자신에 대한 자유 박탈의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러한 소송에 대하여 신속한 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쉬운 말 표현

고문과 자유 박탈

어떠한 아동도 고문, 가혹한 취급이나 처벌, 불법 체포 또는 자유 박탈을 당하지 않는다. 사형과, 석방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은 18세 미만인 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금지되어 있다.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여겨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성인으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 감금되어 있는 아동은 가족과의 접촉뿐만 아니라 법적 지원과 기타 지원을 받아야 한다.

원문

(제38조)

1. 당사국은 아동과 관련이 있는 무력분쟁에 있어서, 당사국에 적용 가능한 국제인도법의 규칙을 존중하고 동 존중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당사국은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가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의 징병을 삼가야 한다. 15세에 달하였으나 18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징병하는 경우, 당사국은 최연장자에게 우선순위를 두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무력분쟁에 있어서 민간인 보호를 위한 국제 인도법상의 의무에 따라서, 당사국은 무력분쟁의 영향을 받는 아동의 보호 및 배려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9조)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유기, 착취, 학대, 또는 고문이나 기타 모든 형태의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또는 무력분쟁으로 인하여 희생이 된 아동의 신체적·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0조)

1. 당사국은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받은 모든 아동에 대하여, 아동의 연령 그리고 아동의 사회복귀 및 사회에서의 건설적 역할 담당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점

쉬운 말 표현

무력분쟁

국가는 15세 미만의 아동이 적대행위에 직접적인 참여를 하지 않도록 모든 실현 가능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5세 미만의 아동은 군에 입대할 수 없다. 또한, 국가는, 관련 국제법에 기술된 바와 같이, 무력분쟁의 영향을 받는 아동이 보호되고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재활보호

국가는 무력분쟁, 고문, 아동유기, 학대 또는 착취의 피해아동이 회복 및 사회복귀를 위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아동법 행정

법을 위반한 아동은, 자신의 존엄성과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여주고,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고, 아동의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처우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아동은 자신의 변호를 위한 법적·기

원문

을 고려하고, 인권과 타인의 기본적 자유에 대한 아동의 존중심을 강화시키며, 존엄과 가치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촉진시키는 데 부합하도록 처우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국제문서의 관련 규정을 고려하며, 당사국은 특히 다음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a) 모든 아동은 행위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하여 형사피의자가 되거나 형사기소되거나 유죄로 인정받지 아니한다.

(b)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인 모든 아동은 최소한 다음 사항을 보장받는다.

i)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받는다.

ii) 피의사실을 신속하게 그리고 직접 또는 적절한 경우, 부모나 후견인을 통하여 통지 받으며, 변론의 준비 및 제출시 법률적 또는 기타 적절한 지원을 받는다.

iii)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평한 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의하여 법률적 또는 기타 적당한 지원하에 법률에 따른 공정한 심리를 받아 지체없이 사건이 판결되어야 하며,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는 경우, 특히 그의 연령이나 주변환경, 부모 또는 후견인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iv) 증언이나 유죄의 자백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을 신문하거나 또는 신문받도록 하며, 대등

쉬운 말 표현

타 지원뿐만 아니라 법 절차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는다. 사법 처리 및 시설 배치는 가능한 한 피하여야 한다.

원문

한 조건하에 자신을 위한 증인의 출석과 신문을 확보한다.

v) 형법 위반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판결 및 그에 따라 부과된 여하한 조치는 법률에 따라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상급당국이나 사법기관에 의하여 심사되어야 한다.

vi) 아동이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경우, 무료로 통역원의 지원을 받는다.

vii) 사법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아동의 생활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3. 당사국은 형사피의자,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받은 아동에게 특별히 적용될 수 있는 법률, 절차, 기관 및 기구의 설립을 촉진하도록 노력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a) 형법 위반 능력이 없다고 추정되는 최저 연령의 설정

(b) 적절하고 바람직스러운 경우, 인권과 법적 보장이 완전히 존중된다는 조건하에 이러한 아동을 사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루기 위한 조치

4. 아동이 그들의 복지에 적절하고 그들의 여건 및 범행에 비례하여 취급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호, 지도 및 감독명령, 상담, 보호관찰, 보호양육, 교육과 직업훈련계획 및 제도적 보호에 대한 그 밖의 대체방안 등 여러 가지 처분이 이용 가능하여야 한다.

쉬운 말 표현

원문

(제41조)

이 협약의 규정은 다음 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아동권리의 실현에 보다 공헌할 수 있는 어떠한 규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a) 당사국의 법
- (b) 당사국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는 국제법

제 2 부

(제42조)

당사국은 이 협약의 원칙과 규정을 적절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통하여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널리 알릴 의무를 진다.

(제43조)

1. 이 협약상의 의무이행을 달성함에 있어서 당사국이 이룩한 진전 상황을 심사하기 위하여 이하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아동권리위원회를 설립한다.
2. 위원회는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이 협약이 대상으로 하는 분야에서 능력이 인정된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형평에 맞는 지리적 배분과 주요 법체계를 고려하여 당사국의 국민 중에서 선출되며, 개인적 자격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당사국에 의하여 지명된 자의 명단 중에서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된다. 각 당사국은 자국민 중에서 1인을 지명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최초의 선거는 이 협약의 발효일부터

쉬운 말 표현

높은 기준의 존중

아동권과 관련하여 실행되고 있는 국내·국제법상의 기준이 본 규약의 기준보다 높을 경우, 보다 높은 기준이 항상 적용된다.

시행과 발효

제42~54조의 규정은 특히 다음을 예견하고 있다.

- i) 본 협약에 포함된 권리가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널리 알려지도록 할 국가의 의무
- ii)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아동권리위원회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는 본 협약의 비준국이 비준시점으로부터 2년 후, 그리고 이후에는 5년에 한 번씩 제출하는 보고서를 심의한다. 본 협약은 비준국의 수가 20개국이 되면 효력을 지니며, 그에 따라 위원회도 설치된다.
- iii) 비준국은 제출한 보고서가 일반 대중에게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 iv) 위원회는 아동의 권리와 관련된 특정 이슈에 대해 특별 연구의 실시를 제안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UN 총회뿐만 아니라 관련 비준국에 알릴 수 있다.
- v) '협약의 효과적 이행을 촉진하고 국제적 협력을 촉구' 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세계보건기구(WHO), UN 교육·과학·문화기구

원문

6월 이내에 실시되며, 그 이후는 매 2년마다 실시된다. 각 선거일의 최소 4월 이전에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당사국에 대하여 2월 이내에 후보자 지명을 제출하라는 서한을 발송하여야 한다. 사무총장은 지명한 당사국의 표시와 함께 알파벳 순으로 지명된 후보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이를 이 협약의 당사국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5. 선거는 국제연합 본부에서 사무총장에 의하여 소집된 당사국회의에서 실시된다. 이 회의는 당사국의 3분의 2를 의사정족수로 하고, 출석하고 투표한 당사국 대표의 최대다수표 및 절대다수표를 얻는 자가 위원으로 선출된다.
6. 위원회의 위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된다. 위원은 재지명된 경우에는 재선될 수 있다. 최초의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 중 5인의 임기는 2년 후에 종료된다. 이들 5인 위원의 명단은 최초선거 후 즉시 동 회의의 의장에 의하여 추첨으로 선정된다.
7. 위원회 위원이 사망, 사퇴 또는 본인이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위원회의 임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경우, 그 위원을 지명한 당사국은 위원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자국민 중에서 잔여 임기를 수행할 다른 전문가를 임명한다.
8. 위원회는 자체의 절차규정을 제정한다.
9. 위원회는 2년 임기의 임원을 선출한다.
10. 위원회의 회의는 통상 국제연합 본부나 위원회가 결정하는 그 밖의 편리한 장소에서 개최된다. 위원회는 통상 매년 회의를 한다. 위원회의 회의 기간은 필요한 경우 총회의 승인을 조건

쉬운 말 표현

(UNESCO)와 같은 UN의 전문가들과 UNICEF는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UN 및 UN 난민고등판무관실(UHCHR)과 협의의 관계에 있는 비정부기구들을 포함하여 '관련(competent)' 기관으로 인정되는 기타 모든 기관들과 함께, 위의 UN 전문가 및 UNICEF는 위원회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본 협약의 최적 이행 방안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

원문

으로 이 협약 당사국회의에 의하여 결정되고 재검토된다.

1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의 효과적인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과 편의를 제공한다.
12. 이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의 위원은 총회의 승인을 얻고 총회가 결정하는 기간과 조건에 따라 국제연합의 자원으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제44조)

1.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그들이 채택한 조치와 동 권리의 향유와 관련하여 이룩한 진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 (a) 관계 당사국에 대하여 이 협약이 발효한 후 2년 이내
 - (b) 그 후 5년마다
2. 이 조에 따라 제출되는 보고서는 이 협약상 의무의 이행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장애가 있을 경우 이를 적시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또한 관계국에서의 협약이행에 관한 포괄적인 이해를 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3. 위원회에 포괄적인 최초의 보고서를 제출한 당사국은, 제1항 (b)호에 의하여 제출하는 후속 보고서에 이미 제출된 기초적 정보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
4. 위원회는 당사국으로부터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이 있는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쉬운 말 표현

원문

5.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2년마다 경제사회이사회를 통하여 총회에 제출한다.
6. 당사국은 자국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자국 내 일반에게 널리 활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5조)

이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고 이 협약이 대상으로 하는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장려하기 위하여,

- (a) 전문기구, 국제연합아동기금 및 국제연합의 그 밖의 기관은 이 협약 중 그들의 권한 범위 안에 속하는 규정의 이행에 관한 논의에 대표를 파견할 권리를 가진다. 위원회는 전문기구, 국제연합 아동기금 및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구에 대하여 각 기구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분야에 있어서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전문기구, 국제연합 아동기금 및 국제연합의 그 밖의 기관에게 그들의 활동 범위에 속하는 분야에서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b) 위원회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적 자문이나 지원을 요청하거나 그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는 당사국의 모든 보고서를 그러한 요청이나 지적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면 동 의견이나 제안과 함께 전문기구, 국제연합아동기금 및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구에 전달하여야 한다.

쉬운 말 표현

원문

- (c) 위원회는 사무총장이 위원회를 대신하여 아동 권리와 관련이 있는 특정 문제를 조사하도록 요청할 것을 총회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다.
- (d) 위원회는 이 협약 제44조 및 제45조에 의하여 접수한 정보에 기초하여 제안과 일반적 권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안과 일반적 권고는 당사국의 논평이 있으면 그 논평과 함께 모든 관계 당사국에 전달되고 총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제 3 부

(제46조)

이 협약은 모든 국가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47조)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제48조)

이 협약은 모든 국가에 의한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제49조)

1. 이 협약은 2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는 날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2. 2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이후에

쉬운 말 표현

원문

이 협약을 비준하거나 가입하는 각 국가에 대하여, 이 협약은 그 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 기탁 후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제50조)

1. 모든 당사국은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동 제출에 의하여 사무총장은 당사국에게 동 제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부치기 위한 당사국회의 개최에 대한 찬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과 함께 개정안을 당사국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보일부터 4월 이내에 당사국 중 최소 3분의 1이 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국제연합 주관하에 동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동 회의에 출석하고 표결한 당사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그 승인을 위하여 국제연합 총회에 제출된다.
2. 제1항에 따라서 채택된 개정안은 국제연합 총회에 의하여 승인되고, 당사국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가 수락하는 때에 발효한다.
3. 개정안은 발효한 때에 이를 수락한 당사국을 구속하며, 그 밖의 당사국은 계속하여 이 협약의 규정 및 이미 수락한 그 이전의 모든 개정에 구속된다.

(제51조)

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비준 또는 가입시 각국이 행한 유보문을 접수하고 모든 국가에게 이를 배포하여야 한다.
2. 이 협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유보

쉬운 말 표현

원문

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유보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발송된 통고를 통하여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으며, 사무총장은 이를 모든 국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한 통고는 사무총장에게 접수된 날부터 발효한다.

(제52조)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고를 통하여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사무총장이 통고를 접수한 날부터 1년 후에 발효한다.

(제53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의 수탁자로 지명된다.

(제54조)

아랍어 · 중국어 · 영어 · 불어 · 러시아어 및 서반
 아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인 이 협약의 원본은 국제
 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쉬운 말 표현



부록 3

국제인권법 용어의 간략한 소개

여기에 실린 내용은 『인권: 유엔 직원을 위한 기본 소책자 *Human Rights: A Basic Handbook for UN Staff*, (2001)의 2~5쪽에서 발췌한 것이다. 국제인권법의 기본 개념이 되는 인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유엔의 정의와 해석을 살펴볼 수 있으며, 국제인권법을 구성하는 조약, 관습, 선언, 지침, 결의 등의 차이를 알아볼 수 있다. 또한 조약 당사국이 되기 위해 필요한 절차인 비준, 가입, 계승의 개념과 절차를 설명한다. 국제조약이 규약, 헌장, 의정서, 협약, 협정, 합의서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며 법적 구속력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며, 국제법의 일반적 규범들이 선언, 선포, 기준규칙, 지침, 권고, 원칙 등의 다양한 형태를 띤다는 점도 설명하고 있다.

인권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인권은 인간에 내재된 권리로 이해되고 있다. 인권의 개념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견해, 출신 국가나 사회, 재산, 출생관련 또는 기타 지위에 대한 구분 없이 자신의 인권을 누릴 수 있다.

인권은 인권법에 의해 법적으로 보장되는데, 인권법은 기본적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부터 개인과 집단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인권법은 조약, 국제관습법, 원칙 및 기타 법 형태를 띤다. 인권법은 국가에 대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며, 또한 어떤 국제적 활동에 대해서는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법이 인권의 존재를 확립하는 것은 아니다. 인권은 모든 인간에게 인간이라는 이유로 인해 주어지는 타고난 혜택이다. 대체로 조약과 기타 법은 정부의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또는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개인과 집단의 인권 향유를 방해하는 행위로부터 이들의 권리를 공식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다음은 인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일부를 보여주고 있다.

- 인권은 모든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한다.
- 인권은 보편적인 것으로, 이는 인권이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평등하게 적용됨을 의미한다.
- 인권은 양도 불가능한 것으로,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인권을 남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단, 특정 상황에서는 인권이 제한될 수 있다(예: 어떤 사람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그 사람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제한될 수 있다).
- 인권은 불가분하며, 상호 연관되어 있고, 상호의존적이다. 일부 인권은 존중하고 다른 인권은 존중하지 않는 것은 충분치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하나

의 인권이 위반되면 기타 몇몇 인권에 대한 존중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모든 인권은 동등한 중요성을 지니며 모든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국제인권법

내재된 인권은 국제인권법을 통해 공식적으로 표현된다. 1945년 이후로 일련의 국제인권조약과 기타 문서가 등장하면서 내재된 인권은 법적 외형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유엔의 창설로 인해, 국제인권법 문서의 개발과 채택을 위한 이상적인 포럼이 마련되었다. 기타 문서는 지역의 특정 인권 관심사를 반영하여 지역 차원에서 채택되어 왔다. 대부분의 국가들도 공식적으로 기본 인권을 보호하는 헌법과 기타 법을 채택하여 왔다. 국제인권법의 특정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여 국내 법에 도입한 국가들도 적지 않다.

국제인권법은 주로 선언, 지침, 원칙뿐만 아니라 조약 및 관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약

조약이란 특정 규정에 의해 구속력을 지니는 국가간의 합의를 가리킨다. 국제조약은 규약covenant, 헌장charter, 의정서protocol, 협약convention, 협정accord, 합의서agreement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불린다. 조약은 그 조약의 조항에 의해 구속되는 것에 동의한 국가들, 다시 말해 조약 당사국들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지닌다.

국가는 비준(ratification), 가입(accession) 또는 계승(succession)에 의해 조약 당사국이 될 수 있다. '비준'이란 한 국가가 어떤 조약에 구속되는 것에 대해 공식적인 동의 표시다. (조약의 서명이 가능했던 기간 중에) 이미 조약에 서명한 국가만이 그 조약을 비준할 수 있다. 비준을 위해서는 두 가지 절차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국내적으로는, 적합한 헌법기관(주로 국가원수나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국제적으로는, 해당 조약의 관련 조항에 의거하여, 비준 문서가 공식적으로 수탁처(depositary)에 제출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수탁처는 국가 또는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로 한다.

'가입'은 이전에 해당 문서에 서명하지 않은 국가가 그 문서에 구속될 것을 동의하는 것이다. 국가는 조약이 효력을 발휘하기 전과 발휘한 후에 그 조약을 비준한다. 가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계승'에 의해서도 조약 당사국이 될 수 있다. 계승은 조약의 특정 규정에 의거하여 또는 선언에 의해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조약은 자기 집행적(self-executing)이지 않다. 일부 국가에서는 조약이 국내법에 우선하는 한편, 또 다른 일부 국가에서는 조약에 헌법적 지위가 부여되어 있기도 하지만, 조약의 특정 조항들만이 국내법으로 흡수된 경우도 있다.

국가는 조약을 비준함에 있어, 그 조약에 유보조항을 둬으로써 조약의 대부분 규정에 대해서는 구속될 것에 동의하지만 일부 특정 규정에 대해서는 구속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유보조항이 해당 조약의 목적과 취지를 무효로 할 수는 없다. 또한, 어떤 국가가 조약 당사국이 아니라 하더라도, 또는 조약에 유보조항을 두었다 하더라도, 그 조약의 일부 조항이 관습국제법의 일부가 되었거나 고문 금지와 같이 국제법의 절대적인 규정에 해당된다면, 그 국가는 그 조항에 의해 구속된다.

관습

관습국제법customary international law(또는 간단하게 ‘관습custom’이라고도 함)은 법적 의무감에 따라 국가들이 준수하는 일반적이고 일관된 관행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다. 이에 따라, 예를 들어 세계인권선언이 그 자체로 구속력을 지닌 조약은 아니지만, 일부 조항들은 관습국제법의 성격을 띠고 있다.

유엔 기구에 의해 채택된 선언, 결의 등

국제법의 일반적 규범들—대부분의 국가들이 동의할 원칙과 관행—은 선언declaration, 선포proclamation, 기준규칙standard rules, 지침guidelines, 권고recommendations, 원칙principles의 형태를 띤다. 이러한 규범들은 국가에 대해 어떠한 법적 구속력을 지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광범위한 합의를 확보함으로써, 국가들의 국제관계 윤리 관행에 있어 강력하고 부정할 수 없는 도덕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러한 문서의 가치는 더 많은 국가가 인정하고 수용할수록 더욱 커지며,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원칙들의 선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UN 기구

UN체제내 기관들은 인권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와 기타 형태의 지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선별된 UN 기구들의 본부 주소는 다음과 같다. 본부를 통해 각 기구가 해당 국가에 설치한 지부 또는 그에 해당하는 기능을 하는 국내 기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UN인권고등판무관실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UN 인권교육 10개년(United Nations Decade for Human Rights Education, 1995~2004)
Palais des Nations
1211 Geneva 10
SWITZERLAND
Tel: +41 22 917 92 69
Fax: +41 22 917 90 03
E-mail: hredatabase@ohchr.org
Web site: <http://www.ohchr.org>

● UN교육·과학·문화기구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교육부문(Education Sector)

7, place de Fontenoy
75352 Paris 07 SP
FRANCE
Tel: +33 1 45 68 10 00
Fax: +33 1 45 67 16 90
E-mail: webmaster@unesco.org
Web site: <http://www.unesco.org>

● UNESCO의 국제교육국

UNESCO International Bureau of Education

15, route des Morillons
1218 Grand-Saconnex
Geneva
SWITZERLAND
Tel: +41 22 917 78 00
Fax: +41 22 917 78 01
E-mail: doc.centre@ibe.unesco.org
Web site: <http://www.ibe.unesco.org>

● UN아동기금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

UNICEF 하우스(UNICEF House)
3, United Nations Plaza
New York, N.Y. 10017
USA
Tel: +1 212 326 7000
Fax: +1 212 887 7465 / 887 7454

E-mail: info@unicef.org

Web site: <http://www.unicef.org>

● UNICEF 이노센티 연구소

UNICEF Innocenti Research Centre

Piazza SS. Annunziata 12

50122 Florence

ITALY

Tel: +39 055 20 33 0

Fax: +39 055 24 48 17

E-mail: florence@unicef.org

Web site: <http://www.unicef-icdc.org>

● UN 대외홍보부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DPI)**

UN 사이버 스쿨버스/글로벌 수업 및 학습 프로젝트 (United Nations Cyberschoolbus / Global Teaching and Learning Project)

United Nations Headquarters

New York, NY 10017

USA

Tel: +1 212 963 8589

Fax: +1 212 963 0071

E-mail: cyberschoolbus@un.org

Web site:

<http://www.un.org/cyberschoolbus>

● UN개발계획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1, United Nations Plaza

New York, N.Y. 10017

USA

Tel: +1 212 906 5558

Fax: +1 212 906 5364

E-mail: enquiries@undp.org

Web site: <http://www.undp.org>

● UN 식량농업기구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

Viale delle Terme di Caracalla

00100 Rome

ITALY

Tel: +39 06 5705 1

Fax +39 06 5705 3152

E-mail: FAO-HQ@fao.org

Web site: <http://www.fao.org>

● 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4, route des Morillons

1211 Geneva 22

SWITZERLAND

Tel: +41 22 799 61 11

Fax: +41 22 798 86 85

E-mail: ilo@ilo.org

Web site: <http://www.ilo.org>

● **UN환경계획**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

United Nations Avenue, Gigiri

P.O. Box 30552

Nairobi

KENYA

Tel: +254 2 621234

Fax: +254 2 624489/90

E-mail: eisinfo@unep.org

Web site: <http://www.unep.org>

● **UN난민고등판무관실**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P.O. Box 2500

1211 Genève Dépôt

SWITZERLAND

Tel.: +41 22 739 81 11

Fax +41 22 739 73 77

E-mail: webmaster@unhcr.ch

Web site: <http://www.unhcr.ch>

● **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20, Avenue Appia

1211 Geneva 27

SWITZERLAND

Tel: +41 22 791 21 11

Fax +41 22 791 31 11

E-mail: info@who.int

Web site: <http://www.who.int>

기타 기관

다음의 기관들은 초·중·고등학교 교육전문가들에게 인권교육과 관련된 정보, 회의시설, 훈련 및 자료를 제공한다. 각 기관의 활동 및 자원에 대한 정확한 최근 정보는, 해당 기관에 연락하거나 인터넷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받을 수 있다.

더 많은 관련기관의 목록은 『The Human Rights Education Resourcebook』, second edition, Human Rights Education Associates (HREA), 2000을 참고하라. <<http://www.hrea.org>>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국제 기관

이 기관들의 대부분은 여러 국가에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개발하는 지부나 협력기구가 있다. 해당 국가지부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은 주소를 통해 얻을 수 있다.

● 국제 엠네스티 인권교육팀 국제사무국

Amnesty International
Human Rights Education Team
International Secretariat
 1 Easton Street

London WC1X 0DW
 UNITED KINGDOM
 Tel: +44 207 4135513
 Fax: +44 207 9561157
 E-mail: hreteam@amnesty.org
 Web site: <http://www.amnesty.org>
 ▶ 인권교육을 위한 방대한 프로그램과 자원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여러 언어의 참고자료 목록은 주석과 함께 정기적으로 수정·보완되어 아래의 인터넷 주소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http://www.amnesty.org>>
 (search under "Library" - "View by theme" - "Human rights education")

● 국제반노예운동

Anti-Slavery International

Thomas Clarkson House,
 The Stableyard, Broomgrove Road
 London SW9 9TL
 UNITED KINGDOM
 Tel: +44 20 7501 8920
 Fax: +44 20 7738 4110
 E-mail: info@antislavery.org
 Web site: <http://www.antislavery.org>
 ▶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발간하고 있으며 학교와 청소년 센터에서 인권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Breaking the Silence(침묵깨기)>는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이루어지는 노예매매에 관한 교육자원을 제공하는 웹사이트다.

● 평화정착을 위한/평화의 도구로서의
국제학교 연합회

Association mondiale pour l'école
instrument de paix/World
Association for the School as an
Instrument of Peace (EIP)

5, rue de Simplon

1207 Geneva

SWITZERLAND

Tel: +41 22 735 2422

Fax: +41 22 735 0653

E-mail: cifiedhop@mail-box.ch

Web site: <http://www.eip-cifiedhop.org>

➔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발간하며 불어, 영어, 스페인어권 교사들을 위한 하계코스 등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캐나다 인권재단

Canadian Human Rights Foundation

1425 René-Lévesque Blvd. West,

Suite 407

Montréal, Québec, Canada H3G 1T7

CANADA

Tel: +1 514 9540382

Fax: +1 514 9540659

E-mail: chrhf@chrhf.ca

Web site: <http://www.chrf.ca>

➔ 교과과정 자료를 제공하며 아프리카, 아시아, 중부 및 동부유럽에서 지역차원의 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교육전문가와 활동가들을 위한 하계 국제인권훈련프로그램(IHRTIP)를 실시한다.

● 문화적 생존

Cultural Survival

215 Prospect Street

Cambridge, MA 02139

USA

Tel: +1 617 441 5400

Fax: +1 617 441 5417

E-mail: csinc@cs.org

Web site: <http://www.cs.org>

➔ 전세계적인 원주민의 권리에 관한 자료와 훈련을 제공한다.

● 교육 인터내셔널

Education International

5 bd du Roi Albert II

1210 Brussels

BELGIUM

Tel: +32 2 224 0611

Fax: +32 2 224 0606

E-mail: headoffice@ei-ie.org

Web site: <http://www.ei-ie.org>

➔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 부분에서 일하고 있는 교육관계자들의 전 세계적인 노조단체

- **인권교육연합**

**Human Rights Education Associates
(HREA)**

HREA - USA Office

P.O. Box 382396

Cambridge, MA 02238, USA

Tel: +1 617 6250278

Fax: +1 617 2490278

E-mail: info@hrea.org

Web site: <http://www.hrea.org>

➔ 교과협의, 자료개발, 프로그램 평가, 온라인 '인권교육자원센터', 인권교육전문가를 위한 국제명부 등을 포함하여 방대한 자원을 교육전문가에게 제공한다.

- **국제적십자위원회**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CRC)**

19, avenue de la Paix

1202 Geneva, SWITZERLAND

Tel: +41 22 734 6001

Fax: +41 22 733 2057

E-mail: webmaster.gva@icrc.org

Web site: <http://www.icrc.org>

➔ 교육, 훈련, 대중홍보를 통해 무력분쟁에 관한 국제법과 인권법을 보급하는 역할을 한다.

- **인권에 관한 국제 헬싱키 연합**

**International Helsinki Federation for
Human Rights (IHFR)**

Wickenburgg. 14/7

1080 Vienna, AUSTRIA

Tel: +43 1 408 8822

Fax: +43 1 408 882250

E-mail: office@ihf-hr.org

Web site: <http://www.ihf-hr.org>

➔ 주로 모니터링과 보고의 역할을 맡고 있지만, 여러 국가의 헬싱키 위원회에서는 인권교육 자료 및 훈련도 제공하고 있다.

- **세계아동구호연맹**

**International Save the Children
Alliance**

275-281 King Street

London W6 9LZ

UNITED KINGDOM

Tel: +44 20 8748 2554

Fax: +44 20 8237 8000

E-mail: Infor@save-childrenalliance.org

Web site: <http://www.savethechildren.net>

➔ 아동의 인권을 옹호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 옥스팜 국제본부

OXFAM International

International Secretariat
Suite 20, 266 Banbury Road
Oxford, OX2 7DL
UNITED KINGDOM

Tel: +44 1865 31 3939
Fax: +44 1865 31 3770

E-mail:
information@oxfaminternational.org

Web site:
<http://www.oxfaminternational.org>

➔ 교육의 초점을 개발권, 성적 이슈, 사회·경제적 권리에 맞추고 있다.

● 국제평화아동연맹

Peace Child International

The White House
Buntingford, Herts. SG9 9AH
UNITED KINGDOM

Tel: +44 176 327 4459
Fax: +44 176 327 4460

E-mail: webmaster@peacechild.org
Web site: <http://www.peacechild.org>

➔ 100개국 이상의 고등학생 단체들로 구성된 네트워크로서, 성인 전문가들과의 협조체제를 통해 청소년들이 운영하고 있는 단체

● 인권교육운동

People's Movement for Human Rights Education (PDHRE)

526 W. 111th Street
New York, NY 10025
USA

Tel: +1 212 749 3156
Fax: +1 212 666 6325

E-mail: pdhre@igc.apc.org

Web site: <http://www.pdhre.org>

➔ 온라인 자료를 갖춘, 연구 및 교육자료 개발을 위한 자료센터

● 국제연합협회 세계연맹

World Federation of United Nations Associations (WFUNA/FMANU)

c/o Palais des Nations
1211 Geneva 10
SWITZERLAND

Tel: +44 22 917 3213/3239
Fax: +44 22 917 0185

E-mail: wfuna@unog.ch

Web site: <http://www.wfuna.org>

➔ 여러 UN 연합체들이 공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권에 관한 훈련 프로그램과 자료를 개발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가 모의 UN 프로그램이다.

● 세계 스카우트 연맹

**World Organization of the Scout
Movement (World Scout Bureau)**

P.O. Box 241

1211 Geneva 4

SWITZERLAND

Tel: +41 22 705 1010

Fax: +41 22 705 1020

E-mail:

worldbureau@world.scout.org

Web site: <http://www.scout.org>

➔ 개발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교육프로그램과 자료를 갖추고 있다.

지역별 기구

아프리카와 중동지방

● 아프리카 민주주의 인권 연구센터

**African Centre for Democracy and
Human Rights Studies (ACDHRS)**

Zoe Tembo Building,

Kerr Sereign K. S. M. D.

P. O. Box: 2728

Serrekunda, GAMBIA

Tel: +220 462340 / 462341/ 462342

Fax: +220 462338 / 462339

E-mail: acdhrs@acdhrs.org

info@acdhrs.org

Web site: <http://www.acdhrs.org>

➔ 인권 분야의 훈련, 정보 제공 및 문서화 작업을 주요 활동으로 하고 있으며, 학교 인권교육 자료를 제작한다.

● 카이로 인권연구소

**Cairo Institute for Human Rights
Studies (CIHRS)**

P.O. Box 117

Maglis el-Shaab

11516 Cairo, EGYPT

Tel: +202 7946065

Fax: +202 7921913

E-mail: cihrs@soficom.com.eg

Web site: <http://www.cihrs.org>

➔ 학생과 교육전문가를 위한 인권훈련과 발간물을 제공한다.

● 사회·법학 연구센터

Centre for Socio-Legal Studies (CSLS)

University of Natal

Durban 4014

SOUTH AFRICA

Tel: +27 31 260 1291

Fax: +27 31 260 1540

E-mail: degrandprei@nu.ac.za

Web site: <http://www.csls.org.za>

➔ 'Street Law' 와 'Democracy for All' 프로그램을 조정, 통합하고 있으며, 교사 연수 및 교과자료를 제공한다.

● 아랍인권연구소

Institut Arabe des Droits de l'Homme (IADH) / Arab Institute for Human Rights (AIHR)

14 Rue Al-Jahidh, Menzahl

1004 Tunis

TUNISIA

Tel: +216 1 767 003/ 767 889

Fax: +216 1 750 911

E-mail : aihr.infocenter@gnet.tn

Web site: <http://www.aihr.org.tn>

➔ 교사, 학생 및 아동을 위한 훈련프로그램과 자료

개발

● 남아프리카 민주주의 연구소

Institute for Democracy in South Africa (IDASA)

357 Visagie Street (corner Prinsloo)

PO Box 56950, Arcadia Pretoria 0007

SOUTH AFRICA

Tel: +27 12 392 0500

Fax: +27 12 320 2414/5

E-mail: marie@idasa.org.za

Web site: <http://www.idasa.org.za>

➔ 자료 개발 및 중등학교 교사 연수 실시

● 아프리카 인권연합

Union Interfricaine des Droits de l'Homme (UIDH)

01 BP 1346 - Ouagadougou

BURKINA FASO

Tel: +226 31 61 45

Fax: +226 31 61 44

E-mail: uidh@fasonet.bf

Web site:

<http://www.hri.ca/partners/uidh>

➔ 지역차원에서 인권교육 프로그램 실시

아시아 · 태평양 지역

더 많은 기관의 목록은 『A Directory of Asian and the Pacific Organizations Related to Human Rights Education Work』, third edition, Asian Regional Resource Center for Human Rights Education (ARRC), January 2003을 참조할 것. (www.arrrc-hre.c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음.

● 인권교육을 위한 아시아 지역자원센터 Asian Regional Resource Center for Human Rights Education (ARRC)

2738 Ladprao 128/3
Klongchan, Bangkok
Bangkok 10240, THAILAND
Tel: +662 731 0829/ 377 5641
Fax: +662 731 0829
E-mail: arrc@ksc.th.com
Web site: www.arrrc-hre.com

➔ 아시아 전역에 공식 또는 비공식 인권교육을 위한 자료 및 훈련을 제공하는 종합센터

● 아시아태평양 인권정보센터 Asia-Pacific Human Rights Information Center (HURIGHTS OSAKA)

1-2-1-1500, Benten, Minato-ku
Osaka-shi, Osaka 552-0007
JAPAN
Tel: +81 6 6577 3578
Fax: +81 6 6577 3583

E-mail: webmail@hurights.or.jp

Web site: <http://www.hurights.or.jp>

➔ 공식 및 비공식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갖춘 자료 및 문헌 센터

● 인권통신학교 Human Rights Correspondence School

c/o Asian Human Rights Commission
Unit D, 7/F., Mongkok Commercial
Center,
16-16B Argyle Street, Kowloon
Hong Kong
CHINA
Tel: +852 2698 6339
Fax: +852 2698 6367
E-mail: hrschool@ahrchk.org
support@hrschoool.org

Web site: <http://www.hrschool.org>
supahrchk.net

➔ 아시아 국가들의 인권교육 모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 자료 및 문헌을 갖춘 웹사이트

● 필리핀 사범대학—성·평화 인권교육 Philippines Normal University— Gender, Peace and Human Rights Education

Taft Avenue
1001 Manila
PHILIPPINES

Tel: +63 2 5244032

Fax: +63 2 5270372

E-mail: yeban@compass.com.ph

➔ 교사들에게 인권교육을 위한 교육학과 교과개발 연수를 실시한다.

● **남아시아 인권문헌센터**

South Asian Human Rights

Documentation Center

B-6/6, Safdarjang Enclave Extension

New Delhi 110029

INDIA

Tel: +91 11 619 1120/ 619 2717

Fax : +91 11 619 1120

E-mail: hrdc_online@hotmail.com

Web site:

<http://hri.ca/partners/sahrdc>

➔ 학교 인권교육을 위한 교과목 개발

미주 지역

● **인권센터**

Human Rights Center

University of Minnesota

Mondale Hall, N-120

229-19th Avenue South

Minneapolis, MN 55455

USA

Tel: +1 612 626 0041

Fax: +1 612 625 2011

E-mail: humanrts@umn.edu

Web sites: <http://www.hrusa.org>

➔ 교육전문가들에게 연수, 발간물, 직접 또는 온라인을 통한 정보 제공 등의 총체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권교육시리즈를 발간하고, 하계 교사 연수코스를 실시한다.

● **미주 인권 기구**

**Instituto Interamericano de
Derechos Humanos (IIDH)**

Apartado 10081-1000

San José

COSTA RICA

Tel: +506 234 0404

Fax: +506 234 0955

E-mail: instituto@iidh.ed.cr

Web site: <http://www.iidh.ed.cr>

➔ 중고등학교 교사들을 위한 자료를 개발하고 연수를 실시하는 종합센터

● **페루 인권 및 평화교육 기구**

**Instituto Peruano de Educación en
Derechos Humanos y la Paz
(IPEDEHP)**

Los Gavilanes 195 San Isidro

Lima 11

PERU

Tel: +51 1 2215713/ 2215668/ 4414602
 Fax: +51 1 4606759
 E-mail: ipedehp@dhperu.org
 Web site: <http://www.human-rights.net/IPEDEHP>

➔ 매우 다양한 학교관련 자료를 발간하며 교사 연수를 실시한다.

● **미주지역 교육전문가 네트워크**

**Network of Educatorson
the Americas (NECA)**

P.O. Box 73038
 Washington, DC 20056
 USA

Tel: +1 202 588 7204
 (toll free: +1 800 763 9131)

Fax: +1 202 238 0109
 E-mail: necadc@aol.com

Web site:
<http://www.teachingforchange.org>

➔ 교사 연수를 실시하고 사회정의의 문제에 관한 영어와 스페인어로 작성된 방대한 자료 제공

● **평화 및 인권교육을 위한 남미 네트워크**

**Red Latinoamericana de Educación
para la Paz y los Derechos Humanos**

c/o Red de Apoyo por la Justicia
 y la Paz
 Parque Central, Edificio Caroata

Nivel Oficina 2, Oficina n. 220
 Caracas 1015-A
 VENEZUELA
 Tel/Fax: +58 212 5741949/ 5748005
 E-mail: redapoyo@cantv.net

➔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의 30개 이상 단체가 모인 연합체

● **평화와 정의를 위한 회의**

Servicio Paz y Justicia (SERPAJ)

Joaquín Requena 1642

CP 11 200

Montevideo

URUGUAY

Tel: +598 2 408 5301

Fax: +598 2 408 5701

E-mail: serpajuy@serpaj.org.uy

Web site: <http://www.serpaj.org.uy>

➔ 공교육을 위한 교사연수 및 자료 제공

● **남부 빈곤법센터**

Southern Poverty Law Centre

400 Washington Avenue

Montgomery, Alabama 36104

USA

Tel: +1 334 956 8200

Fax: +1 334 956 8488

Web site: <http://www.splcenter.org>

➔ 증오, 차별 및 편협을 근절하기 위하여 교사, 학

부모, 학생들에게 온라인으로 교육자료 제공

● 법률구조공단

Street Law, Inc.

1600 K Street NW., Suite 602

Washington, DC 20006

USA

Tel: +1 202 293 0088

Fax: +1 202 293 0089

E-mail: clearinghouse@streetlaw.org

Web site: <http://www.streetlaw.org>

➔ 인권, 민주주의, 갈등 해결에 관해 지역사회를 교육함에 있어 활용될 수 있는 교사 및 학생용 교육자료 및 훈련과정 제공

유럽

● 시민의식 센터

**Center for Citizenship Education/
Centrum Edukacji Obywatelskiej**

Ul. Willowa 9/3

00-790 Warszawa

POLAND

Tel/Fax: +48 22 646 2025

E-mail: ceo@ceo.org.pl

Web site: <http://www.ceo.org.pl>

➔ 중·고등학교 학생, 교사 및 행정관리자용 교육자료 및 훈련 제공

● 교육의 시민의식 연구센터

**Centre for Citizenship Studies in
Education**

School of Education

University of Leicester

21 University Road

Leicester, LE1 7RF

UNITED KINGDOM

Tel: +44 116 252 3681

Fax: +44 116 252 3653

E-mail: ccse@le.ac.uk

Web site:

<http://www.le.ac.uk/education/centres/citizenship>

➔ 학교와의 제휴를 통해 학교에서의 시민의식, 인권, 민주주의 수업을 위한 연구 및 교육을 촉진하고 있으며, 원거리 인권교육 학습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 글로벌 교육 센터

Centre for Global Education

York St. John College

Lord Mayor's Walk

York YO31 7EX

UNITED KINGDOM

Tel: +44 1904 716839/716825

Fax: +44 1904 612512

E-mail: global.ed@dial.pipex.com

Web site: <http://www.yorksjs.ac.uk>

(search under "About us" ? "Centres")

➔ 매년 실시하는 하계학교를 포함한 연수를 실시하고, 관련자료 제공 및 인권교육소식지를 발간한다.

● 시민의식재단

Citizenship Foundation

Ferroners House

Shaftesbury Place, Aldersgate Street

London EC2Y 8AA

UNITED KINGDOM

Tel: +44 020 7367 0500

Fax: +44 020 7367 0501

E-mail: info@citfou.org.uk

Web site: <http://www.citfou.org.uk/>

➔ 영국과 중·동부유럽에서 교과목 및 관련자료 개발, 교사 연수 실시

● 유럽이사회

Council of Europe

67075 Strasbourg Cedex

FRANCE

Tel: +33 388 412 033

Fax: +33 388 412 745

E-mail: infopoint@coe.int

Web site: <http://www.coe.int>

➔ 특히 관용과 유럽인권협약과 관련하여 불어와 영어로 된 방대한 인권교육 자료를 제공한다.

● 남북센터—지구적 상호의존과 단결을 위한 유럽센터

North-South Centre—European Centre for Global Interdependence and Solidarity

Avenida da Libertade 229/4o

1250-142 Lisbon

PORTUGAL

Tel: +351 21 358 40 58

Fax: +351 21 352 49 66/ 21 358 40 37

E-mail: nscinfo@coe.int

Web site: <http://www.nscentre.org>

➔ 관련자료 개발 및 월간 소식지 발간

UN 자원

『All human beings...Manual for human rights education』

(모든 인류...인권교육매뉴얼)

(UNESCO, Education Sector, 1998)

언어: 알바니아어, 아랍어, 영어, 불어
 온라인 버전 (아랍어, 영어, 불어):

<http://upo.unesco.org/booksonline.aspx>에서 소정의 수수료 지급후 이용 가능

➡ 초·중·고등학교의 학생과 교사들이 인권의 보편적 요소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제작한 실용 안내서.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바와 같이 더 많은 자유의 향유 속에 사회적 발전과 생활수준 향상을 달성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책은 매우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기보다는, 교육전문가와 학생들이 자신의 문화적 상황에 맞게 개발·적용할 수 있는 교육재료를 제공하고 있다.

『Education for Development: A Teacher's Resource for Global Learning』

(개발을 위한 교육: 지구적 학습을 위한 수업자료)

by Susan Fountain (UNICEF, Education for Development Section, 1995)

언어: 영어, 불어
 온라인 페이지:

<http://www.unicef.org/pubsgen/edudevelop/index.html>

➡ 청소년 및 아동이 지구적 이슈와 지역적 관심사

간의 연계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학습을 통해 배운 내용을 실생활과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모든 학과목 및 단계의 교사들에게, 인권문제가 기존의 학과목에 통합되어질 수 있는 실용적인 교실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Human Rights: Questions and Answers』

(인권: 질문과 답변) by Leah Levin

(UNESCO, Education Sector, 1996)

언어: 알바니아어, 아랍어, 아르메니아어, 벨라루스어, 덴마크어, 영어, 핀란드어, 불어, 독어, 그리스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포르투갈어, 스웨덴어, 슬로바키아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온라인 버전 (영어, 불어, 스페인어):

<http://upo.unesco.org/booksonline.aspx>에서 소정의 수수료 지급후 이용 가능

➡ 주요 인권기구 및 운용 메커니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한 국제기관들의 활동에 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한다. 1부에서는 국제인권법의 범위와 의미에 대해 기술하며, 특히 인권보호절차의 개발과 인권교육의 중요성에 초점을 둔다. 2부에서는 세계인권선언의 30개 조항 각각의 의미를 설명한다.

『It's Only Right!—A Practical Guide to Learning About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학습을 위한 실용 안내서)

by Susan Fountain (UNICEF, Education for Development Section, 1993)

언어: 영어, 불어

온라인 버전 (영어):

http://www.unicef.org/teachers/protection/only_right.htm

➔ 개인 및 지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 세계의 어린이들은 권리의 개념 및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리에 대해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권리에 관하여서도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이 안내서를 가지고 아동권리 협약에 관해 학습을 시작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Primary School Kit on the United Nations

(초등학교 UN 키트) /

Intermediate School Kit on the United

Nations (중학교 UN 키트)/

Secondary School Kit on the United

Nations (고등학교 UN 키트)

(United Nations, 1995)

언어: 영어, 불어, 스페인어, 태국어.

온라인 버전 (영어):

<http://www0.un.org/cyberschoolbus/bookstor/kits/english>

온라인 버전 (불어):

<http://www0.un.org/cyberschoolbus/bookstor/kits/french>

온라인 버전 (스페인어):

<http://www0.un.org/cyberschoolbus/bookstor/kits/spanish>

➔ UN 창설 50주년을 기념하여 발간된 키트로써, 모든 교과목의 교사와 학생들에게 광범위하지만 연결되어 있는 세계와 그들 자신을 둘러싼 생활을 연결함으로써, 지구적 이슈를 고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유용한 교과 보충 패키지는 오염에서부터 평화유지, 탈식민지화에서부터 개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역사와 사회학은 말할 것도 없이 과학과 수학 교과도 자신의 교과목에 잘 들어맞는 단원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각 단원별로, 해당 주제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UN이 관여한 세부적 사례를 기술하고 있는 UN factfile, 비판적이며 창조적인 사고, 참여 및 자신의 태도와 자세의 성찰을 촉진하는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키트는 정보제공 자료로도 유용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국제기구가 모든 국가의 시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Tolerance: the threshold of peace』

(관용: 평화의 조건)

by Betty A. Reardon

(UNESCO, Education Sector, 1997)

언어: 알바니아어, 영어, 불어, 스페인어

온라인 버전 (영어):

http://www.unesco.org/education/pdf/34_57.pdf

온라인 버전 (불어):

http://www.unesco.org/education/pdf/34_57_f.pdf

온라인 버전 (스페인어):

http://www.unesco.org/education/pdf/34_57_s.pdf

이 책자는 3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교사 연수 자료
- 초등학교 자료
- 중 · 고등학교 자료

➔ 관용이 어떻게 교육 프로세스에서 키워드가 될 수 있는가? 교사들이 편협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는 즉시 이를 파악하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또 지역사회 및 학생들에 맞는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학생들에게 인간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갈등을 해결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도록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 책의 세 단원은 각각 교사/기타 교육전문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선별된 연구자료를 통해 위와 같은 질문에 답하고자 하고 있다. 여러 샘플 활동과 주제연구를 통해 관용을 평화, 인권 및 민주주의 교육의 기본틀 안에 포함시킨다. 이 책은 교사연수 전문가, 지역 활동가, 학부모, 사회사업가뿐만 아니라 교사들에게도 활용 가능하다. 즉, 평화에 이르는 문을 여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교육적 사명을 띤 모든 이들을 위한 책이다.

UN Cyberschoolbus
(사이버스쿨버스, 웹사이트)

주소: <http://www.un.org/cyberschoolbus>
언어: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 UN Cyberschoolbus는 1996년에 글로벌 수업 및 학습 프로젝트 (Global Teaching and Learning Project)의 온라인 교육 분야로서 구축되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국제이슈와 UN에 대한 교육을 촉진하는 데에 있다. 이 프로젝트는 점차 세계화되고 있는 이 세상을 위해 온라인과 출판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표를 두고, 초·중·고등학교 교사와 학생을 위한 수업자료와 활동을 개

발하고 있다.

UNICEF Teachers Talking about Learning
(교사들의 배움에 관한 대화, 웹사이트)

주소: <http://www.unicef.org/teachers>
언어: 영어
➔ 'Teachers Talking about Learning'은 교사 및 기타 교육전문가의 전문역량개발을 지원하고, 그들에게 자원, 교실활동, 기타 어린이 친화적 수업환경 개발을 위한 정보 등 실용적인 조건을 제공한다. 이 사이트는 주로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읽기와 성찰을 통한 아이디어 발굴, 이슈를 동료와 대화식으로 토론하기, 활동으로 실천하기 이다.

UNICEF Voices of Youth
(청소년의 목소리, 웹사이트)

주소: <http://www.unicef.org/voyn>
언어: 영어, 불어, 스페인어.
➔ 이 사이트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모든 아동의 권리, 즉 평화롭게 살 권리, 양호한 주거지를 가질 권리, 건강하고 충분한 영양을 섭취할 권리, 깨끗한 물을 사용할 권리, 놀 권리, 학교에 다닐 권리, 폭력·학대 및 착취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가 보장되는 세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토론한다. 세계적 현안에 대해 생각해보고 자신의 견해를 밝힐 수 있는 기회, 쌍방향 글로벌 학습 프로젝트 시리즈, 그리고 교사, 연수 전문가 및 교육 기획자를 위한 포럼을 제공한다.

기타 자료

**인권교육을 위한 교수법자료 중남미데이터베이스
(범미주인권기구/교육자료센터)**

**Carpeta Latinoamericana de Materiales
Didaticos para Educacion Derechos
Humanos (Instituto Interamericano de
Derechos Humanos/ Centro de Recursos
Educativos - Amnistia Internacional, 1995)**

언어: 스페인어

온라인 참고 페이지:

<http://www.iidh.ed.cr/publicaciones/li-stadoPubs.asp>

➔ 세 단원에서 다루는 주제(자유, 평등, 단결과 참여)의 전반적인 목표는, 학생 및 교육자를 위한 실용적 활동을 통해 ① 학습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② 교육자를 지원하며 ③ 인권교육 방법론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Educating for Human Dignity—Learning
about Rights and Responsibilities』(인간존엄
성을 위한 교육—권리와 책임에 관한 학습)**

by Betty A. Reard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95)

언어: 영어

온라인 참고 페이지:

<http://www.upenn.edu/pennpress/book/1559.html>

➔ 이 책은 교사와 교사교육자 모두를 위해 쓰여졌

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인권교육프로그램의 안내 및 보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 책은 지구적 상호인밀성 속에 인권문제로 야기되는 가치관 문제에 정면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체론적인 인권교육 접근법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이 책 전반에 걸쳐 사용된 개념적 발달 접근법으로 인해 이 책은 완전한 하나의 인권교과과정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 즉, 수준별(grade-level) 토론과 샘플 수업 계획서는 개별 학급에 사용되거나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보충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First Steps—A Manual for Starting
Human Rights Education』**

**(첫 단계—인권교육시작을 위한 매뉴얼)
(Amnesty International, 1996)**

언어: 알바니아어, 아랍어, 네덜란드어, 영어, 헝가리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슬로바키아어, 슬로베니아어, 우크라이나어
온라인 버전 (영어와 기타 언어):

http://web.amnesty.org/web/web.nsf/pages/hre_first

➔ 이 매뉴얼은 교사들 또는 기타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교육과정 속에 인권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기초적 소개를 목적으로 하며, 나이에 맞는 여러 활동들을 담고 있다. 또한 방법론에 대한 조언과, 이러한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이론적이기보다는 실용적인 접근법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자가 이러한 자료를 활용하여 자신이 처한 상황과 맥락에 맞게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매뉴얼의 아프리카판은 『Siniko:

Towards a Human Rights Culture in Africa,
(Amnesty International, 1998)로 출간되었으며,
영어, 불어, 스와힐리어로 작성되어 있다.

온라인 버전:

[http://web.amnesty.org/web/web.nsf/
pages/hre_res](http://web.amnesty.org/web/web.nsf/pages/hre_res)

『*Human Rights for All*』(모두를 위한 인권)
by Edward L. O'Brien, Eleanor Greene and
David McQuoidMason (National Institute
for Citizen Education in the Law, 1996)

언어: 영어, 헝가리어, 루마니아어, 러시아어, 스
페인어

온라인 참고 페이지:

<http://www.streetlaw.org/pubs.html>

➡ 이 책은 중·고등학교에서 사용되도록 제작되었
다. 비공식 교육 과정의 일부 또는 단순히 독서의 일
환으로 기본적인 인권에 대해 알고자 하는 성인들도
사용할 수 있다. 이 책의 본문에서는 어느 특정 국가
도 언급되어 있지 않는데, 이는 인권은 보편적이며
모든 나라의 모두의 삶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저자의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분야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책의 시나리오의 상당수가 실제
로 세계 여러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에서 취한 것임
을 알 수 있을 것이다.

『*Human Rights Here and Now*:
Celebrating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지금 여기에서의 인권: 세계인
권선언을 기념하며) edited by Nancy Flowers
(Human Rights Resource Center,

University of Minnesota, 1998)

언어: 영어, 스페인어.

온라인 버전 (영어):

[http://www1.umn.edu/humanrts/
edumat/hreduseries/hereandnow/
Default.htm](http://www1.umn.edu/humanrts/
edumat/hreduseries/hereandnow/
Default.htm)

➡ 이 책은 지역단체와 초·중·고등학교의 교사들
이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인권의 역사,
원칙 및 이슈들에 대한 배경정보와, 유치원부터 성
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 집단을 위한 활동 그
리고 기본적인 인권문헌을 제공함으로써, 인권교육
의 '초보자 안내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Our World, Our Rights—Teaching
about Rights and Responsibilities in
Primary Schools*』(우리의 세계, 우리의 권리—
초등학교에서 권리와 책임 가르치기)

edited by Margot Brown (Amnesty
International United Kingdom, 1996)

언어: 영어, 몽골어

온라인 참고 페이지:

[http://www.amnesty.org.uk/action/tan/res
ources.shtml#our](http://www.amnesty.org.uk/action/tan/res
ources.shtml#our)

➡ 이 책은 초등학교생들에게 세계인권선언을 소개하
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이 책은 세계인권선
언에 구체화되어 있는 권리들을 이해할 수 있는 간
단한 방법을 제시하며, 권리란 무엇이며 그것에 수
반되는 책임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의 권리와 타
인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Popular Education for Human Rights,
(인권대중교육)**

by Richard Pierre Claude (Human Rights Education Associates, 2000)

언어: 영어, 중국어, 인도네시아어, 스페인어

온라인 버전 (영어):

<http://www.hrea.org/pubs/>

Popular Education

초기 버전: 『The Bells of Freedom(자유의 종)』 암하라어(에티오피아 공용어), 영어, 불어로 작성됨

온라인 버전 (영어):

<http://www1.umn.edu/humanrts/>

education/belfry.pdf

온라인 버전 (불어):

[http://www.hrea.org/erc/Library/](http://www.hrea.org/erc/Library/Bells_of_Freedom/index_fr.html)

Bells_of_Freedom/index_fr.html

➔ 이 책은 인권활동가를 위한 훈련 안내서다. 이 책은 대중교육 및 지역공동체 결성에 관여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일부러 저작권을 설정하지 않았다. 비정부기구 또는 교육전문가는 누구라도 저자와 출처만 밝히면, 이 책의 사본을 만들어 현지 상황 및 문화에 맞추어 사용할 수 있다. 비공식 교육을 위해 제작하였으므로, 이 매뉴얼은 최소한의 읽고 쓰는 능력만을 갖춘 사람들에게 적합한 옵션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농촌 빈곤층, 여성, 아동과 같은 소외 집단 문제에 크게 비중을 두고 있다. 내용 중 참여적 실천은 공교육에서도 활용 가능하다.

Stand up NOW for Human Rights!

(인권을 위해 지금 일어서라!)

(비디오와 보조 자료),

(Council of Europe, 1997)

언어: 영어와 기타 여러 유럽 언어

➔ 이 비디오는 청소년들, 주로 13~18세 연령집단의 인권의식을 고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인권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설명하고, 유럽 전역에서 청소년들이 어떻게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활동에 관여하여 왔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이 비디오를 교육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보조 자료가 첨부되어 있다.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Starting Points for Teachers

(유럽인권협약: 교사들을 위한 출발점)

(Council of Europe, 2000)

언어: 영어, 불어, 독어

온라인 버전 (영어):

<http://www.coe.int/portalT.asp>

온라인 버전 (불어):

<http://www.coe.int/portalT.asp>

(General Information →

Information Material → Human Rights Fact Sheet의 순서대로 클릭함.)

➔ 이 수업 키트는 두 시리즈의 수업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유럽 협약(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을 면밀히 검토한 내용이며, 다른 하나는 그 협약의 내용이다. 뒷부분에서는 인권의 내용

과 의미, 국내적 인권보호제도, 학교에서의 인권 등과 같은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교실에서 가능한 활동들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조사, 인터뷰 그리고 인권문제를 다룬 영화 감상 등 교사가 학생들과 함께 해 볼 수 있는 활동 및 연구목록도 제공하고 있다.

『Stand up for your rights—A book about human rights written, illustrated and edited by young people of the world』
 (자신의 권리를 위해 일어서라—전 세계의 청소년들이 쓰고, 그리고, 편집한 인권에 관한 책)
 (Peace Child International, 1998)

언어: 영어

온라인 참고 페이지:

<http://www.peacechild.org/acatalog>

➔ 이 책은 세계인권선언에 대해 청소년들이 쓴 해설서다. 이야기, 시, 개인적 추억, 예 등으로 세계인권선언의 각 조항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다. 가입할 수 있는 기관들과 이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교사 지도서도 함께 제작되어 있다.

Teaching Human Rights

인권교육은 모든 사람의 기본권이 인정되고 존중되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사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다. 인권교육은 단순히 '인권에 대한 것'을 넘어 '인권을 위한' 교수·학습이다.

이 책은 세계인권선언에서 제시된 '이 세상의 자유·평등·평화의 토대'가 되는 천부적인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권리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 책은 단순히 교실 수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 및 경험 그 자체를 위한 것이다.



“보편적 인권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걸까요?
우리의 가정 가까이 있는 작은 장소,
너무나 가깝고 작아서
세계 어느 지도에도 나와 있지 않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비록 그곳이 개개인의 세계일지라도 말입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
자신이 다니는 학교,
자신이 일하는 농장이나 사무실도
모두 개인의 세계입니다.
그곳에서 모든 남녀노소는 차별 없이
공평한 정의, 동등한 기회, 동등한 존엄성을 추구합니다.
가깝고 작은 곳에서 이러한 권리가 의미가 없다면,
그 어느 곳에서도 의미가 없습니다.
보편적 인권이 가정 가까이에서 실현되도록
시민행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더 넓은 세계에서의 진보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엘리노어 루즈벨트(전 유엔 인권위원회 위원장)



ISBN 89-90475-92-9